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장근영 · 임지연



연구보고 21-R0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저 자 장근영, 임지연

연구진 연구책임자_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원_박소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_홍정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보고서를 펴내며

청소년들의 성장환경에서 온라인과 디지털 영역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최근 1-2년 간 이러한 변화는 더욱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 가능성이 높은 면대면 활동이 축소되고, 그 대안으로 온라인 공간이 부각되면서 이전에 단지 기술적 가능성으로만 제시되었던 비대면 활동들이 되었습니다. ‘가상이지만 실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의미의 버추얼(virtual)이 이제 메타버스(metaverse)라는 형태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활동 역시 온라인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은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접촉에서 온라인에서의 심리적인 교류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요소들에게서도 반영됩니다. 등교수업이 줄어들며 학교 폭력과 같은 문제들이 감소하는 동안 계층 간의 교육격차와 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인 문제들이 축적되고 있고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범죄가 감소하는 동안 이런 범죄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성범죄는 기존의 면대면 성범죄에 비해 범죄의 양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그 범죄 피해의 질적 양적 측면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더구나 온라인 공간의 확장과 함께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온라인 영역의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의 현안과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몇몇 심각한 사건들이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관련 법령과 제도 역시 이전에 비해 빠르게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단 1년의 연구였음에도, 연구 초반에 지적되었던 정책 현황과 문제점이 연구 종료 시점에는 변화하거나 부분적으로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다룬 정책 현안 중에는 이미 실제 제도로 반영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와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 중 주로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디지털 성범죄의 미래를 예측하고 장기적인 예방과 보호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의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어린 나이에 새로운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낯선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과 성범죄의 위험에도 더 일찍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이른 학년부터, 더 구체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법과 정책의 개선 역시 여전히 필요합니다.

지금도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범죄 현장에서 헌신하시며 추적하신 지식과 사례로 이 연구의 기초적 토대를 제공하시고 필진으로 참여해주신 배수진 변호사님, 서승희 대표님, 그리고 윤정숙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사례 정리와 검토를 해주신 외부 전문 지원인력들과 연구의 초기에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후반기에 참여하여 연구의 마무리에 대체할 수 없는 기여를 해주신 홍정윤, 박소영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연구책임자 장근영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온라인 환경과 소셜 미디어의 일상화와 함께 오프라인의 다양한 활동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되었음. 그와 함께 이용자들의 정체성이 부분적인 공개 혹은 비공개 상태에서 타인과 손쉽게 교류 할 수 있는 편리성이 구현됨.
- 이러한 디지털 문화의 특수한 환경에서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들이 진화, 새로운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온라인 그루밍이나 작년에 발견된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비대면 성착취 조직범죄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아동과 청소년들을 이와 같은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음.

2. 연구방법

-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례와 관련 연구를 통해 이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내·외 특히 주요국가의 대응사례들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전문가 세미나, 콜로키움,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분야의 현장 전문가와 정책담당자의 의견과 정보를 수렴하고, 현장에서 부각된 주요 현안을 연구보고서에 반영하고자 하였음.
- 디지털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아동·청소년들의 온 오프라인 생활 실태,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매체 이용 현황과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성적 침해 경험,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의 진행 단계별 경험의 수준을 측정했음.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에 관련된 교육 경험과 이들 경험이 위험 행동을 실제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추정했음.

3. 주요결과

1)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현황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1) 사이버 성희롱, 2) 온라인 그루밍, 3)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소지·감상·전송 등 행위로 분류됨.
- 최근 부각되는 가장 심각한 유형은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0. 4.23.)’인 온라인 그루밍이지만, 온라인 그루밍은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아니라 사이버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범죄의 시작이며, 그 결과물이 성착취 영상물 배포로 이어지면서 범죄 피해를 극단적으로 확산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남. 따라서 온라인 그루밍을 디지털 성범죄의 시작점으로 지적하며, 단순히 친밀한 접근으로 시작하는 그루밍의 초기 단계부터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 2021년 3월에 개정된 정보보호법률에 보다 적극적인 그루밍 처벌 규정의 추가, 양형기준의 현실화와 실효화, 위장수사의 범위와 기간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디지털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그 피해가 확산되는 기반인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법안의 입법도 요구되고 있음.
- 또한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피해지원체계의 부재, 단순한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발견과 대응 방안 모색, 실제 피해자가 접근하기 어렵고 지원내용도 현실적이지 못한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 등의 문제를 지적함.

2) 해외사례 분석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 해외사례 조사분석은 본 연구의 정책제안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과 대응정책이 있는지 최신 동향과 사례를 분석하였음.

● 해외사례 조사 개요

해외사례	본 연구 정책제안에서 활용
국가 온라인상 아동보호 전략개발	- 정책입안자들이 국가 온라인 아동보호 전략을 개발할 때 고려할 사항
온라인 그루밍 판례 및 처벌사례	- 그루밍 처벌 규정의 실효성 마련 - 성적착취 목적의 대화, 미성년자 연령인증, 실제만남 등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효과증진
기업의 모니터링 의무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기업의 아동 성착취물(CSAM)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 의무 - 기업의 자율규제 및 사전 예방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과 활동 활성화
국제공조 신고시스템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시민단체	-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 증진 - 국제공조 신고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시민단체 역할 -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의 입법 필요성 - 산업-정부-NPOs의 글로벌 다분야 협업

- 국가 온라인상 아동보호 전략개발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실천적인 신속한 대응이 핵심 사항임을 시사함.
- 실제 만남은 없어도 처벌, 미성년자 연령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있고, 노골적인 성적착취 대화가 아니더라도 신분을 속이고 2차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를 처벌하는 사례들은 한국에서 그루밍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함.
- 아동 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과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 기업이 아동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매스컴의 영향을 중요시하는 기업에 효과적인 방법임.

-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신고 접수 조사, 삭제, 연구, 데이터베이스구축, 정보접근 권한, 국제공조 및 직접적 수사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아동 성착취 모니터링을 지원할 의무를 부여해야 함.

3) 디지털 생활실태조사

-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재학생 3,78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실태조사의 내용은 ① 아동·청소년의 가정환경과 학교환경, 심리적 정서적 적응 수준, ②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생활 실태, ③ 실제 디지털 성적 침해 및 온라인 그루밍 노출 실태, ④ 예방교육과 관련 기관 인지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됨.
- 익명계정과 개인적 대화 경험
 - 전체 청소년의 16.3%, 특히 여자 청소년의 21.7%는 익명계정을 보유하고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남자 청소년의 16.6%는 익명계정 이용정지를 당할 정도로 위험한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었음.
 - 익명계정 사용경험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8.5%로 나타났으며, 오픈채팅에 참여했다는 경험 역시 초등학교 5학년에서 16.3%로 나타났음. 오픈채팅을 해본 청소년 중에서 75.4%는 낯선 타인으로부터 개인톡을 받아본 적 있다고 응답했음.
- 온라인 성적 침해 가해 및 피해 경험
 -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온라인을 통해 최소한 신체적인 품평 이상의 성적 침해를 직접 해봤거나 당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비율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높아졌음.

● 온라인 그루밍 노출 실태

- 온라인 그루밍에 노출된 경험은 초등학교 서는 5% 내외, 고등학교에서는 최대 14%까지 높아졌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들은 중학교 이후부터 10% 이상이 낯선 사람으로부터 기프티콘을 받는 등의 경험이 있었음.
-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온라인을 통한 친교 제의를 더 많이 받았고, 이를 거절하지 않는 비율도 높았음. 특히 중학교 1학년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이 비율이 모두 높았음.
- 청소년 중 10.2% 정도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있으며, 여자 청소년들이 11.5%로 남자 청소년(9%)보다 높았음. 특히 중학교 2학년 여자 청소년의 15.4%, 고등학교 2학년 16.7%가 한번 이상 이런 오프라인 만남의 경험이 있었음.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기관 인지도

- 위클래스를 아는 청소년은 70.3%였으며, 청소년사이버 상담센터(1388)의 인지도 역시 84.2%로 높았음. 반면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 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21%로 가장 낮았음.
- 응답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개인정보 보호교육(58.4%)이나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76.2%)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으며,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는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더 높은 경향이 있었음.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의 예방효과 추정

- 예방교육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나누어 비교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이 전반적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위험한 행동을 적게 하는 추세가 나타났음.
- 익명 계정을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이용정지를 당해본 경험, 온라인을 통해

- 알게 된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노출한 비율, 위험한 장소(룸카페, 만화방, 노래방, 낯선이의 자동차, 모텔이나 집)에서 만난 비율,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은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뚜렷이 낮았음.
- 이러한 차이는 교육을 받은 집단 내에서 교육이 효과가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체가 아동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기피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함.

4. 정책방안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정책의 시사점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의 조기 실시 필요성

- 이미 초등학생 시기부터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익명 채팅 등으로 온라인에서 낯선 이를 만나고 있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들이 이런 만남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음.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은 실제로 위험 행동의 빈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교육 연령대를 최소한 초등학교 고학년 시점까지 앞당기고, 더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최소 1회 이상의 예방교육을 통해 디지털 그루밍 기법과 그 대응방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성별, 연령별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시기와 개입 요구

- 특정 시기에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들이 발견됨. 예를 들어, 중학교 1, 2학년 시기의 여자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방어적이지 않은 경향이 발견됨.
-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하게 표적화된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함으로써 선제적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정책과제

- 정책과제 도출을 위하여 선행연구, 해외사례, 콜로키움, 설문조사 등 결과를 종합 논의를 통하여 정책 개입의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국가 온라인상 아동 보호 전략 개발 틀을 참고하여 정책과제를 제안.
- 정책과제는 4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으며, 1) 그루밍 처벌 규정의 실효성 마련(8개의 추진방안), 2) 아동 성착취물(CSAM)에 대한 기업의 모니터링 의무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프로그램 활성화(14개의 추진방안), 3) 국 제공조 신고시스템 구축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10개의 추진 방안), 4) 법 개선 및 개정안(4개의 법 개선 추진방안)을 제시함. 정책과제 별로 추진배경, 추진근거, 추진방안, 법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전체적으로 추진단계와 추진체계를 제시함.
- 추진로드맵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과제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추진단계 ¹⁾	추진체계 ²⁾
1. 그루밍 처벌 규정의 실효성 마련 1)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2) 실제 만남이 없어도 그루밍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3) 그루밍 과정을 범죄화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4) 청소년성보호법에서의 성적착취의 목적을 해석하는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5) 피해자 청소년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지 않도록 연령 등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둔다. 6)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 특례가 필요하다. 7) 법 집행 책임에 관련된 기관들에게 관련 법 조항을 교육한다. 8) 그루밍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한다.	단기과제 (1-2년)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방송통신위 원회, 교육부 지자체
2. 아동 성착취물(CSAM)에 대한 기업의 모니터링 의무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프로그램 활성화 1)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신고(혹은 통보) 의무를 부과한다. 2)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기업의 모니터링 의무가 필요하다.	단기과제 (1-2년)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방송통신위 원회, 여성가족부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추진단계 ¹⁾	추진체계 ²⁾
3) 아동 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과 활동을 활성화한다. 4) 기업이 아동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여론을 형성한다. 5) 정부는 기업 및 제3자가 아동보호 책임을 이행하도록 국내외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조성한다. 6) 정부는 기업이 자율규제 시스템을 마련하더라도,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한다. 7)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가 의심되는 사용자가 사이버 범죄 보고 웹사이트에 신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8) 기업들이 자사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그루밍을 확인하고 예방 조치에 투자하도록 규제 요건을 만든다. 9) 플랫폼에서 콘텐츠 삭제가 있을 경우, 다른 플랫폼사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10) 규제기관은 기업들이 아동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금융제재, 기업 제재 및 금지 등 강제조치를 마련한다. 11) 규제기관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제조치와 합당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12) 규제 기관은 아동보호 조치를 어긴 기업의 부당 수익을 몰수한다. 각 산업 분야에 알맞게 충분한 규모의 금융패널티 권한을 가진다. 13) 아동 보호의무를 크게 위반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기업에 대해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 14) 기업형 범죄를 확장하고 규제 수준을 엄격하게 정하여 기업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지자체
3. 국제공조 신고시스템 구축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 1) 법에 근거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전담기구는 국제공조 시스템구축, 직접 수사권과 정보 접근 등 권한을 가진다. 2)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전화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전화 “핫라인”과 온라인 “팁라인”과 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3) 신고 사이트 접근성을 쉽게 개편한다. 4)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한다.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혹은 제3의 기관은 신고내용을 확인, 삭제지원, 경찰수사 의뢰 등을 의무화한다. 6) 산업-정부-NPOs의 다분야 협업 방식으로 국제공조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플랫폼에 삭제 명령 가능하도록 해외 사업자에 국가간 협약, 국제조약 등 국제공조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단기· 중기과제 (1-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추진단계 ¹⁾	추진체계 ²⁾
7) 신고 및 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국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한다. 8)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한다. 9) 아동 성착취물(CSAM)을 인터폴 국제아동 성착취(ICSE)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10) 아동들을 위한 국가차원 디지털 어젠다 개발 및 구현, 모니터링을 주도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4. 법 개선 및 개정안 1)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목적 대화 등)에서 성착취목적에 대한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와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신분위장수사는 3개월의 제한이 있으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3)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에 16.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현행의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신고(혹은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의3<신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단기·중기과제 (1~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1) 추진단계는 대부분 단기과제(1~2년), 중기과제(3~4년)로 나타났다.

2) 추진체계는 정책이나 사업 주관부처, 연계부처, 지자체를 명시하였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보고 21-R01

I. 서론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8

II.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및 현황	15
2.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선행연구	27
3.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현황	36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현황	45
5.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현황	50
6.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법 규정 현황과 대안	60

Ⅲ. 해외사례 분석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1. 해외사례 조사 개요	89
2. 조사결과	90
3. 시사점	119

Ⅳ.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1. 조사내용	127
2. 조사실시	130
3. 조사결과	131

Ⅴ. 정책 방안

1. 그루밍 처벌 규정의 실효성 보완	168
2. 기업의 자율규제 활성화 및 모니터링 의무화	177
3. 국제공조 신고시스템 구축과 전담기구 설치	185
4. 추진로드맵	195

참고문헌	199
------------	-----

부록	211
----------	-----

표 목차

표 Ⅰ-1. 정책자문회의와 전문가 세미나, 콜로키움 주제 및 일정	8
표 Ⅰ-2. 표본 추출 특성	10
표 Ⅰ-3. 최종 조사 표본	11
표 Ⅱ-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가해자 및 피해자 통계 (2018-2019)	18
표 Ⅱ-2. 온라인 성범죄 유포피해 여부 및 세부 유형	26
표 Ⅱ-3. 오프라인 성범죄 대비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요약	27
표 Ⅱ-4.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관계 분포	28
표 Ⅱ-5. 그루밍 /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제도의 국가별 현황	31
표 Ⅱ-6.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 적용 법률에 따른 최종심 선고형의 유형 분포	33
표 Ⅱ-7.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적 규정과 양형기준	35
표 Ⅱ-8.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영상물 관련 범죄의 법 규정	43
표 Ⅱ-9.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46
표 Ⅱ-1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양형 감경 및 가중요소	47
표 Ⅱ-1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4
표 Ⅲ-1. 해외사례 조사 개요	89
표 Ⅲ-2. 국가 온라인상 아동보호 전략 개발 주요사항	91
표 Ⅲ-3. 온라인 그루밍 예방책 및 사후책의 종합적 접근	99
표 Ⅳ-1.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지 구성	128
표 Ⅳ-2. 응답자 특성(학교급)	131
표 Ⅳ-3. 응답자 특성(권역)	132
표 Ⅳ-4. 특성 수준	141
표 Ⅳ-5. 익명계정 및 오픈채팅 경험 비율	143
표 Ⅳ-6. 디지털 성범죄 피해경험 긍정 비율	145
표 Ⅳ-7. 디지털 성범죄 가해경험 긍정 비율	146
표 Ⅳ-8.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선물을 받은 경험	148

표 IV-9.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에게 알려준 정보	151
표 IV-10.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난 경험	152
표 IV-11.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들)과의 만남 및 이동 장소 ..	153
표 IV-12. 학교 위(Wee)클래스 이용 경험	154
표 IV-13.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155
표 IV-14. 집에서 가족과 온라인 성폭력(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 해 본 경험	156
표 IV-15. 디지털 성범죄 도움 기관 인지도	157
표 IV-16.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에 따른 위험 행동	160
표 IV-17. 학교에서의 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위험 행동 비율	161
표 V-1.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현황	186
표 V-2.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신고시스템	188
표 V-3.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의 입법사례	190
표 V-4. 아동 성착취물 타파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191
표 V-5. 추진로드맵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과제 ..	195

그림 목차

그림 II-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해자 비율(2018-2019)	19
그림 II-2.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위험성 인식수준	29
그림 II-3.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의 쪽지나 대화신청에 따른 대응 경험 ..	30
그림 II-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 징역선고 형량의 분포 ..	34
그림 IV-1. 남자 아동·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 응답결과	133
그림 IV-2. 여자 아동·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 응답결과	134
그림 IV-3. 남자 아동·청소년의 교사, 친구관계 평가	135
그림 IV-4. 여자 아동·청소년의 교사, 친구관계 평가	136
그림 IV-5. 친구가 랜덤 채팅앱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	137
그림 IV-6. 생활만족도 평가	138
그림 IV-7. 행복도 평가	139
그림 IV-8. 남자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 지수	140
그림 IV-9. 여자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 지수	140
그림 IV-10. 익명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빈도	144
그림 IV-11. 익명계정을 처음 개설한 연령의 빈도분포	144
그림 IV-12. 온라인에서 친교제의를 메시지에 대한 반응	149
그림 IV-13. 온라인에서 대화제의를 메시지에 대한 반응	149
그림 IV-14. 온라인에서 일상사진 요구 메시지에 대한 반응	150
그림 IV-15.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에 따른 온라인 그루밍 접근을 거부 했다고 응답한 비율	159
그림 IV-16. 개인정보보호교육 경험에 따른 온라인 그루밍 접근을 거부 했다고 응답한 비율	159
그림 IV-17. 개인정보 보호교육 경험 여부와 만족도(상, 하)에 따른 온라인 위험행동 비율	163
그림 IV-18.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여부와 만족도(상, 하)에 따른 온라인 위험행동 비율	163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1. 연구의 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디지털 성범죄가 부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9년에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2,753명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판결문을 분석한 자료¹⁾에 따르면,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전년 대비 14.5% 감소했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6.1% 감소했지만,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및 피해 아동·청소년은 각각 19.3%(266명), 101.2%(50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소위 ‘n번방 사건’은 익명의 가해자들이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유포한 사건으로서 국내에서 적발된 것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2년 전인 2017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불법 웹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약칭 W2V)’의 운영자가 한국인임이 밝혀져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이트는 오로지 1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잔혹한 성 착취를 전문적으로 실행한 범죄의 현장이었다. 더구나 미국과 유럽의 사법기관이 오랜 기간 국제적인 공조 끝에 검거한 범죄자 처벌이 고작 징역 1년 6개월에 불과했으며, 국내에서 이 사이트를 이용한 자들 중 40%가 기소유예를 받았고 나머지의 처벌도 벌금형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관련 양형기준에 대한 사회

1) 출처: 김지선, 한민경, 조병철, 고가영(2020).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

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들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n번 방 사건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고 해당 채팅방 이용자를 가장해 침투한 개인들의 노력을 통해 적발되고 공론화되었다는 점에서 익명성과 은밀성을 가진 디지털 성범죄 네트워크의 속성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다.

아동과 청소년은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세대로서 디지털 환경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이다. 청소년기는 사회적 교류에의 욕구에 눈을 뜨고, 낯선 세계에의 탐험을 추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 결과 아동과 청소년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낯선 타인과의 만남이나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실제로 2019년 ‘n번 방’이 폐쇄된 후, 이 범죄 집단의 관련자가 개설한 ‘박사방’으로 알려진 익명채팅방에서 성 착취를 당한 피해 여성 74명 중 1/5인 16명이 미성년자로 나타났다. 다른 익명채팅방의 성 착취 피해자 중에서도 많은 수가 아동과 청소년으로 밝혀지면서 아동과 청소년 보호정책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노출될 기회 역시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과 모바일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보유율이 82%에 이르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스마트폰 기능은 채팅 프로그램을 통한 ‘잡담’이 26%,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경우가 16%로(유홍식, 김찬원, 나재은, 2013),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일상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현실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친밀한 관계를 가장한 그루밍 범죄나 피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 착취 등을 포함하는 등의 경우도 많으며, 개인의 의도나 동기만큼이나 또래 동조와 같은 사회심리학적 요소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문제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모든 개인과 사회에 위협을 가하지만 특히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청소년기에 노출되었을 때 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심리적 상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왜곡된 성 인식과 이성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형성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꾸준히 성 평등을 제도화하였고, 최근에는 미투 운동이나 성소수자 문제 등으로 인해 성 평등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반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남녀가 서로를 반목하면서 오히려 성 평등 의식이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청소년은 이러한 온라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나 학교 성교육은 청소년의 성행동과 성인식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오래전부터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노출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성인지 교육 정책, 사업 등의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9년 말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참여한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근절 방안으로 채팅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23일에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안’의 신설이 포함된 바 있다(김지영, 황지태, 최수형, 이영섭, 2020). 이러한 사법 제도의 정비와 구체적인 정책안의 수립을 위해서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노출 실태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제언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례와 관련 연구 분석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고찰했다.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함께 감시와 규제의 빈틈을 찾아서 끊임없이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현재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정책을 범죄의 진화 양상에 맞추어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 사례의 규모는 매우 작다. 따라서 구체적인 범죄 사례 분석 연구들, 그리고 아동 디지털 성범죄 전문 영향 평가 연구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기술적 특성, 실제 사례, 적발과 처벌,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현행 법안과 정책을 검토하였다. 최근 국내에서 활발하게 개정을 추진 중인 법안들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분석과 평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을 검토하고 쟁점들을 정리, 논의하였다. 더불어 국내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과 법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미국과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활용하였다.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생활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디지털 성범죄가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과 활동 내용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우선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초등학생 범죄 피해자가 증가하는 추세, 그리고 본 연구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연구이며 디지털 범죄의 진화 양상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저연령 디지털 세대의 온라인 생활 실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해서 조사 대상을 초등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했다. 조사 내용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가정환경, 부모-자녀 관계, 학교생활 현황, 교사·또래 친구 관계, 디지털 매체 이용현황과 같은 일반적인 생활 실태 측정 문항,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 실제 성적 침해 피해 및 가해경험,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단계별 노출 실태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4) 정책 및 법률 대안 제시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사례와 법률 및 정책 대안 분석, 아동·청소년 디지털 생활 실태조사, 이에 관한 국내 디지털 성범죄 현장 전문가 세미나 결과를 기초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 및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최근 활발하게 진행·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결과와 성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의 특성에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들을 수집해서 이론적 배경과 디지털 생활실태조사 문항 구성에 반영했다. 특히 2020년에 아동 권리보장원에서 발표한 ‘아동 디지털 성범죄 전문영향평가’ 분석 보고서(정익중, 김현숙, 이현숙, 김시아, 석희진, 2020)를 포함한 국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안으로 정리하였다.

2) 정책연구 실무협의회, 전문가 세미나/콜로키움 개최

본 연구 주제에 관련된 정책실무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역 간 논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총 5회에 걸쳐 정책자문회의와 전문가 세미나,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보호정책을 담당한 여성가족부의 실무진, 형사·법률정책 연구원의 학계 전문가, 한국 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 등의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여성가족부의 계획을 청취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표 1-1. 정책자문회의와 전문가 세미나, 콜로키움 주제 및 일정

횟수	주제 (형식)	전문 영역	개최일
1차	청소년 보호정책관련,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정책 연구 현안 (정책실무협의)	여성가족부, 정책담당자	1/14
2차	국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및 시사점 (콜로키움)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6/3

횟수	주제 (형식)	전문 영역	개최일
3차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입법정책 현황과 과제 (콜로키움)	현장 전문가	6/9
4차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방향 및 시사점 (콜로키움)	법률 및 현장전문가	6/10
5차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전문가 세미나)	정책담당자, 학계/현장 전문가	6/24

3)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생활 실태조사(양적 연구)

디지털 성범죄 위험 노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지 구성

조사지의 구성을 위해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지와 디지털 생활실태조사지 및 가치관 조사지 등을 참고했다. 구성한 조사지 초안을 기초로 총 2회에 걸친 전문가 타당도 조사를 실시, 최종 조사문항을 완성했다.

(2) 표집규모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다. 조사표집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초등학교 5, 6학년 1천 명, 중학교 1, 2, 3학년 1천 5백 명, 그리고 고등학교 1, 2, 3학년 1천 5백 명으로 각 학년별 5백 명 씩 총 4천 명으로 설정했다. 이 표본 규모는 예산과 조사기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조사 변동 상황(재택수업 등)을 고려해 모수 추정에 필요한 최소 수준 이었다. 표집 방법은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하되, 표집 지역별 1차 표집 단위를 학교로, 2차 단위를 학급으로 하고 선정된 학급 재학생 전체를 조사 표본으로 정했다. 이 표본 규모로 모수 추정을 할 때 예상할 수 있는 통계적 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이 보장 된 경우 약 $\pm 1.5\%P$ (95% 신뢰수준)이다. 각 교급별 표본오차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pm 3.1\%P$, $\pm 2.5\%P$, $\pm 2.5\%P$ 이었다.

(3) 표본 추출

본 조사의 모집단은 2020년 10월 기준 교육부 교육통계DB에 제시된 전국 초 등, 중등, 고등학교 재학생 현황을 기초로 설정하였다. 여기에 지역과 학교를 층화 변수로 추가했다. 즉, 층화변수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눈 지역 구분,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로 나눈 학교급 구분, 마지막으로 학년 구분이다. 단,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아래 <표 I -2>와 같이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표집 하였다.

표 I -2. 표본 추출 특성

학교급		유형구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유형1	일반고등학교, 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중 과학, 국제, 외국어고등학교
	유형2	가사, 공업, 농림업, 상업, 수산, 실업, 예술, 체육, 해양, 종합고등학교, 특성화고 중 대안, 일반고등학교

본 조사의 1차 추출단위는 학급(학교)이고 2차 추출단위는 학생이다. 본 조사에 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학교 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 비례 배분을 수행하였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대략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27명, 고등학교 25명이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표집 학교 숫자

를 설정하되, 실제 표집 학급의 학생 숫자가 이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보완 표집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명 이상인 학교를 우선으로 각 학년별 표본학급 1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였다. 선정된 학교 측의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층 내의 학교 중 무작위로 대체했으며,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특별편성(우열반, 특수반 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고, 지역별 성별 비율도 고려해 최종적으로 표집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했다.

(4) 최종 조사 표본

조사 방식은 학교 단위 표집 및 조사원에 의한 학급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 조사를 병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방역규정으로 인해 예정된 조사 중 일부가 지연 혹은 취소되었고, 최종적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조사결과 총 3,798명의 응답결과를 수집하여 결과 분석을 실시했다.

표 I -3. 최종 조사 표본

주요 요소	내용
조사대상자	초등학교 5, 6학년 재학생 951명 중학교 1, 2, 3학년 재학생 1,415명 고등학교 1, 2, 3학년 재학생 1,432명
표집기준	전국 5개 권역, 재학생 수 비례표집 고등학교의 경우 2개 유형으로 표본 배분
조사방식	학급단위 조사원 방문에 의한 집단 설문조사 지필 조사지에 의한 설문조사 *재택수업 등의 부득이한 경우 우편조사
조사문항	가정환경, 학교환경, 심리적 정서적 적응 수준, 가치관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생활 실태 (이용매체 유형, 방식) 실제 디지털 성범죄 노출현황 (그루밍, 성적침해 등)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 경험, 인지도 (Wee센터, 치유센터 등)
연구윤리	기관 IRB 승인(승인번호: 202105-HR-고유-010)



제2장 이론적 배경

- 1.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및 현황
- 2.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선행연구
- 3.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현황
-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현황
- 5.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현황
- 6.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법 규정 현황과 대안

1.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및 현황²⁾

1)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될 수 있다: 1) 사이버 성희롱, 2) 온라인 그루밍, 3)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소지·감상·전송 등 행위.

첫째로, 사이버 성희롱의 경우 온라인 공간상에서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 발언을 하거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문자, 영상, 개인정보 등을 보내는 행위를 일컫는다. 그 예로 SNS 메신저나 단톡방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발언을 하여 모욕감을 주거나 장난이라는 명목 하에 상대방의 과한 노출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온라인 그루밍은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 등을 대상으로 허위 및 가장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유인하고 만남이나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일컫는다. 작년 n번방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SNS메신저 등을 통해 모델 일을 시켜준다고 허위로 아동과 친분관계를 형성한 후 아동을 만나 성행위를 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 배포, 감상, 소지 전송 등의 범죄는 불법카메라촬영물, 리벤지 포르노, 아동음란물 등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배포, 감상, 소지, 전송하는 행위로 서구에서는

2) 이 절은 한국여성변호사회 배수진 변호사의 원고를 기초로 작성하였음.

이를 영상기반의 학대행위(image-based abuse)라고 부르고 있다(전윤정, 2020). 이 밖에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 속하지는 않지만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 사이버공간상의 헐박), 사이버 괴롭힘(Cyberharassment: 사이버 불링과 유사하지만 괴롭힘을 강조), 사이버 스토킹(Cyberstalking: 사이버 공간상에서 피해자의 일상을 감시하고 추적하면서까지 통제를 행사하려는 것) 등은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결부하여 나타나는 행위로 이해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의 전체적인 행태와 피해 양상 등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다(윤정숙, 2020).

종래의 성범죄는 강간·강제추행 등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접촉형(contact) 성범죄가 대부분이었다. 신체적 접촉 없이 성적 피해를 입히는 비접촉(non-contact)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불특정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 관음증, 물품음란증(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특정인의 물품(예: 속옷 등)을 훔치는 행위) 등 성도착적 행위를 주로 지칭하였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통신 장비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비접촉 성범죄는 점차로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로 통칭되고 있다. 이러한 비접촉 성범죄는 각국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범죄, 온라인 성범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통상 유엔의 문서 등에서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활용하여 물리적 접촉 없이 성적 피해를 입힌다는 의미에서 정보통신기술 매개 범죄(ICT-facilitated Sex Crime, UNODC, 2015)로 불리기도 하며, 우리나라는 ‘디지털 성범죄’라고 칭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 인지(젠더)기반 폭력’으로 정의한다³⁾.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상대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 헐박, 저장 및 전시하는 등의 행위, 사이버공간에서

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543>에서 2021년 7월 5일 인출.

타인의 성적 자율권, 인격권을 침해 행위를 포괄한다⁴⁾. 구체적으로는 ① 전신, 얼굴, 나체, 치마 속, 뒷모습, 용변이나 성행위 등의 불법촬영, ②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소셜네트워크, 단톡방 등에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행위, ③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소셜네트워크 사업자 및 이용자들에 의한 유통 및 공유 행위, ④ 금전이나 재화 등을 요구하며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행위, ⑤ 피해자의 일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하여 유포하는 사진합성 혹은 지인능욕 행위, ⑥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성적 괴롭힘 행위 등을 디지털 성범죄의 범주에 넣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행위에 포함되는 디지털 성범죄물로는 ①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물, ② 합성/편집물(딥페이크 등), ③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④ 그 외에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모든 영상물을 포함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1) 사이버공간상의 성희롱, 2) 온라인 그루밍, 3) 불법성착취영상물 제작, 유포, 소지, 감상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2)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최근 동향 자료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⁵⁾에서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작성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 결과가 있다(김지선 외, 2020).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에서 형사 처벌된 사건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범죄 중에서 형사 고발되지 않거나 기소 혹은 처벌되지 않은 경우들이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내용은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

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543>에서 2021년 7월 5일 인출.

보 등록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례는 2018년의 3,219명에서 14.5% 감소한 2,753명이었으며,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역시 전년의 3,859명에서 6.1% 감소한 3,622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체적인 성범죄 가해와 피해건수는 감소한 반면, 디지털 성범죄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8년의 251명에서 2019년에는 505명으로 2.01배 증가했으며,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건수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의 6.5%에서 2019년에는 13.9%로 2.13배 늘었다(〈표 II-1〉).

표 II-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가해자 및 피해자 통계(2018-2019)

(단위: 명, %)

	년도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기타	전체
성범죄 피해자 수	2018	3,040	494	251	74	3,859
		78.8%	12.8%	6.5%	1.9%	100%
	2019	2,638	322	505	157	3,622
		72.8%	8.9%	13.9%	4.3%	100%
성범죄 가해자 수	2018	2,431	493	223	72	3,219
		75.5%	15.3%	6.9%	2.2%	100%
	2019	2,090	310	266	87	2,753
		75.9%	11.3%	9.7%	3.2%	100%

* 출처: 김지선 외(2020).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4.15.).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19.3% 증가-‘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729에서 2021년 11월 12일 인출.

또한 기존의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가 물리적인 공간의 인접성이나 사회적 인접성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반면,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피해자들을 찾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가족 및 친척 이외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피해사건 10건 중 9건에 해당했고(86.9%),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경우에는 같은 경우가 10건 중 8건(80.6%)이었다(김지선 외, 2020: 1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4.15.).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의 성범죄에 비해 소수의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2018년 대비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평균적으로 1명의 가해자가 1.2명의 피해자를 만들고 성매매의 경우 1명의 가해자가 1명의 피해자를 만드는 반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는 1명의 가해자가 1.9명의 피해자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선 외, 2020;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4.15.). 이러한 양상은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뚜렷하게 나타났다(그림 II-1). 이는 범죄자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동시에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의 특성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같은 피해자에게 1회 이상의 범행을 한 경우 역시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59.1%로 가장 많았다(김지선 외, 202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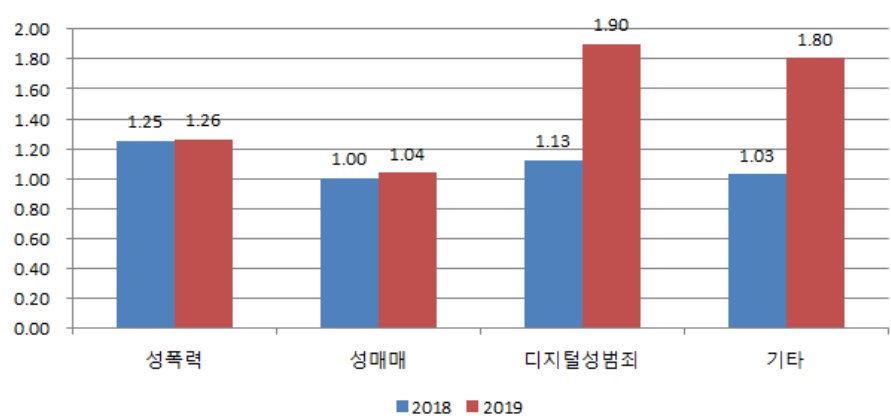


그림 II-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해자 비율(2018-2019)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기존의 성범죄들과는 다른

유형의 가해자에 의해서 기존과는 다른 조건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3)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그루밍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이 ‘온라인 그루밍’이다. 그루밍(grooming)은 동물들이 자신의 혀나 손발을 이용해서 자기 털을 다듬고 손질하는 행동을 뜻한다. 사람이 개나 고양이, 말과 같은 가축 혹은 친밀한 관계의 사람을 빗질해주는 등의 행위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된다. 이런 맥락에서 그루밍은 동물을 길들이거나 보살펴준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것이 성적 착취의 맥락에서 사용될 때는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고 길들이는 과정에서 동의한 것으로 가장해 성적인 착취를 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0.4.23.). 실제로 동물을 길들일 때와 마찬가지로 그루밍 성범죄 역시 친밀감 형성을 통해 신뢰를 얻고 점차적으로 지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를 거친다는 면에서 같은 의미라고 할 수도 있다. 그루밍 성범죄는 노골적인 성착취 단계로 이행하기 전까지는 마치 일반적인 친교나 연애 관계처럼 보인다.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이나 심지어 피해 당사자도 자신이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심지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에도 PC에서 채팅시스템을 사용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는 중대한 문제였다(김지영 외, 2020). 온라인 성범죄 전문가인 엘레나 마르텔로조(Elena Martellozzo)가 지적했듯,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역시 모바일 기기, 웹캠 등 값싸고 편리한 개인용 영상도구의 출현과 범죄의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공유할 수 있는 음란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발달 국면을 맞이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에 숨어 잠재적 피해자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타인에 의해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직접적인 접촉이나 신체적 폭력 없이도 자기 집 방구석에서

아동을 그루밍할 수 있게 된 것이다(Elena Martellozzo, 2018). 그래서 디지털 문화를 악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고 유대관계를 맺어 성착취에 이르는 행위를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로 정의하게 되었다(전수아, 권하늬, 정한나, 김수영, 2021).

아동·청소년을 성적 목적으로 그루밍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의 주된 방식이었다(김지영 외, 2020). 그러나 이러한 그루밍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기존 성범죄와는 다른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는 성장발육 과정상 정서적 불안정감이나 정서적 결핍을 느끼는 시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유대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형성한 후 아동을 조종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기 위한 준비 행위이자 성착취 자체의 내용이기도 하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들은 일단 피해 아동·청소년을 그루밍하면서 형성한 관계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더 심한 수준의 성착취를 요구한다. 또한 그루밍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범죄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믿게 만든다. 그 결과 피해를 당하면서도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할 수 없게 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이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타인의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2021년 3월 정보보호법을 개정 이전까지는 온라인 그루밍으로 인한 성착취를 범한 가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형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처벌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는 늘어나는 반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비난하거나 자업자득이라고 여겨 재범을 방지한다는 교육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참고로 2020년 10월 8일 선고된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3 등 판결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성매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명명되는 이들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빠르고 휘발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스마트 기기와 SNS와 밀착된 삶을 살고 있기도 해요. 스마트기기를 분신처럼 여기죠. 이들에게 유튜브 등의 콘텐츠 플랫폼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는 삶의 터전이에요. 댓글을 달고 의견을 공유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기 너머의 사람들을 자신과 비슷하리라고 생각하고,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당장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이들의 디지털 SNS 계정을 살펴보면 자연스레 몇 학년 몇 반인지, 어디에 사는지, 누구와 친한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사진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가해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협박을 하고, 피해자들은 범죄에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협박의 대상이 되는 정보들이 피해자의 보통의 삶과 밀착되어 있잖아요. 또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사는 가해자 입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기까지의 문턱이 매우 낮아요. 같은 반 친구, 학교 선생님, 교회에서 만난 동생, 명절에 만난 사촌 동생 등 주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엄마 몰카'라는 말도 있어요. 클릭 몇 번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가 나오면 푼돈을 버는 거죠. 다운로드도 정말 쉽잖아요. IP를 한번만 우회하면 포르노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고, '국산 아동' 검색해서 클릭 몇 번으로 다운로드를 하니 가담하기도 쉬워요. 가담이 쉽기도 하고 익명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이나 문제의식도 희박하죠. 피해영상을 '아동'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것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 랜덤채팅 앱은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들이 영상채팅을 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기프트콘으로 현금할 수 있게 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주는 식이다. 업체의 서비스 설명에 "남성 회원은 원하는 여성과 대화가 가능하고, 여성 회원은 포인트를 적립하여 출금서비스를 통해 집에서 알바와 부업까지 가능한 신개념 플랫폼 서비스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공박한 처지의 아동, 미성년자, 성인들에 대해 유인효과를 가진다. 특히 라인이나 랜덤채팅 앱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동시에 영상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접점이 된다. 텔레그램은 영상통화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음성통화 기능 또한 불편하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내용의 유튜브 개인방송을 하던 9세 여아에게 접근해 팬이라고 속이고 친밀감을 쌓은 뒤 신체 부위를 노출한 영상을 달라고 해 동영상 제작하여 유포한 가해자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에는 피해자를 찾아내어 온라인 그루밍을 할 수 있는 수단에 접근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SNS 등을 통해 대면하지 않고도 피해자를 물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한 그루밍도 쉽다. 채팅 앱 대화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사진, 어디, 오빠, 오늘, 이런 단어에다가 '용돈'이라는 단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미성년자 혹은 공박한 처지의 여성을 겨냥하고 있다. 그루밍으로 시작한 범죄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디지털 이주민이 법정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를 만난다면, -디지털성폭력 톨아보기-(모진만남 vol 5)』 《...남성 디지털 네이티브와 마찬가지로, 여성 디지털 네이티브 또한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랑이나 성, 호의를 품은 관심 등을 성폭력과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폭력적인 매체를 통해 성을 학습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여성 아동·청소년은 ‘성폭력을 위한 유도행위 grooming’에 더욱 취약해지기 쉽다. 그루밍이란 ‘길들이기’라는 뜻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르고자 하는 가해자가 표적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용어이다. 동조, 칭찬, 선물 등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가해자들은 아동에게 접근하기가 용이한데, 이들은 성적 착취를 염두에 두고 아동에게 접근하여 우선 친분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인 대화, 사진, 동영상 등을 주고받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학습시킨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해당 아동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며, 잘못된 사회화와 성적 피해로 인해 그루밍 피해자는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겪게 된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성폭력을 위한 유도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많은 영미권 및 유럽국가에서는 아동에게 성적인 권유 또는 잘못된 정보를 알리는 것 또한 ‘성학대’로 인식하여 아동학대로 처벌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으며 디지털 성폭력이 만연해 있는 한국도 그루밍 성폭력이 범람하는 사회다.》『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디지털 성폭력, 백가을』

* 출처: 울산지방법원 2020.10.8. 선고 2020고합73 판결. 양형의 이유 (판결문에서 인용 된 자료는 2020년 사법연수원에 서 진행된 여성 활동가 5명과 현직 판사 42명이 함께 진행한 종합 토론회 발표 자료임).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ulsa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2001&gubun=44&cbub_code=000411&searchWord=&pageIndex=10에서 2021년 7월 17일 인출.

이 판결문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나 성폭력은 구별할 필요가 없는 성착취라는 점, 그리고 아동·청소년은 성장 및 발육이 완성되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이해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2021년 3월 정보보호법률의 개정을 통해 제한적이거나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로 규정하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4)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와 온라인 확산의 문제

디지털 성범죄의 결과물은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 내지 공유되고 있으므로 피해가 지속되고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유포 속도가 폭발적이므로 유포를 한 당사자도 이 속도를 제지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죄로 기소된 사건⁵⁾은 유포자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단 3개의 사이트에 게시하고 단 2일 만에 전부 삭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을 때 원본이 모두 삭제된 상황에서도 22개의 사이트에 해당 동영상에 유포되고 있는 것을 포착하여 유포 속도가 폭발적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경우가 다반사이자 보니 유포에 대한 피해자들이 겪는 두려움이 과장된 우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단 한번이라도 유포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은 영원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019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등 죄로 기소된 사건⁶⁾은 약 8년 전 아동·청소년인 여성 피해자가 소녀가장으로서 모델 일을 하던 중 모델 분야에서 계속 성장하고 싶다면 누드 사진도 촬영해야 하고 누드 사진에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모델 일자리를 줄 수 없다는 감독의 요청에 따라 자위기구를 이용한 음란물 사진을 수백 장 촬영하였고, 촬영 직후 유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았으나, 약 8년이 지난 때에 해당 사진이 유포되고 있는 사정을 확인하고 고소한 사건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결과물은 결코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준 사건이었고, 더욱이 문제는 위 사진이 유포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찾았으나 단 한 장도 찾을 수 없어서 유포 사실을 알려준 지인을 통해 해당 사진을 갈무리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다. 영원히 삭제하거나 유포를 차단할 수도 없을뿐더러 한 번 유포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피해자 몰래 암암리에 유통될 수도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선고 2020노799 판결.

CaseNote 사이트.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0노799>에서 2021년 7월 17일 인출.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에 기소된 사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며 원본과 동일한 사본을 저비용으로 무한히 생성할 수 있다는 온라인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온라인 성범죄의 피해는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의 관계를 넘어서 디지털 공간으로 복제되고 유포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여파가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으며 실제 범죄행위 중에서 배포와 확산 행위로 인한 피해의 비중이 매우 높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관련해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및 디지털성폭력아웃을 통해 온라인 성폭력 피해 상담사례 342건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양상을 분석한 연구(장다혜, 김수아, 2018)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장다혜, 김수아, 2018)에서 온라인 성범죄를 통해 촬영된 영상이나 이미지 유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사례 중에 유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는 25.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4.3%는 모두 피해결과가 동영상이나 이미지, 혹은 합성물의 형태로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포된 사례 중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포된 경우가 전체의 67.9%였고, 일회성 유포로 그친 경우는 20.7%에 불과했다. 특히 여러 플랫폼에서 반복·지속적으로 유포된 피해가 32.5%로 가장 많았고, 촬영물이 가공되어 지속적으로 유포된 경우도 17.7%에 달했다.

표 II-2. 온라인 성범죄 유포피해 여부 및 세부 유형

유포피해 여부 및 유형			%	유포정도	%
유포피해	일반촬영물	동영상	26.0	단일플랫폼 반복/지속적 유포	17.7
		사진	13.2	다중 플랫폼 반복/지속 유포	32.5
		동영상/사진	26.6	가공 유포	17.7
		소계	65.8	단순유포	20.7
	합성물	이미지	8.5	기타	2.5
	소계		74.3	확인불가	8.9
유포 우려	유포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22.5	합계	100
유포 없음			3.2		
합계			100		

* 출처: 장다혜, 김수아(2018). 온라인성폭력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방안. p.253, p.270의 결과를 요약함.

이처럼 유포로 인한 피해의 비중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처벌의 기준인 범죄의 심각성 판단에 있어 범죄 현장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범죄 이후 저질러지는 개인정보와 동영상 및 이미지 등의 유포행위의 심각성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에의 노출 가능성과 피해의 범위에서 시·공간의 한계가 사라진 범죄이자 그루밍을 통해 시작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오프라인 성범죄와 비교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II-3>과 같다.

표 II-3. 오프라인 성범죄 대비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요약

구분	오프라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관계	오프라인 접근성 중심(가족, 친지)	온라인 접근성 중심 (SNS, 익명 채팅 등)
접근 과정	기존 관계 이용	온라인 그루밍
피해내용	신체적 피해 비중 높음	신체적 피해 + 심리적/사회적 피해
피해 지속성	상대적으로 단기간 물리적인 차단 가능성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서 지속 물리적인 차단 어려움
개입 방안	물리적 공간 관리, 빠른 발견	온라인 플랫폼 협력, 데이터 삭제 경제적 이익 차단/환수/배상

2.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선행연구

1)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선행연구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루밍 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윤정숙, 이태헌, 김현숙, 2019)에 따르면, <표 II-4>와 같이 친족관계 혹은 친족 외 면식관계가 주를 이루는 오프라인 그루밍과는 달리,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와는 무관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인 경우가 전체의 8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1회성 관계인 경우가 한 건도 없었는데, 이는 온라인 그루밍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범죄의 지속기간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일반 성범죄는 절반이 1일로 끝난 반면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지속기간은 이틀에서 일주일 사이가 33.3%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도 16.7%로 매우 높았다.

표 II-4.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관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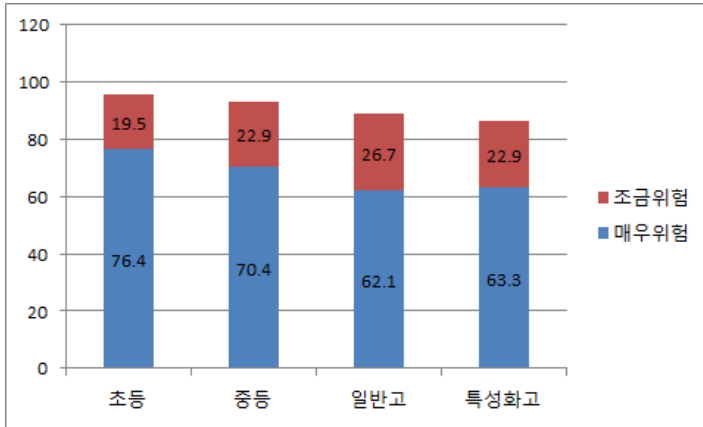
(단위: %)

가해자 피해자 관계	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일반 성범죄
친족관계 : 친자녀(손주), 양자녀/동거인자녀, 형제/친척 포함	36.7	-	15.2
친족 외 면식관계 : 친구/이웃, 학교/학원/보육원생, 고용주/피 고용인 관계 포함	40.8	5.3	15.2
온라인에서 맺어진 관계	6.1	84.2	4.5
비면식, 1회성 관계	10.2	-	62.1
기타	6.1	10.5	3.0

* 출처: 윤정숙 외(2019).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p.52.

2019년 12월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대상 인터넷 이용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결과(탁틴내일, 2020)를 발표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에서 36.4%가 온라인을 통해 낯선 사람의 쪽지나 대화 요구를 받아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을 살펴보면 12-13세의 청소년 중에서는 17.0%, 14-16세 청소년에서는 34.0%, 17-19세 청소년에서는 44.2%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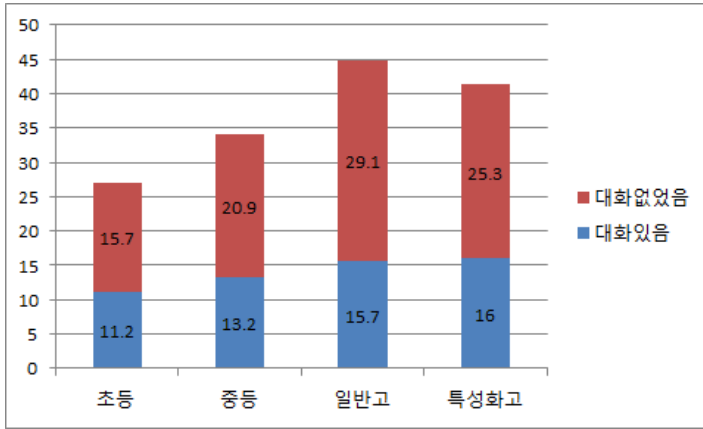
반면에 [그림 II-2]를 보면, 온라인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낯선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동이 위험하다는 인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별로 보자면 초등학생들보다는 중학생들의 위험인식이 낮았고, 고등학생들이 가장 낮았다.



* 출처: 탁틴내일(2020). 2020년 청소년대상 인터넷 이용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34-35.

그림 II-2.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위험성 인식수준

다음으로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의 쪽지나 대화신청에 따른 대응 경험을 보면, [그림 II-3]과 같이 조사대상 전체 초등학생 중에서 11.2%, 중학생 중에서 13.2%, 일반고 재학생 중에서는 15.7%, 특성화고 재학생은 16.0%가 온라인에서 낯선 이의 대화요청이나 쪽지에 응답해서 대화를 이어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이 높아질수록 대화를 기피한 비율이 늘어난 점은 다행이지만 대화에 끌려들 어간 청소년의 숫자 역시 증가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출처: 탁틴내일(2020). 2020년 청소년대상 인터넷 이용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34-35.

그림 II-3.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의 쪽지나 대화신청에 따른 대응 경험

청소년들이 받은 쪽지나 대화의 내용 중에서 ‘나이나 이름, 거주지,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요청’은 22.6%로 가장 많았고,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하며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려는 시도’는 18.6%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의 시작에 해당하는 요소들이다. 특히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현금 및 문화상품권 등의 물질적 보상을 제안한 경우가 25.2%였다. 제안을 받은 청소년 중 25.1%는 실제로 자신의 얼굴,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한 경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자기 영상이 공중에 유포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2.3%를 차지했다. 상대방을 오프라인에서 만난 청소년은 15%였는데, 이들 중 1/4 이상은 신체접촉이나 성관계와 같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다.

2020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김지영 외, 2020)에서는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잠재적인 온라인 그루밍 범죄 노출 가능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22.4%가 소셜네트워크,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낮선 타인과 대화하다가 온라인 그루밍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잠재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의 그루밍 성범죄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인지한 주요국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금지 조항과 이를 위반할 시에 적용할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2021년 성보호 법률 규정 개정 이전까지 한국은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21년 3월 개정안에서도 온라인 그루밍의 처벌은 아동과 만날 목적으로 접근했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여전히 제한된 처벌규정인 것이다.

표 II-5. 그루밍 /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제도의 국가별 현황

국가	온라인 그루밍 대상 법률 규정	온라인 그루밍 의 법적 정의	아동과 만날 목적의 그루밍 처벌규정	아동과 만날 목적이 아닌 그루밍 처벌규정	아동에게 음란물 상영 시 처벌규정
미국	○	○	○	○	○
영국	○	○	○	○	○
호주	○	○	○	○	○
캐나다	○	○	○	○	○
뉴질랜드	○	○	○	○	○
싱가포르	○	×	○	○ ('19년)	○
한국	×	×	○('21년)	×	○

* 출처: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ICMEC] (2017), 김지영 외(2020) p.19에서 재인용.

2)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선행 연구

이와 같은 개념을 토대로 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각 유형별로 현행법에 명시된 처벌 법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김한균, 김지선,

윤정숙, 윤지영, 김대근, 장다혜, 2020)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조항과 양형기준은 실제 법정에서 내려지는 판결과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이용 음란물 소지죄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법정에서 판결한 1,891건 중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아동 이용 음란물 제작, 판매, 배포라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한 실제 선고형량 역시 평균 14.2개월에 불과했다. 김한균 외(2020)는 현행 양형 기준은 종래 형량범위의 약 70~80% 범위에서 약간 조정된 정도이며,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는 향후 관련법을 재개정하여 법정형을 가중하더라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따라서 형벌규정의 개정 이전에 판결에 적용되는 양형기준 자체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가 유포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회적으로 비난이 가해질 수 있으며, 심각한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불법촬영물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들이 양형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양형위원회, 2019; 김한균, 2020, 재인용). 즉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성범죄 등에서 설정된 감경요소인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디지털 성범죄 감경요소로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김한균, 20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8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102명의 최종심의 선고형을 분석한 결과(김한균 외, 2020), 유사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최종심의 선고형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된 세 가지 법률 중에서 법정형이 가장 낮은 성폭력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가 적용된 경우 집행유예가 59.5%로 징역형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아동대상 음란행위 등)이 적용된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45.8%로 높게 선고되었다(김한균 외, 2020). 반면 법정형이 가장 높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가 적용된 경우에는 징역형이 51.2%로 가장 높았다(김한균 외, 2020). 즉, 아동·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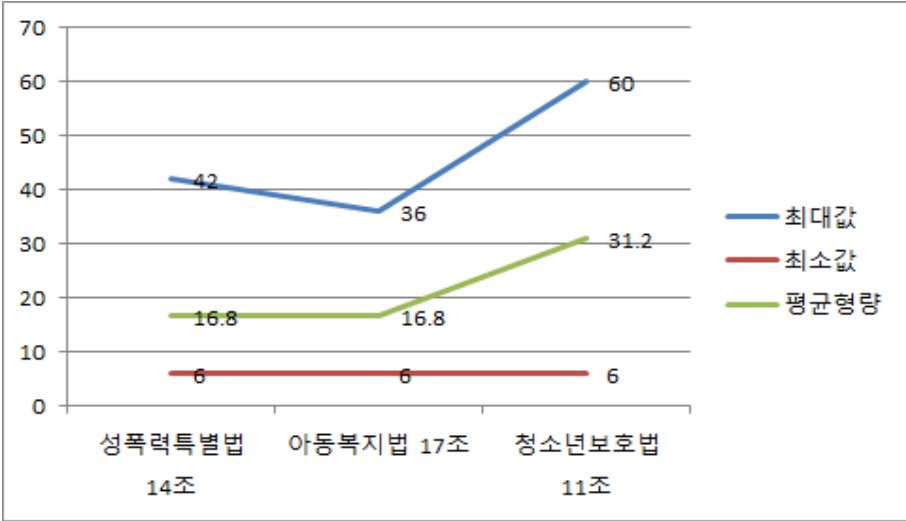
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성적 영상물의 촬영/제작, 유포, 소지 등의 행위)에 대해 법정형이 낮은 법률이 적용될수록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한균 외, 2020).

표 II-6.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 적용 법률에 따른 최종심 선고형의 유형 분포
(단위: %)

최종심 선고형	적용 죄명			전체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징역형	21.6	41.7	51.2	38.2
집행유예	59.5	45.8	48.8	52.0
벌금형	18.9	12.5	0.0	9.8
계	100.0	100.0	100.0	100.0

* 출처: 김한균 외(2020). 디지털성범죄 및 성착취 대응방향. KIC 이슈페이퍼 특별호. p.2-4.

징역형을 받은 사례에서 실제 징역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림 II-4]에 서 나타나듯 성폭력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와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 (아동대상 음란행위 등)을 적용한 경우 평균 징역형량이 각각 16.8개월(약 1년 5개월)이었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를 적용 한 경우 평균 징역형량은 31.2개월(약 2년 7개월)로 앞의 두 법률을 적용한 경우보 다는 약 2배 정도 많았다, 그러나 이 형량 역시 법이 정한 형량의 하한(5년)은커녕 그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많은 사례에서 판사의 재량에 의한 작량감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판결 건수의 27.5%에 판사에 의한 작량감경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법정 형량이 큰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적용 사건의 경우에는 전체 41건 중 절반이 넘는 26건(63.4%)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초범 등의 사유를 들어 판사가 작량감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김한균 외(2020). 디지털성범죄 및 성착취 대응방향. KIC 이슈페이퍼 특별호. p.2-4.

그림 II-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 징역선고 형량의 분포

이에 2020년 12월 7일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이 의결했다(〈표 II-7〉 참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양형 기준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의 양형을 특별가중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했는데, 그 내용이 이전에 비해서는 구체적이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모호하거나 주관적인 요소가 많다. 양형위에서 제시한 가중요소에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 범행,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등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 2020.12.7.). 반면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내부고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2020.12.7.).

표 II-7.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적 규정과 양형기준

유형	구분	적용 법조	감경	기본	가중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7항(상습범)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3년
	영리목적 판매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2년6월 ~ 5년	4년 ~ 8년	6년 ~ 12년
	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아동·청소년 알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구입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5항(상습범)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반포 등	동법 제14조 제2항, 5항(상습범)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영리목적 반포 등	동법 제14조 제3항, 5항(상습범)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소지 등	동법 제14조 제4항, 5항(상습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허위 영상물의 반포 등	편집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4항(상습범)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반포 등	동법 제14조의2 제2항, 4항(상습범)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영리목적 반포 등	동법 제14조의2 제3항, 4항(상습범)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3항(상습범)	9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4년
	강요	동법 제14조의3 제2항, 3항(상습범)	1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통신매체이용 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2020.12.7.).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6/digital_sexual_01.jsp에서 2021년 7월 20일 인출.

3.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현황⁷⁾

1) 사이버성희롱 관련 법 규정

지금까지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통상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의미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성적 언동을 지칭한다(윤정숙, 박미숙, 2016). 직장 내 성희롱을 규율하는 대표 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을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의 3가지로 나누어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 상에서는 사실상 신체적 성희롱은 일어나기 힘들고 주로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사이버성희롱에 적용하면서 한계가 나타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성희롱을 하였을 때 처벌조항으로는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조항을 들 수 있다. 동 법의 제13조 조항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2020년 5월 개정). 또한 동 법의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는 위

7) 본 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진에게 제공된 자문 및 콜로키움 발표(2021.6.3.)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작성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정숙 연구위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10.20. 일부개정, 법률 제17507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2021년 5월 9일 인출.

조(제13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⁹⁾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사이버공간에서 성희롱을 하였을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장 70조의 벌칙조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동 법의 동 조항에서는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SNS 및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성희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사실을 가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위 조항을 통해 형사처분이 이뤄지며, 사실을 드러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거짓을 드러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을 알 수 있다.

(3) 아동복지법¹⁰⁾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사이버성희롱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의 금지행위로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6.8. 일부개정, 법률 제18201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2021년 5월 9일 인출.

10) 아동복지법(2021.8.17. 타법개정, 법률 제18425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lsEflInfoP.do?lsiSeq=234781#0000>에서 2021년 5월 9일 인출.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성적학대 행위는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 학대만을 연상하지만 동 법에서 규정하듯,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 성희롱은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를 포괄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희롱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가능하다.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조항 1호에서는 제17조 2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의 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범은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가능하며, 학교, 유치원, 학원,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까지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을 상대로 사이버공간상에서 성희롱을 하였을 때라도 그 행위의 수준, 지속성, 반복성, 신체적 성학대로의 연결 등 범죄행위의 경중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함을 짐작할 수 있다.

2)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 규정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최근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그루밍 행위를 보면 더 이상 접촉형 성범죄의 예비 행위가 아니며, 그루밍 행위만으로도 온라인 공간상에서 충분히 성착취와 성학대가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온라인 그루밍은 그 자체로 이미 범죄행위이며,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행위의 시작지점이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성착취나 성학대가 발생한 후에서야 사법기관이 개입하는 것보다 성범죄자가 아동을 피해자로 선택하여 채팅 앱 등으로 광고성 유인메시지 등을 송신하며 성적 대화를 시도하는 순간부터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유럽의회의 관련 협약(란차로테협약)에서도 온라인 그루밍을 법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2¹¹⁾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장 최근에 신설되었다(2021년 3월 제정). 동법은 제15조의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신설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2¹²⁾

또한 동법 제25조의 2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사법경찰관은 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고, ②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거래, 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등, 신분위장수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11) 출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1.12. 타법개정, 법률 제1789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2021년 5월 9일 인출.

12) 출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1.12. 타법개정, 법률 제1789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2021년 5월 9일 인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정보보호법의 개정을 통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온라인 그루밍 규정은 온라인상에서의 성적 대화를 통한 유인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고, 이러한 유인 행위가 실질적으로 성착취와 성학대로 이어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된 만큼 사법경찰관의 신분비공개를 통한 위장수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 그루밍의 가해자는 대개 가족의 감시와 모니터링에 취약하고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 경계심을 덜 품거나, 경제적 혹은 지적 취약성이 있는 피해자를 목표로 하는 만큼 피해자가 유인 상황을 그루밍으로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그루밍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 신상 정보 공개 등을 협박하여 지속적으로 성착취 행위에 가담하도록 종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범죄 행위의 연속선상에서 보다 이른 시점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지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는 별개로 통신망에서 그러한 혐의점이 포착되었거나 제 3자의 인지를 통해 범죄의 혐의점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위장수사는 그루밍 행위의 처벌을 위한 수사기법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신분비공개를 통한 통신망의 잠입을 통해 일정부분 범죄행위의 모니터링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범죄의 위축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3) 성착취 영상물 관련 범죄 관련 법 규정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 관련 범죄는 크게 1) 비동의 촬영 및 제작, 2) 비동의 유포, 3) 소비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비동의 촬영 및 제작의 경우, 공공장소나 사적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 촬영하는 경우(은닉 촬영)와 이러한 방식으로 실시간 화상 녹화하는 경우, 그리고 성행위나 성폭력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등의 세부유형이 있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온라인

공간상에 유포하지 않고 제작하여 장비에 소지하고 있어도 ‘제작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성착취 영상물의 유포 행위는 이러한 제작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로, 비동의 유포는 합의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했거나 자기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혹은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다운받고 다시 유포한 경우,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업로드 하여 유포한 경우, 혹은 제반 유포행위를 협박한 경우가 해당된다. 소비 유형으로는 불법촬영물을 시청, 공유, 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하는 경우 혹은 유포를 방조하거나 협력하는 행위로 웹하드나 포르노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 혹은 이용자, 피해영상물의 시청자, 시청 후 유포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

(1)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정보보호법)¹³⁾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동 조항은 전년도 n변방 사건을 통해 처벌 수위가 상향 조정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우선 제 1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을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5항

13) 출처: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21.1.12. 타법개정, 법률 제1789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2021년 5월 9일 인출.

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종래의 벌금형을 삭제하였다.

표 II -8.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영상물 관련 범죄의 법 규정

유형	세부유형	사례
비동의 촬영 및 제작	1. 은닉촬영 (공공장소, 사적 공간) 2. 화상 녹화 3. 성행위/성폭력 촬영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인구가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촬영(불법도촬, 소위 몰레카메라) - 신체일부촬영(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 온변 보는 행위촬영 - 성행위장면 촬영
	비동의 유포	- 누드촬영물, 자위영상,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촬영 유포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포
	비동의 유포	- 불법 촬영물을 알면서 다운받고 다시 유포 - 금전적 수익 등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불법촬영물을 업로드 하여 유포 -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 이별후 재화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 -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소비	재유포	1. 성행위 촬영물 유포협박 2. 괴롭힘 등의 목적으로 유포 협박
	유포 협박	1. 영리목적으로 유포방조 및 협력 2. 비동의 유포 성적촬영물을 시청, 공유, 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

* 출처: 최소윤, 한민경(2020). '사이버 음란물'에서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범죄학, 14(2), 145-168.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¹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폭력처벌법의 제14조 조항을 적용받는다. 동 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 우선 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서는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14)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10.20. 일부개정, 법률 제17507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2021년 5월 9일 인출.

벌금에 처하며,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제14조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에서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현황

2020년 12월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의 선고형량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하였던 만큼,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의 상한은 예견되던 바였다. 불법촬영물 제작이 몰카촬영으로 치부되어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고, 사건 수가 많았던 유통이나 소지의 경우도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기존 선고형량은 과소처벌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개정된 양형기준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해 기본형량범위의 상·하한 범위와 감경요소의 하한(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의 최하한)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범죄의 양형기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 배포, 알선, 구입하는 것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래 <표 II-9>와 같다. 동 기준은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1항부터 5항까지의 각각 위반사항에 대해 기본영역과 감경영역, 가중영역의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표 II-9.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상습범
1	제작 등	2년 6월 ~ 6년	5년 ~ 9년	7년 ~ 13년	7년 ~ 19년 6월	7년 ~ 29년 3월	10년 6월 ~ 29년 3월
2	영리 목적 판매 등	2년 6월 ~ 5년	4년 ~ 8년	6년 ~ 12년	6년 ~ 18년	6년 ~ 27년	상습 가중 규정 없음
3	배포 등	1년 6월 ~ 4년	2년 6월 ~ 6년	4년 ~ 8년	4년 ~ 12년	4년 ~ 18년	
4	아동·청소년 알선	1년 6월 ~ 4년	2년 6월 ~ 6년	4년 ~ 8년	4년 ~ 12년	4년 ~ 18년	
5	구입 등	6월 ~ 1년 4월	10월 ~ 2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4년 6월	1년 6월 ~ 6년 9월	

*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2020.12.7.).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6/digital_sexual_01.jsp에서 2021년 7월 20일 인출.

〈표 II-9〉를 보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기본 5년~9년의 양형을 받고 감경 2년 6월~6년, 가중 7년~13년, 특별가중 7년~19년 6월, 다수범의 경우 7년~29년 3월, 상습범의 경우 10년 6월~29년 3월에 처해져, 동 범죄로 최대 29년 3월의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습가중 규정이 없는 나머지 범죄의 기본 형량은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4년~8년, 배포등과 알선의 경우 2년 6월~6년, 구입 등의 경우 10월~2년이지만, 특별가중의 경우 선고형량이 각각 18년, 12년, 12년, 4년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고 다수범의 경우 선고 형량의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래에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구입 등 소지죄의 경우(제 5유형) 가중 1년 6개월~3년, 특별가중 1년 6개월~4년 6개월, 다수범 1년 6개월~6년 9개월로 최대 6년 9개월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범죄의 선고 형량감경 및 가중요소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범죄의 선고형량에서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로 양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1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양형 감경 및 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행위자 / 기타 •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2020.12.7.).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6/digital_sexual_01.jsp에서 2021년 7월 20일 인출.

먼저 감경요소에 대한 특별양형인자는 행위와 행위자/기타로 분리하고 있다. 행위에 대한 감경요소로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심신미약, 자수 등의 자발적인 개시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령,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행위자가 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제시하고 있다¹⁵⁾.

가중요소에 대한 특별양형인자는 그 범죄행위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비단할만한 범행동기가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상당기간 행해진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피해가 상당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등으로 상정하고 있다¹⁶⁾.

15)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2020.12.7.).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6/digital_sexual_01.jsp에서 2021년7월 20일 인출.

16)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2020.12.7.).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6/digital_sexual_01.jsp에서 2021년 7월 20일 인출.

가중 특별양형인자 중 ‘비난할만한 범행동기’는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가 해당한다. 또 다른 인자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지칭하도록 되어 있다¹⁷⁾. 끝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성착취물을 ① 제작, 수입, 수출하거나, ②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학생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③ 판매·대여·배포·제공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④ 공연히 전시, 상영하거나, ⑤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로 상정해 놓고 있다¹⁸⁾.

17)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2020.12.7.).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6/digital_sexual_01.jsp에서 2021년 7월 20일 인출.

18)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2020.12.7.).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6/digital_sexual_01.jsp에서 2021년 7월 20일 인출.

5.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현황¹⁹⁾

1) 전국적 피해지원 체계의 부재

일선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삭제 지원과 같은 기존의 피해지원 방법과는 차별적인 방식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김여진, 2020). 성폭력 피해지원 체계는 폭력의 성격이나 피해자 배경 등에 따라 특수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발전을 이루어왔다(김여진, 2020). 그러나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한 지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김여진, 2020).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상담소 중에 7개 권역에서 2명의 인건비만을 지원하는 예산을 수립하였다(서승희, 2020b). 성폭력상담소 단체들은 이에 대해 ① 성폭력상담소의 기존 예산과 분리된 별도의 예산이므로 행정적 부담이 늘고, 또한 매년 달라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이라는 점, ② 2명의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작은 예산이라는 점, ③ 기존의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과 호봉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나 역할 배분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④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들이 디지털 성폭력 사건들을 이미 지원하고 있음에도 몇 곳의 인건비만 늘리는 점, ⑤ 지자체 예산도 포함된 것이므로 지자체의 협조가 없을 경우 권역별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 ⑥ 이미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성폭력상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단편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지적해왔다(서승희, 2020b). 현장단체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수립된 정책으로 인해 실무적인 지원시스템은 더욱 열악하고 불안정해지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전국

19) 이 절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가 작성하였음.

적 피해지원 체계는 시작부터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서승희, 2020b).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실태 파악이 요구된다(서승희, 2020b).

또한 각 지자체별로 디지털 성폭력 지원센터를 준비하거나 실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성폭력상담소, 지자체 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사성과 같은 그 밖의 피해지원 단체 등 이들에 대한 각각의 역할 배분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현재 이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를 개소하였고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등이 추진을 검토 및 준비하고 있다. 지금처럼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조직의 확장은 반가운 일이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잘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직이 각개전투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지역별, 피해 특성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2) 삭제 지원의 한계와 대안 필요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피해지원 방식은 삭제 지원이다. 그러나 삭제 지원도 절대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삭제 지원은 이미 유포된 피해 촬영물을 삭제하는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완벽하고 신속하게 삭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서승희, 2020b). 따라서 사전에 유포를 막을 수 없고 완벽하게 삭제할 수도 없다는 점은 피해자에게 디지털 성폭력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촬영물이 잊히길 바라며, 잊히는 것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여기기도 한다(서승희, 2020b). 실제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경험자는 자신의 촬영물이 세상에서 사라지길 바라며 삭제지원이 종료되는 18시부터 새벽까지는 자신의 촬영물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느라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지원의 공백 역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삭제 지원은 일개 민간단체가 소화할 수 없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 체계 안에서 소화되어야 한다. 공적영역으로 전문화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삭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인력과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예산상의 문제로 매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인력 고용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완벽하고 신속하게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기술을 개발 등 삭제 지원을 보완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서승희, 2020b).

또한 게시물에 하나씩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문제적 사이트를 처벌하고 폐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만 전체적인 피해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밖에도 디지털 성폭력 삭제 지원과 디지털 성폭력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될 시점에 신설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 3²⁰⁾을 근거로 삭제 지원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원 대상 피해의 범위와 영역, 구상권 행사의 실효적 문제 등의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에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에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 1. 29.>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3항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 지원의 내용·방법, 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본조신설 2018. 3. 13.] [제목개정 2020. 1. 29.]

출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1.12. 일부개정, 법률 제17895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2021년 7월 21일 인출.

논의가 더 필요하다²¹⁾. 또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촬영물 압수 방식(온라인 저장매체 포함), 피해촬영물 증거 채택 문제, 원본 폐기의 정의 등에 대해 정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실제 폭력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체계가 완성되어야 한다(서승희, 2020b).

3)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낮은 접근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권리를 빼앗기는 반면, 그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매우 미약했다. 그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사회권 박탈에 대한 문제가 몇 차례 공론화 되었으나 여전히 이렇다 할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에게 5,000만원의 치료비 및 생계비가 지원된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이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으로 마련된 지원 체계가 아니었다(서승희, 2020b). 즉, 사법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사실상 거짓 홍보를 한 것이며, 이 때문에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너무 큰 금액의 지원금이 사용된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여러 건 게시되기도 했다. 실제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해 아주 복잡한 증빙서류들 여러 개를 모두 제출한 피해자가 오랜 기다림 끝에 총 50만원의 생계비 지급으로 끝난 사례도 있다.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해고당하고 피해 대응만 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50만원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 지원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홍보는 5,000만원으로 발표되었으나, 실제로는 1/100인 5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의 실태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생계비 지원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서승희, 2020b). 실제로 피해촬영물과 신상정보가 함께 유포되면서 부당해고 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며, 피해당사자에게 피해촬영물을

21) 출처: 박성혜(2019).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 2019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컨퍼런스 자료집, 46-61.

보여주면서 “너의 성관계 영상이 맞느냐?”고 묻거나, “네가 피해자인 것은 맞지만 박사방 피해자라면 함께 일할 수 없다”며 해고를 통보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원 체계에 접근할 때도 장벽이 된다.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한데, 이 절차가 피해경험자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 사실이 세상이 모두 알려진 피해자가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포기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실태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회복 프로젝트 <내가 만드는 하루>의 사례를 인용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직접 배분하는 사업으로 실제로 총 44,030,000원의 후원금을 58명의 피해자들에게 배분하였는데, 피해자들에게 사용내역 증빙을 요구하지 않았다(서승희, 2020b). 다만 피해 이후 겪었던 어려운 경험을 공유하고 신청서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만들고 싶은 하루를 계획하도록 했다. 신청서에는 친구와 밥 먹기, 여행가기, 요가 배우기, 학원 다니기, 핸드폰 요금 내기, 생리대 구매하기 등 누구에게나 허락된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권리들이 적혀있었다(서승희, 2020b). 이 프로젝트는 실제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으며,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일상의 권리가 회복되고 보장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입법적 공백 및 개선지점

(1)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내용

표 II-11.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 전	개정 후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개정 전	개정 후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출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1.12. 타법개정, 법률 제1789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_2021년_7월_25일_인출.

<표 II-11>에서 온라인 그루밍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하 아청법) 제11조 중 2021년 개정된 부분은 용어, 형량, 상습범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아청법 제11조의 용어(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개정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그동안의 음란 개념을 탈피하면서 폭력의 본질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동으로 보이지만 성인을 재현한 것이라 주장하는’ 리얼돌 판매 등의 문제는 ‘음란’이라는 잘못된 관점을 바꾸어나갈 때 비로소 어떤 대안적 방식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다룰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할 수 있다(서승희, 2020a). 이는 아동·청소년, 여성 대상 범죄를 다루는 법체계에 대한 개선 및 정비와 연결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의 문제점

본 단체에서 가장 자주 접수되는 온라인 그루밍 유형은 그루밍을 통해 성적 촬영물을 만들게 하고 받아내는 사례이다. 법률 지원 시 가해자가 접근하여 성적 촬영물을 받아내는 과정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하여 아청법 제 11조 1항을 적용하고자 노력하지만, 사례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해당 행위에 ‘강제 추행죄’가 적용되거나 혹은 아청법의 제11조 5항 ‘소지죄’로 다루기도 하고, ‘아동 복지법’을 적용하는 사건도 있다(서승희, 2020a).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적촬영물 사건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과 자원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혹은 판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판결이 전혀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엄밀히 이 가해 행위를 제11조 1항에 명시된 ‘제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제11조 1항 문구에 ‘촬영물을 받아내는 성착취 행위’를 보다 제대로 담아낼 표현이 필요하다.

해당 법률이 만들어질 때 일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포르노그래피 처벌을 위한 법률을 참고해서 만들어졌으나, 현재 한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상당수가 피해자에게 그루밍을 통해 접근하거나 금전적으로 유인하여 스스로 찍게 한 것이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스스로 찍게 만든 행위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본다고 한다(서승희, 2020a). 물론 한국에서도 아청법 제11조 1항에서의 제작으로 간주해 법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데, ‘제작’이라는 표현은 특정한 제작현장에서 음란 ‘물(物)’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상징하고 사용한 용어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고 있는 아동 성착취 사건에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서승희, 2020a). 때문에 법률 적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성적 촬영물을 스스로 만들어 보내도록 한 행위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표현이 해당 조항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서승희, 2020a).

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작과 수입, 수출이 하나의 규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모호함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성착취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수입과 수출은 유통 및 배포와 관련한 조항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기획하거나 운영한 행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아동법 제11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2항과 3항은 영리목적과 관련하여 구분이 가능하지만 3항의 광고·소개라는 표현은 해석을 모호하게 한다. 또한 4항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라는 표현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해지원 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보지 못하였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처벌법을 참고하면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특정한 환경에서 ‘제작’한다는 전제를 두고 구성한 법률이기에 그렇다(서승희, 2020a). 모든 법률은 해석의 여지가 있겠으나, 법률상 단어 하나를 두고 다투게 되는 현장에서는 해석의 여부에 사건을 맡겨둘 여유가 없다(서승희, 2020a).

(3) ‘n번방 방지법’ 이후의 디지털 성폭력 전반적 입법 및 정책 공백

형사 소송은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지만

성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경험자들은 피해를 중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서승희, 2020b).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서는 촬영물 유포를 중단하기 위해 유포자를 고소하거나 유포 협박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협박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서승희, 2020b). 따라서 입법 공백을 메우는 것은 곧 피해를 중단하기 위한 제도권 내에서의 대응 기회를 피해경험자에게 제공하는 일이기도 하다(서승희, 2020b).

2020년 4월 29일 20대 국회의 막바지 시점의 본회의에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존의 디지털 성폭력에 관한 입법 공백이 일부 메워졌다²²⁾. 특히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제4항의 신설

22) 2020년 6월 30일 기준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 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 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불법촬영물이나 비동의 유포 피해촬영물의 원본 혹은 복제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의 신설은 디지털 성폭력이 소비로서 완성되는 폭력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였고, 피해촬영물의 유통 시장에서의 수요의 측면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다. 그렇지만 피해경험자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가해자의 피해촬영물 소지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발판이 생겼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유의미한 개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촬영물을 이용한 유형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폭력 처벌법이 논의되어 왔음을 짚어야 한다(서승희, 2020b). 이번 개정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중심이었고 그 밖의 유형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규제의 공백이 존재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언어적 성폭력과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법적 처벌의 공백이 가장 크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을 해석하는 법의 관점이 ‘음란’ 개념을 차용함에 따른 문제들도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과제이다(서승희, 2020b).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10.20. 일부개정, 법률 제17507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2021년 7월 21일 인출.

6.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법 규정 현황과 대안²³⁾

최근 ‘소라넷 사건’, ‘웹하드 카르텔 사건’에 이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각돼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 상당수가 여성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은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신종 범죄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범죄로 추가 입법하고, 법정형을 가중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 빈도나 정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²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디지털 환경에 쉽게 중독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온라인 그루밍을 고려하지 않고 성인 사건과 동일 선상에서 판단하는 시각이 만연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입법 또는 단순히 법정형을 가중하는 법 개정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길 수 없다.

물론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미리 입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고, 범죄의 유형을 명백하게 입법해야 하는 형법의 특성상 현실적인 입법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을 할 때는 죄형법정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해석상의 유연성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신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실태파악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고, 형사처벌을 입법하기 이전에 변화된 사회나 문화에 따라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정책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23) 이 절은 한국여성변호사회 배수진 변호사가 작성하였음.

24) 2017년 9월 n번방 사건이 발각되기 이전에도 디지털 성범죄 건수가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으로 급증하고 있었다.

출처: 김한균(2017). 사이버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 9(3), p.48-49에서 2017년 9월 26일자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인용함.

사회적 의식이 성장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객기나 호기심으로 이해하여 훈계하며 방치했던 일들이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극악무도하게 진화한 것을 눈으로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한 조급한 마음에 형사처벌이라는 응보적 대응에만 치중하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피해와 가해의 경계가 모호한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대책,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규정의 문제점

(1)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정의가 통일되지 않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의 결과물은 전파 속도가 폭발적이고 영원히 삭제하거나 유포를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참담하다. 이러한 피해를 좌시할 수도 없고, 예방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규정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 범죄에 대한 정의가 법마다 정의가 다른 것이다.

2020년 9월 제135차 전문위원단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명칭을 채택하였고, 이후 제10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범죄군 명칭을 디지털 성범죄로 의결하였다(송영지, 2021).

학계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나 디지털 이미지를 악용하여 성적 착취 내지 성적학대를 비롯한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기도 하고(김한균, 2017), 2017년 9월 국무조정실에 발표한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불법촬영, 변형카메라 판매, 불법촬영물 유포,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 불법촬영물 사이트 운영, 웹하드 음란물 해비업로더,

음란인터넷방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2021년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분위장수사나 신분비공개 수사를 허용하는 수사특례를 규정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열거하였다. 디지털 성범죄란 위 법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동법 제11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죄(동법 제15조의 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의 반포 등 죄, 영리목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 등 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3항)을 말한다.

그러나 양형위원회에서 범죄군 명칭으로 의결한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범위가 다르므로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는 않다. 법에서 정한 디지털 성범죄는 신분위장수사나 신분비공개수사가 허용되는 범위를 정하면서 부득이 한정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명확한 법적 의미가 규정될 때까지는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착취를 하는 행위라고 폭넓게 성착취 범행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함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 그루밍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2에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이전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여 성착취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실무에서 위와 같은 규정으로 처벌되는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정서적 불안정함이나 결핍을 일반적으로 느끼는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화를 통한 유대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친밀한 관계로서 신뢰가 쌓이기 전이어서 성착취 대화를 하려는 상대방을 신고하지 않는 한 온라인 그루밍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단속하는 것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유대관계나 친밀한 신뢰가 생긴 이후에는 관계 상실에 대한 불안감이나 성착취나 인적사항 등을 통한 협박에 대한 공포심이나 부모님 등에게 일시적 일탈이 들킬 것을 염려함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신고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정익중 외, 2020; 전수아 외, 2021).

특히 성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성교 행위 등을 유인, 권유하여 온라인 그루밍에 성공함으로써 성착취 행동까지 나아간 경우 이미 아동·청소년과 상대방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고감으로써 유대관계나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연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한다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이 부적절한 유인임에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해 성착취까지 당할 경우 이와 같은 행위가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포섭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해답이 명료하지 않다.

또한 아동·청소년과 상대방 사이에 대가나 선물 등을 주고받았을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가까지 받았으므로 아동·청소년은 줄지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당사자가 되고 만다. 현행법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라고 구별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 아동·청소년’과

달리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⁵⁾.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는 대부분 온라인 그루밍으로 시작되므로 모든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의 잠재적 피해대상으로 보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전수아 외, 2021).

(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단하는 기준의 부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²⁶⁾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동법 제2조 제4호 참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동법 제2조 제5호)이라고 정의 한다. 성착취물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는 문제 될 것이 없으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할 경우 성착취물 속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형법의 고의의 문제에 부딪쳐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성인 대상의 음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피해 아동·청소년”이란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란 피해 아동·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출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1.12. 타법개정, 법률 제1789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2021년 7월 9일 인출.

26) 출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1.12. 타법개정, 법률 제1789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2021년 7월 9일 인출.

실제로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대하여 검사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담당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 결국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관된 기준이 없는 매우 주관적인 의미이므로 사실상 가해자의 자백이 없는 이상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란 쉽지 않게 된다.

(4)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불필요한 구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삭제된 대상 아동·청소년과 같은 의미이고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나 보호 처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 연계, 교육 등 참여, 보호나 자립 등을 위한 위탁결정 등을 규정하여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여전히 보호라는 미명하에 선도하거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이분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주저 없이 신고하고 보호를 요청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성착취는 성폭력 못지않게 성매매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으나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별해야 할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찾을 수도 없다. 유엔아동권리협약²⁷⁾상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학대 등으로 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한 취지²⁸⁾에

27) 한국 정부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므로 위 규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상 아동은 18세 미만을 의미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

28)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반하는 규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유사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라도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는 사건 관계자를 만나게 되면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구별되고, 13세 미만 의제강간이나 13세 미만 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판부의 잣대도 갈려 선고형에 차이를 두는 것이 당연시될 우려도 있다.

2020.10.8. 선고된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3 등 판결에서 논문까지 인용하면서 “순수한 자발적 성매매는 없다”,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성착취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등 구체적이고 세세한 이유를 판시하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가 일어나는 경위 및 특징을 고려하여야 하고, 성폭력과 성매매를 구분하지 않고 온라인 그루밍으로 성착취에 이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시급함을 강조하였다²⁹⁾.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와 비교하여 그 경로에 있어서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을 주로 매개로 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점이 그것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과의 교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채팅사이트 등은 이를 범죄에 이용하려는 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의사결정 능력과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이 채팅사이트 등을 이용할 경우 여러 가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 랜덤채팅(Random

목적 달성을 위해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가. 아동을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춘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29) 울산지방법원 2020.10.8. 선고 2020고합73 판결.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ulsa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2001&gubun=44&cbub_code=000411&searchWord=&pageIndex=1에서 2021년 7월 17일 인출.

Chatting) 애플리케이션이란, 불특정 이용자와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모바일 공간으로서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와 설정에 따라 무작위 연결, 거리 순 연결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성별 및 나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스마트폰이 가진 위치기반 서비스(LBS)와 빠른 통신 속도 등을 기반으로, 목적에 맞는 만남을 빠르고 쉽게 가질 수 있는 랜덤채팅의 장점이, 복잡한 절차는 과감히 생략하기를 원하는 청소년 세대의 특성과 결부되어 그 사용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에 대한 성의 상품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는 점, 앱 개발자가 영리 추구를 위한 회원확보를 위하여 성매매 조장 채팅방이나 성매매 유인글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점,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을 성적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유인에 대한 거부감이 희박하다는 점,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른 실시간 랜덤채팅 앱의 접근용이성과 무차별적인 광고메일 등에 의해 청소년이 흥미 위주로 간단하게 랜덤채팅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 가출청소년의 경우 당장 필요한 생계비를 쉽게 마련하기 위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또래집단의 유대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 주변 친구들의 권유 및 알선행위를 주도하는 선배들의 강요가 존재한다는 점 등이 결부되어 랜덤채팅을 통한 성매매의 유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박찬걸, 2017).》국제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착취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관련 국제 선언에 의하면, 성매매를 포함한 상업적 아동 성착취는 현대판 노예제에 다름 아니고, 아동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한다. 《...아동권리조약(CRC)의 후속 이행규범이라 할 수 있는 1996년의 스톡홀름 컨그레스 선언(이하, '선언')과 행동과제는 아동 성매매, 아동 인신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 현상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표지를 '상업적 아동 성착취'(CSEC,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로 개념화하면서 국제적 규모에서 '상업적 아동 성착취'를 퇴치하기 위한 행동과제를 채택하고, 그 이행을 모든 아동권리조약의 조인·비준국과 컨그레스 참가국들에게 촉구하였다. ...'선언'의 제5문단(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a fundamental violation of children's right. It comprises sexual abuse by the adult and remuneration in cash or kind to the child or a third person or persons. The child is treated as a sexual object and as a commercial objec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onstitutes a form of coercion and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amount to forced labour and a contemporary form of slavery) 중 제4문장은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는 아동에 대한 강제·폭력의 한 형태를 구성하며, 강요된 노동, 현대판 노예형태에 해당 한다"고 규정한다. ... '상업적 아동 성착취' 개념은 성매매행위와 아동 포르노그래피 행위, 이를 중개·알선하는 온갖 형태의 포주행위, 성매매행위에 대한 아동 포르노그래피 행위를 제공할 아동의 인신매매행위 등 연관성 있는 행위들을 일련의 묶음으로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개발된 '조작적 용어'(manipulative term)이다. '상업적 아동 성착취'로 포괄될 수 있는 행위들의 공통분모는 이들 행위가 모두 ㉠ '아동의 몸'을 성적 대상(sexual object)으로 삼고 더 나아가 ㉡ '아동의 몸'을 상품(commodity)으로 간주하고 상품 판매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거나 부당수익을 획득하는 점에 있다. ...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는, 아동이 육체적·심리적·영적·도덕적·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심각하고, 평생에 걸치는 기간,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결과(여기에는 조기임신, 모성사망, 부상, 성장부진, 신체적 장애와 HIV/AIDS와 같은 성병이 포함된다)로

귀결될 수 있다. 아동이 유년기를 즐기고 생산적이며 보람 있고 고귀한 삶을 누릴 권리는 심각하게 손상 된다’(‘선언’ 제9문단), … “부패와 결탁, 법의 부재, 혹은 부적절한 법, 느슨한 법 집행, 그리고 아동에게 미치는 해로운 충격에 대한 법집행 담당자의 인식부족도 직·간접적으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초래하는 요인들이다”(‘선언’ 제7문단), “사회의 모든 층위에 있는 광범한 개인과 집단들이 이 착취적 실천에 기여하고 있다. 착취자의 부류에는 중개인들, 가족구성원들, 비즈니스 부문, 서비스 공급자, 수요자(고객), 지역사회 지도자, 공무원이 포함된다. 이 사람들은 무관심, 피해 아동이 겪는 해로운 결과에 대한 무지, 혹은 아동을 경제적 상품으로 간주하는 태도와 가치판단의 영속화를 통하여 착취에 기여 한다”(‘선언’ 제8문단)》『청소년 성보호법과 성매매 방지, 심회기, 형사정책 제14권 제2호』《“노예의 현 시대적 유형에 대한 유엔 워킹 그룹”은 아동 성매매의 희생자인 아동은 지울 수 없는 심리적 감정적 악몽을 경험한다고 본다. 성매매를 경험하는 아동은 단지 성적인 대상으로서 종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존엄성에 대한 완전한 상실을 유발하며, 나아가 신체적 상해, 질병, 고문, 구타, 노예화되는 비인간적 취급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은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결과적으로 성매매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거나, 약물중독자, 비행자 등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많은 경우 아동기부터 이미 HIV 바이러스와 AIDS에 감염될 확률이 지극히 높은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아동의 성매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차선자, 아세아여성법학 8호』

* 출처: 울산지방법원 2020.10.8. 선고 2020고합73 판결. 양형의 이유.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ulsa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2001&gubun=44&cbub_code=000411&searchWord=&pageIndex=1에서 2021년 7월 17일 인출.

이제라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는 성매매와 성폭력을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5)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인정하는 규정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동의는 성인의 동의와 다를 바 없다. 절대적 보호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의 나이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난이 있었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학대로부터 보호하라는 취지에도 위반된다. 결국 2020년 5월 19일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었다³⁰⁾.

그러나 위 규정 역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더라도 나이를 16세 이상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다. 아동·청소년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잠시 어른 흉내를 내고 싶어서 자기 나이보다 많다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은 면죄부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형법이 원칙적으로 고의범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때문이지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나이를 속였다고 하여 그 아동·청소년의 동의에 온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동의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전한 보호를 포기하고, 구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합의한 성관계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 사회가 묵인해도 된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나아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그루밍을 통해 추행이나 간음할 경우에는 여전히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난점이 있다.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워지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고 아동·청소년인 가해자의 그루밍 방법도 성인의 그루밍 방법과 전혀 다르지 않은데도 쌍방 동의가 있는 성행위로 처벌되지 않고 종결되거나 그루밍을 통한 성범죄라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처리 되어 피해자의 의사나 일반인의 처벌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럴 경우 가해자도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강행할 수는 없으나 가해자인 아동·청소년의 교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6) 디지털 성범죄에서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간주하는 조항

성폭력 범죄에 일반화된 문제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감경요소로 작용한다.

30)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10.20. 일부개정, 법률 제17507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2021년 7월 19일 인출.

특별양형인자이든 일반양형인자이든 성범죄에서 처벌불원은 매우 강력한 감경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 촬영만을 제외하고 ‘유포’라는 피해가 발생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가해자에 대한 감경요소가 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리지 않는 것이므로 감경요소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유포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³¹⁾의 의미를 명백히 이해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확산을 저지할 수 없으므로 감경인자로 국민들의 건전한 법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형사 합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소송경제를 꾀하는 것이며, 형사 합의를 통해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형사 합의가 된 이상 형사 합의서에는 ‘처벌 불원 및 선처 호소, 향후 민형사상 소송 포기 등’의 문구가 인쇄문구처럼 기재하는 것이 오랜 관례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일률적으로 감경요소로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³²⁾에 의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죄에서 영리목적 판매나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명시된 것은 해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므로 감경요소로 분류하려면 일반양형인자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위 양형위원회의 양형인자 평가원칙의 개요에 의하면 특별양

31)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32)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2020.12.7.).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6/digital_sexual_01.jsp에서 2021년 7월 19일 인출.

형인자는 일반양형인자에 비하여 양형에 대한 영향력이 큰 인자로서 일반양형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되므로, 현행 양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면 단순 촬영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배포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라 양형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2019.12.27. 선고 2018헌바46³³⁾ 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행위를 처벌하는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을 불문하고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정당한 입법목적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의 상품화, 즉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및 이의 알선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의 대표적 사례인 청소년을 이용한 필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음란물 제작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이다.

33) 출처: 헌법재판소 2019.12.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CaseNote 사이트.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8헌바46>에서 2021년 7월 29일 인출.

(중략)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는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할 뿐이며 그 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그 행위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 출처: 헌법재판소 2019.12.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CaseNote 사이트.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8헌바46>에서 2021년 7월 29일 인출.

대법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배경 및 입법취지, 관련규정까지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자신의 휴대 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1.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법익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³⁴⁾.

(7) 섹스팅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의 경합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활동이나 정보통신망에서의 SNS 활동이

34) 출처: 헌법재판소 2019.12.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CaseNote 사이트.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8헌바46>에서 2021년 7월 29일 인출.

일상적이므로 발신자와 수신자가 자신의 노출 사진이나 성적 행위 등을 묘사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주고받는 섹스팅을 흔히 한다(허경미, 2017). 이러한 섹스팅과 관련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가 경합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범주 이내에 해당할 경우 처벌 필요성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보호법적으로 판단하므로³⁵⁾, 수신자와 발신자가 동의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주고받는다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헌법재판소 2019.12.27. 선고 2018헌바46³⁶⁾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하므로, 만약 수신자와 발신자가 모두 아동·청소년이고 각자의 의사에 반하지는 않지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문제 삼는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면, 해석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죄가 성립하게 되어 제3자가 이를 문제 삼고 악용한다면, 처벌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의사를 중심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처벌 여부가 달라져

35) 출처: 대법원 2017.6.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판례/\(2016도21389\)](https://www.law.go.kr/판례/(2016도21389))에서 2021년 7월 30일 인출.

36) 출처: 헌법재판소 2019.12.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CaseNote 사이트.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8헌바46>에서 2021년 7월 29일 인출.

형평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삭제한 취지와도 일치하지 않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로써 수용해야 할 행위에 대한 범위나 기준도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립해야 한다.

(8)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표현과 '음란' 개념에 대한 문제

디지털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성요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매우 문제적이며 반드시 대체되어야 한다. 이미 관련 형법 연구에서 여러 번 지적된바 있는 부분이다. 성 표현물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음란'의 개념은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보는 사람에 의해 규정되는 특성이 있고 성 표현물의 범죄성을 판단할 때 역시 보는 사람의 시선에서 음란여부를 평가하고 있다(서승희, 2020b).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본질은 얼마나 음란한지에 있지 않음에도 그동안의 형법 체계의 음란 개념이 차용되며 손쉽게 '성적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하는가'로 성폭력 사건을 판단되고 있다(서승희, 2020b).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법률용어로서 명확하지도 않고, 성폭력을 설명하지도 못한다. 이 구성요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진술과정 중 피해자에게 해당 성폭력 사건 당시 '수치심을 느꼈는지' 물어보며 기소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또 법원에서는 판사마다 다른 기준으로 '성적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촬영물'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한다.

실제로 전신이 불법촬영 되었을 경우 음란한 신체 부위가 얼마나 부각되었는지, 피해경험자가 얼마나 음란한 옷을 입고 있었는지 따위가 판단 요소가 되기도 하며 처분 결과에 영향에 미친다(서승희, 2020b). 2019년 보도된 의정부지방법원의

‘레깅스 불법촬영 무죄’ 판결에서 ‘음란하지 않아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것’의 견본으로 스키니 진을 선정했고, 그것과 비교해 레깅스가 더 음란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서승희, 2020b).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한 사건의 무죄판결로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레깅스 판결’에서 대법원은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성폭력 처벌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 법률 상 문제적인 조항이 개정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민사회와 연구자들이 해당 표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은 탓에 작년 n번방 방지법 때 개정 및 신설된 법률에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다시 사용되었다. 그리고 2021년 2월 26일 신설된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온라인 그루밍’ 법률에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또 다시 사용되었다. 잘못된 관점과 성적 통념이 반영된 구성요건이 신설되는 법률에 차용되면서 개정의 과제가 늘어나고 있기에, 조속히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표현의 대체용어를 마련해야 한다.

2) 디지털 성범죄 법 규정의 대안

(1) 온라인 그루밍의 시작단계에서 적발 처벌 규정 신설

현행법은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고, 온라인 그루밍과 무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뿐 온라인 그루밍으로 인한 성착취가 발생한 경우 그 전체 과정을 아울러 일거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그루밍 자체를 처벌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와의 유대관계 및 신뢰를 깨고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온라인 그루밍에 성공하여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의 요구에

동의하고 그 요구를 들어준다면 성폭력 범죄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등이 행사되지 않고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행위가 되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긴다. 그러므로 온라인 그루밍으로 인한 성착취가 발생할 경우 그러한 일련의 과정 자체를 성착취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큰 요구까지 들어주게 된 과정을 자책하지 않고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로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계와 위력만 인정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던(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등)』 대법원이 2020년 8월 27일 전원합의체로 기존 판례를 파기하였다³⁷⁾.

37) 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CaseNote 사이트. <https://casenote.kr/대법원/2015도9436>에서 2021년 7월 29일 인출.

- [1]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 [2]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위계의 개념 및 성폭력법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입법 태도, 피해자의 인지적·심리적·관계적 특성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자체인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인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 출처: 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CaseNote 사이트: <https://casenote.kr/대법원/2015도9436>에서 2021년 7월 29일 인출.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보호대상으로 삼는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피감독자,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그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간음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여³⁸⁾, 간음 자체가 아닌 간음을 결심하게 된 동기나 대가 등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온라인 그루밍으로 인한 성착취가 일어난 경우에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대법원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향후 하급심에서도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온전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2)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매매’ 피해와 ‘성범죄’ 피해 구분 삭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신고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비난을 받거나 선도의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대상 청소년이라는 용어와 대상 청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의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 아동·청소년 이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여전히 신고하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형사 절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으로 보이나,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선언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주저 없이 신고하라는 신호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성매매나 성폭력 등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

38) 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CaseNote 사이트. <https://casenote.kr/대법원/2015도9436>에서 2021년 7월 29일 인출.

취이므로 국제적 인식에 반하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온전히 보호한다는 뜻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신고³⁹⁾가 자유로울수록 음지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기도하는 가해자의 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정상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삭제되어야 일선 경찰에서 성폭력과 성매매를 완전한 별개로 보고 별개의 잣대를 대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3) 적발시 엄중한 처벌 보장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적발이나 단속이 쉽지 않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용기를 내 성범죄를 신고하더라도 피의자 취급을 받으며 피해 진술을 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우여곡절을 겪고 재판이 시작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비난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풍조 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신고형이 낮게 되는데, 신고형이 낮은 것도 아동·청소년이 비난과 불편을 감수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한 것을 후회하게 하는 것 중 하나이다. 과소처벌이라는 오명을 벗고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성착취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편적인 결과에 치중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4) 법정형과 신고형의 일치성 확보

충격적인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해당 법조항의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으나, 법정형이 높아진다고 하여 신고형이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급하게 법정형만 가중하는 입법 태도를 지양하여야 한다.

법정형이 가중될 때마다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높다는 비판이 일어나는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인격살인에 해당하므로

39) 아동·청소년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대화창마다 신고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필요하다.

적절하지 않다. 다만, 법정형이 중해지기만 한다면 다양한 성착취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피해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진술하도록 하는 압박 이유로 작용할 수 있어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증인이 되는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⁴⁰⁾, 피해자에게 입증의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법관의 가치판단을 통해 보충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정비하는 것이 법정형을 가중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적발 및 관리 시스템 도입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 통신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 접속차단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부과하고 있는데, 삭제하면 증거 수집에 차질이 생기므로 삭제보다는 접속 차단이 적절하다. 삭제하기보다는 증거 채집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을 관리하는 전담기관⁴¹⁾으로 보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정보를 쌓는 것이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을 위해 필요하다.

영국 내무부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을 수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아동 학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고, 압수한 전자기기에 동일한 이미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성착취물 삭제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박다운, 이관희, 2020).

영국과 같이 체계적으로 성착취물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관련 사건이 입건

40) 헌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4헌바45 판결.

CaseNote 사이트.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4헌바45>에서 2021년 7월 29일 인출.

41) 온라인 그루밍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수사관을 양성하고, 성착취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청소년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민간단체와 협조가 잘 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될 때마다 해당 성착취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수사를 검토해야 하므로 수사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상태라는 주관적인 상태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불공평함이 초래될 수 있다.

(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식별을 위한 인공지능 도입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가해자가 인식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할 법이 달라지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미국의 쏰(THORN)이라는 비영리 기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구출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성착취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식별하여 가해자의 주관적 인식 여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김혜진, 2020).

(7)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그루밍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수사관이 주축이 되고, 해당 성착취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동·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간단체⁴²⁾와의 협조 및 비밀유지가 가능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실무에서도 담당 수사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이나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기도 한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갑이라는 성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아동·청소년이 을이라는 성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게 되어 오로지 “어머니에게 자신의 일탈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갑에게 부탁하여 을의 협박에서 벗어났는데, 그 이후 갑, 을부터 협박을

42) 실무에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탁틴내일이나 십대여성인권센터 등을 통해 고소를 결심하고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민간단체에서는 아동·청소년이 편하게 연락하고 상담할 수 있으므로 민간단체와 수평적 관계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단속 및 적발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받고 성관계에 응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담당 경찰은 동의한 성관계라고 단정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어머니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로 기소하여 유죄 선고를 받게 한 사례가 있었다. 아동·청소년은 성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소한 위협에도 굴복할 수 있다는 사정을 헤아렸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단죄가 가능했다.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연방정부 조직체계와 미국연방수사국 등 2가지 주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아동 음란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위험성이 아닌 호기심으로 보아 후순위 수사 대상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신원부, 이원희, 2020). 실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진술을 분석하는 진술분석가가 온라인 그루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폭행, 협박이 없다거나 아동·청소년이 동의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하므로 이러한 종류의 시행착오는 신속하게 바로잡혀야 한다.

(8) 기소 단계에서 '상상적 경합'의 적극 활용

검사에게는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에 관하여 재량권이 있다. 실무에서는 검사의 기소에 따라 법정형이 낮은 법이나 법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되는 사례가 있어, 하나의 행위라도 관점에 따라 다양한 법이나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상상적 경합⁴³⁾ 관계에 있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므로, 가급적 사안의 실체에 부합한다면 모든 법과 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여야 한다. 같은 법과 법조항으로 기소되면 유사한 사례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양형권고를 참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해자별로 선고형에 납득하기 어려운 편차가 발생할 위험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될 경우

43)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처단형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죄명이 여러 개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어떤 주장이나 변명을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인식을 주어 1개의 죄명으로 기소된 경우보다 선고형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혹시라도 중한 죄가 누락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초기에 바로잡게 되는 것이므로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9) 디지털 네이티브와 교감할 수 있는 방법 발굴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은 타인과 교류하는 방법이 기득권자들과는 다르다.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대화에 익숙하고 대면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각자 이어폰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동시에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과 교류하는 방법은 이미 바뀌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당황하는 것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이 아니다.

이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구시대적인 교류를 강조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이 겪는 정서적인 불안감이나 결핍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예상되므로 디지털 네이티브가 공감할 새롭고 세련된 교류 방법을 발굴하여, 아동·청소년에게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덜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고려할 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교육 방법대로 성인이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복종을 요구하여서는 부작용만 커질 것이고, 눈높이를 맞춰 각각의 생각과 방법을 존중하고 스스로 헤쳐나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안전하다는 든든함과 신뢰를 주는 사람과의 매칭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관련된 각 전문 분야의 노력이 융합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검사를 1차적으로는 부모의 문답을 통해 실시하는데, 취학 이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검사를 부모에게

맡기는 것은 부모와 아동·청소년 자녀 사이에 괴리감이 없다는 전제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므로 인력을 충원하여 선생님이나 전문가 입장에서의 정서검사를 병행하고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시기가 영원하지 않고, 그 시기가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10) 배상명령의 적극적 인용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형사 재판 받을 때 그 형사 재판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위자료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많은 경우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절차의 간소화나 소송경제, 부모와의 관계가 얽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배상명령을 활용하면 일거에 민·형사 두 사건이 모두 해결되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재판부에서 위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까닭에 사실상 아동·청소년은 형사 재판이 종결 또는 확정된 이후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해자와의 공격과 방어를 교차하기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피해를 입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법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이 하루 빨리 건강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상명령을 적극적으로 인용해야 하고 위자료⁴⁴⁾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4) 2017. 1.경 위자료 연구반에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위 방안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1) 채팅앱 운영자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수익 몰수 필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가벼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기존에는 채팅앱이나 SNS 등의 유해성에 대하여 지적하더라도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라는 반박이 통해 결국 참담한 현실에 이르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앱 사업자를 5,584개를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을 5개만 내려 비난을 사기도 했으나⁴⁵⁾,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랜덤 채팅앱 90개를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⁴⁶⁾하였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유해 앱을 걸러내는 것에 덧붙여 채팅앱 운영자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앱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몰수할 입법이 필요하다⁴⁷⁾. 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가장 크고 효과적인 제재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입건이 되거나 형사처벌이 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와의 인과관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수익 몰수 규정 신설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있으나 법이 있는 것과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수익 몰수 규정을 서둘러 입법해야 할 것이다.

(12)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사업자 책임을 명시

2021년 개정된 ‘n번방 방지법’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정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개정내용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은 기자회견이나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의견을 강하게 개진하였다(서승희, 2020b). 이는 입법적인 준비시간이 촉박

45) 연합뉴스포맥스(2020.10.8.). 불법 앱 5,584개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은 고작 5개.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1059>에서 2021년 5월 27일 인출.

4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1.5.12.).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수사 의뢰.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297&call_from=rsslink에서 2021년 7월 28일 인출.

47)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수익 몰수를 제안하였으나,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개정안 자체에서도 삭제되고 말았다.

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률이기에 사업자들이 이해하고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 책임과 의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서승희, 2020b). 또한 행정적 절차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하다면, 현실적 제반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부담이 사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도 요구된다(서승희, 2020b). 빠르게 법이 개정된 만큼 향후 개선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13)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삭제⁴⁸⁾

2021년 제14조의 2에서는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피의자의 합성이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당연히 피의자들은 반포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며 죄를 축소하고자 시도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불필요한 내용으로 반포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도 성적 목적의 합성은 처벌되어야 한다.

48)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10.20. 일부개정, 법률 제17507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2021년 7월 29일 인출.

○———— 제3장 해외사례 분석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 1. 해외사례 조사 개요
- 2. 조사결과
- 3. 시사점

1. 해외사례 조사 개요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한국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현상이다. 실제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이 적발되고 그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사례 중에는 한국과 중첩되는 경우와, 아직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례 분석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 정책 수립과 현행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장의 해외사례 조사 분석은 본 연구의 정책 제안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국내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제기된 정책과제를 살펴보고, 해외 사례 조사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과 대응정책이 있는지 최신 동향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I-1. 해외사례 조사 개요

해외사례 ⁴⁹⁾	본 연구 정책제안에서 활용
국가 온라인상 아동보호 전략개발	- 책임입안자들이 국가 온라인 아동보호 전략을 개발할 때 고려할 사항

49) 이 절에서는 각 해외사례 마다 각주로 출처를 표기하고, 연구자가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해외사례 ⁴⁹⁾	본 연구 정책제안에서 활용
온라인 그루밍 판례 및 처벌사례	- 그루밍 처벌 규정의 실효성 마련 - 성적착취 목적의 대화, 미성년자 연령인증, 실제만남 등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효과증진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플랫폼 기업의 모니터링 의무 및 사회적책임(CSR) 규정	- 기업의 아동 성착취물(CSAM)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 의무 - 기업의 자율규제 및 사전 예방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활성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공조 신고시스템 및 시민단체의 역할	-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 증진 - 국제공조 신고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시민단체의 역할 -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의 입법 필요성 - 산업-정부-NPOs의 글로벌 다분야 협업

2. 조사결과

1) 국가 온라인상 아동보호 전략개발⁵⁰⁾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보호 정책이 고려해야 할 문제들은 여러 가지다. 우선 기존 법률이 아동과 청소년들이 온라인 미디어의 안전한 사용과 기본적인 아동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다. 그리고 정책적인 최우선 과제와 지원 정책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도 중요한 주제다. 정책 접근성도 중요한 문제다. 정책 수요자인 아동·청소년, 학부모들이 성착취 관련 사례를 직접 문의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온라인상 아동 안전 관련 국가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정책입안자들은 다양한 범위의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온라인 아동보호전략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정

50) 출처: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020). Guidelines for policy-makers on Child Online Protection.

https://www.itu.int/en/ITU-D/Cybersecurity/Documents/COP/Guidelines/2020-translations/S-GEN-COP.POL_MAKERS-2020-PDF-E.pdf에서 2021년 7월 12일 인출.

시에 고려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현존하는 법률은 어느 정도 안전한 온라인 사용 및 아동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온라인 안전 사용 관련하여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온라인 안전 사용을 위해 보조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지, 온라인 안전 사용을 위해 다른 기관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학부모 및 아동들이 온라인 학대 의심 관련 신고를 서비스 사용 기관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동의 온라인 안전 사용과 관련하여 최우선 당면과제는 무엇인지, 아동의 온라인 사용에 있어 장점은 무엇인지 등이다. 정책입안자들이 온라인상 아동 안전 관련 국가 전략을 세우기 위해, 국가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III-2. 국가 온라인상 아동보호 전략 개발 주요사항

구분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법적 프레임워크	• 기존의 법률과 제도가 온라인을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권한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 • 현실에서 불법인 아동에 대한 모든 행위는 온라인상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는 원칙. • 아동에 대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규정의 적절성 확인.
규제 프레임워크	• 전체적 규제 틀 뿐만 아니라, 자체 또는 공동규제 정책개발을 포함한 규제 정책 개발을 고려해야 함. • 자체 또는 공동 규제 정책 개발은 우수 관리 강령(codes of good practice) 또는 기본적인 온라인 안전 코드 작성 및 배포를 포함. 이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조정/협업을 돕고, 기술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규제 모델은 이해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결과 및 이해당사자들이 지녀야 할 법적 의무도 포함해야 함. • 정책위반에 대한 처벌도 고려해야 함.
불법 콘텐츠 신고	• 온라인상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불법 콘텐츠를 리포트 할 수 있는 시스템 수립: 리포트 수단은 이해 및 이용이 쉽고, 신속하게 작동해야 함. • 기업들에게 디지털 성착취를 식별하고 차단 및 제거 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관련 불법 콘텐츠들을 관련 기관으로 넘길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의무 부여.

구분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우려에 대한 신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사용 시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을 시 이 문제를 신고하고, 이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이해 당사자	온라인 아동 보호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⁵¹⁾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리서치	온라인상 아동 보호에 대해 정부 기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경험/우려/기회 등을 최대한 잘 받아들이기 위해 다양한 범위의 연구를 수행해야 함. 또한, 기존 혹은 계획된 온라인 아동 보호 수행 방안 실행을 위해 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디지털 리터러시 및 역량교육	아동 연령에 적합한 온라인 안전한 사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커리큘럼의 일부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
교육자료	- 이해당사자들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 나라 문화 규범 및 법률을 반영한 아동 온라인 안전 교육/인식개선 캠페인 자료를 개발하고 모든 적용 가능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배포. 인식개선 캠페인 자료를 배포하는 데는 대중매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동/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의 긍정적인 부분을 더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하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자료는 지양해야 함. 온라인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온라인상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안전한 사용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개발,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인터넷의 이점은 극대화하는 방안을 부모에게 교육하는 방법 등 모색.
아동보호	아동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전문가들에게(사회복지, 보건, 학교 등) 온라인 발생 학대 및 위험 사건을 식별/대응/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아동 보호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 필요.
국가 인식	온라인상 아동 보호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국가 인식개선 캠페인 마련. Safer Internet Day 같은 글로벌 캠페인을 활용.
툴, 서비스 및 세팅	- 장치 설정, 기술 도구(예 - 필터링 프로그램) 및 아동 보호 앱 및 설정 활용. - 운영 체제 업데이트 및 적절한 보안 소프트웨어/ 앱 사용을 장려하고, 사용자가 기기 사용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도록 유도.

51) 이해당사자 예시 : 부기관, 법집행기관, 사회 복지 기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ISPs), 기타 전자 서비스 제공 업체(ESPs),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자, 교원조직, 학부모단체, 아동 및 청소년, 아동 보호 관련 기관 및 NGO, 관련 연구 단체, 인터넷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도서관, 원격 서비스 제공자, PC방, 온라인 게임 센터 등)

2) 온라인 그루밍 처벌 판례 및 처벌 규정의 실효성

(1) IN-A1 and IN-A2 (피해 아동 가명): 2014년 영국 그루밍 처벌사례

2014년 영국의 판례로 온라인 그루밍의 과정과 심각성을 알 수 있는 판례이다. 실제 만남은 없었지만 영국에서 처벌받았던 온라인 그루밍 판례로서, 한국에서 그루밍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이 있다.

IN-A1 and IN-A2 (피해 아동 가명): 영국의 2014년 그루밍 처벌사례

IN-A1 and IN-A2 (피해 아동 가명)

8. IN-A1과 IN-A2는 심리과정에서 증거 진술을 했다. IN-A1과 IN-A2는 남매 관계이며, 베어쉐어(BearShare)라는 음악공유 웹사이트에서 만난 안토니 오코너(Anthony O'Connor, 57세 남성)의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들이다.
9. 초기에 안토니는 IN-A1에게 자신을 22세의 '수잔' 여성이라고 거짓 소개하며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당시 IN-A1는 13세였다. 수잔은 처음에 IN-A1에게 취미를 묻는 등 친절했으며,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 스카이프(Skype)를 이용했다. IN-A1은 수잔에 자신의 남동생인 IN-A2를 소개했고, 남동생은 당시 한 살 어린 12세였다. 오랜 시간동안 수잔은 IN-A1을 컨트롤하기 시작했고, 수잔이 남성임이 드러났을 때 IN-A1은 이미 연락을 멈출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10. 안토니는 IN-A2가 IN-A1에 성적인 접촉을 하도록 시켰고, 성기 삽입 행위까지 지시하기도 했다(실제 일어나지는 않음). 심리과정에서 이 일에 대해 IN-A1는, 이후 자신이 안토니의 노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안토니는 IN-A1에게 웹카메라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그는 IN-A1에게 자신이 IN-A1과 IN-A1의 가족사진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웠다고 거짓말했다. IN-A1은 아주 잠시동안 안토니와 연락을 멈추려고 노력하였으나, 안토니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비난하며 자신이 연락을 끊으려고 하여 가지고 있던 사진을 사실은 지우지 않았음을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또한, 안토니는 IN-A1에게 남매가 함께 찍힌 사진을 보내며, IN-A1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을 시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했으며, 그녀를 납치하겠다고도 협박했다 (안토니가 수잔인 척할 당시 IN-A1이 집주소를 알려주었다). 안토니는 지속적으로 IN-A1에게 한 가지만 더 해주면 더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으나, 멈추지 않았다. 안토니가 14년 징역형을 구형받을 당시, 판사는 그의 행동을 두고 "최악의 그루밍(the grossest manipulation)"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출처: Independent Inquiry Child Sexual Abuse (2020), The Internet Investigation Report. <https://www.iicsa.org.uk/key-documents/17805/view/internet-investigation-report-march-2020.pdf>에서 2021년 7월 12일 인출. p.55-56.

(2) Legare case (르가리 케이스/ 캐나다/ 2010) - R v Legare

2010년 캐나다의 판례로 르가리는 본인을 17세 남학생이라고 속였으며, 피해자는 13세라고 이야기하였다. 전화를 하며 르가리가 성적인 내용을 담은 대화를 하였다. 둘 사이의 만남이나 실제 성적 활동이 없었지만, 르가리는 형법 s.172.1에 의거하여 체포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대법원은 형법 s.172.1에 의거하여 16세 이하 청소년과 온라인 및 통신을 통하여 성적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facilitating) 대화 금지 해석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터넷 상에서 아동을 그루밍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물리적인 만남 없이 대화만 하더라도 유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Legare case (르가리 케이스/ 캐나다/ 2010) - R v Legare

〈사건개요, Background〉

2003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크레이그 바솔로뮤 르가리(Craig Bartholomew Legare)는 온라인상에서 12살의 소녀와 성적으로 노골적인 대화를 두 번 나눈 혐의로 기소됐다. 르가리는 자신을 17살이라고 소개, 피해 아동에 14살인지 물었으나 피해 아동은 13살이라고 대답했다. 피해 아동과의 두 번째 대화에서 피해 아동은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르가리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대화(dirty talk)”를 목적으로 피해 아동에 두 차례 전화를 걸었다. 르가리가 선정적인 발언을 하자 피해 아동은 전화를 끊었다.

르가리는 캐나다 형법 제172.1조의 성적 접촉 등의 2차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 이용에 따라 기소 됐다. 르가리는 첫 재판에서 자신은 선정적인 대화를 원했을 뿐, 그 이상의 의도는 없었으며 실제로 만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고, 실제로 르가리와 피해 아동 사이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 이에 재판관은 르가리의 행동을 두고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르가리의 반박과 같이 해당 조항에 따라 기소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만남을 위해 피해 아동을 유인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 음담패설을 나누었을 뿐 실제 접촉 의도는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캐나다 형법 제172.1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관은 첫 재판에서 캐나다 형법 제172.1조가 지나치게 좁은 의미로 해석되었으며, 이를 적절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르가리)의 실제 행동 증거 및 그의 의중을 파악하는 과정(cf. 캐나다 및 영국 형법에서는 관련 범죄에 있어 실제 행동 증거 및 의중을 판단하는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함)을 새로이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심할 것을 명령, Decision〉

항소심에서 만장일치로 재심 판결이 난 레가리 케이스와 관련, 피쉬 판사(Justice Fish)는 먼저 캐나다 형법 제172.1(1)(c)를 재해석했다.

먼저, 캐나다 형법 제172.1(1)(c)은:

172.(1): 형법 제342.1(1)조에 부합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아래의 행동에 연관된 경우 범죄에 해당한다.

172.(1)(c):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에, 형법 제151조 (성적 간섭), 제152조 (성적접촉을 위한 만남), 제160(3)조 (강간), 제173(2)조 (음부 노출), 제281조 (유괴)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우

피쉬 판사는 캐나다 형법 제172.1조는, 다른 범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 단계” 범죄에 관한 것임을 명시했다. 즉, 2차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172.1(1)(c)에 명시된 범죄들에 선행되는 행동들은 범죄화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항 내에 명시된 범죄들을 행하기 용이하도록 환경을 설정하는 행동들 역시 해당 범죄화 대상이다. 형법 제172.1(1)조를 적용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컴퓨터를 통해 범죄를 목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해당 법에 적시된 범죄 발생이 결과적으로 용이해졌음을 보여야 하며, 이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다. 또한, 의사소통이 반드시 성적으로 노골적이어야만 범죄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해 아동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악의 없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형법 제172.1(1)(c)조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때에 입증된다: (1) 컴퓨터를 이용한 의도적인 의사소통 (2) 상대방이 14세 미만의 아동임을 알고 있었거나, 14세 미만임이 예상된 경우 (3) 특정 2차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경우.

첫 재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재심을 명령했다.

〈판결, Conclusion〉

(캐나다) 의회의 형법 제172.1(1)조 제정 목적인 “온라인상에서 포식자가 먹잇감을 낚아채기 전에 그 문을 닫는” 것에 다시 한 번 초점을 맞추므로써, 르가리 사건은 실제 2차 범죄가 발생함의 여부에 관련 없이, 2차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온라인상 의사소통을 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피쉬 판사가 지적인 바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 아동 사이에 실제 육체적 접촉이 있을 필요도 없고, 의사소통이 성적으로 노골적일 필요도 없다. 다만, 2차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2차 범죄를 위한 의사소통이었음이 증명된다면, 이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출처: Canada Legal Information Institution (2009). R v Legare [2009]3 SCR 551: Closing the Cyberspace Door on Luring.
<https://canliiconnects.org/en/commentaries/36239> 에서 2021년 8월 3일 인출.

(3) 그루밍 처벌규정의 집행과정 실효성을 증진⁵²⁾

〈역량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Capacity Building/ Training Programs〉

법률이 제정되면, 법 집행 책임에 관련된 기관은 관련 법 조항에 대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법 집행관, 사회복지사, 변호사, 판사 등은 아동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들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아동 성학대 및 착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교육 프로그램에는 온/오프라인 상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문제에 대한 이해, 인식, 온라인상 아동 대상 범죄 증거 조사 및 수집, 피해 아동 신원 확인 및 인터뷰 절차 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예방과 조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토론과 경험 및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플랫폼 제공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인식 개선 캠페인〉

같은 커뮤니티 내에 있는 아동에 성학대나 착취가 의심이 된다면,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아동을 도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자원 및 서비스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 성 착취 문제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교육 및 회의, 공공 지원 활동 등이 학교, 학부모, 아동, 교사 그리고 아동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 제공되어야만 한다.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 및 시민, 기타 잠재적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공동 커뮤니티 내의 아동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52) 출처: ICMEC(2017).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https://www.icmec.org/wp-content/uploads/2017/09/Online-Grooming-of-Children_FINAL_9-18-17.pdf에서 2021년 7월 17일 인출.

2016년 영국에서는 증가하는 온라인 그루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hildline에서 #ListenToYourSelfie 캠페인을 시작해 아동들이 성착취 문제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캠페인은 2015년 온라인상 성착취 등의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아동들의 세션(예방 교육 등) 참여율이 24% 증가를 보이는 Childline의 데이터에 따라 개발된 것이다. 세션 참여율의 증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캠 사용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에 관련 상담 건수는 3,716건으로 이 중 65%의 아동이 12세~15세 아동이었으며, 16세~18세 아동은 28%였다. 해당 캠페인의 일환으로 '더 파티'와 '더 게임'이라는 두 편의 단편 영상도 제작 되었으며, 남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성적으로 착취당할 위험에 처한 젊은이들, 그리고 동성 간의 온라인 그루밍 사례 역시 다루고 있다. 또한 Childline은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리소스 외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을 통해 아동들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그루밍 및 폭력적인 관계의 징후” 등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NSPCC는 2014년 10월 영국에서 ‘법 안의 흠(Flaw in the Law)’이라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의 주된 내용은 온라인상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을 범죄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에 참여했고, 온라인 아동 보호 부서 장관에 새로운 법안을 요구했다. 이에 총리는 온라인 아동 보호 관련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며, 궁극적으로 2015 중범죄 관련 처벌법 (Serious Crime Act 2015)이 통과됐다.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스 내에서 아동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낼 시 기소될 수 있으며, 실질적 아동 학대가 시작되기 전 멈출 수 있다.

* 출처: ICMEC(2017).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https://www.icmec.org/wp-content/uploads/2017/09/Online-Grooming-of-Children_FINAL_9-18-17.pdf에서 2021년 7월 17일 인출.

〈그루밍 법안의 실행 과정〉⁵³⁾

전 세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의 위험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이 온라인 그루밍의 주요 타겟층, 온라인 그루밍에 사용되는 주요 플랫폼 등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차원에서는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지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그루밍 신고 시스템 및 공공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범위의 보조/계획 또한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온라인 상 아동 보호를 국가 차원의 우선 순위 과제로 놓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온라인 그루밍 예방책 및 사후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에 국가 간 혹은 산업 간, 공공-민간 분야의 협력은 중요한 요소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법집행 기관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 및 자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경우, 아동이 관여된 온라인상 불법 자금 거래 내역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함으로써 법 집행기관을 도울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의 접근을 막음으로써 법 집행기관을 보조할 수 있다.

온라인 그루밍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예방책 및 사후책을 적절히 시행하도록 하는 종합적 접근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각 방안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53) 출처: ICMEC(2017).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https://www.icmec.org/wp-content/uploads/2017/09/Online-Grooming-of-Children_FINAL_9-18-17.pdf에서 2021년 7월 17일 인출.

표 III-3. 온라인 그루밍 예방책 및 사후책의 종합적 접근

구분	종합적 접근	
	예방책	사후책
내용	• 국가 전략/행동 계획 • 온라인 아동 보호 프레임워크 설정 • 트레이닝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공공 인식 개선 캠페인 • 연구 및 데이터 확보	•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마련 • 온라인 그루밍 피해 발생 시 가해자의 행동을 범죄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체포, 기소, 판결 등) • 피해자 지원책 마련 • 모니터링/ 신고 시스템 마련

* 출처: ICMEC(2017).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p.26.

(4) 그루밍 과정의 범죄화⁵⁴⁾

아동 그루밍 및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화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온라인상에서는 연령이나 사진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사용하면서 익명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아동들에게 거짓 신뢰감을 준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해자들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아동들에 성적 활동을 하게 하고, 이는 오프라인에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동과 실제 만남의 여부와 무관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화〉

가해자가 아동과 실제 만남을 의도함의 여부에 관계없이, 온라인 그루밍이 일어나는 과정 자체를 범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과 실제 만남의 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화하여야 한다.

54) 출처: ICMEC(2017).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https://www.icmec.org/wp-content/uploads/2017/09/Online-Grooming-of-Children_FINAL_9-18-17.pdf에서 2021년 7월 17일 인출.

아동을 실제로 만나려고 하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표식이 나타난 때에는 이미 아동이 온라인 그루밍을 당한 후이고, 비접촉 성적 학대를 받은 이후이기 때문에 아동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들은 주로 “접촉 주도형(contact-driven)”이나 “판타지 주도형(fantasy-driven)”일 확률이 높다. 접촉 주도형의 가해자는 궁극적으로 아동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판타지 주도형의 가해자는 온라인 그루밍이 발생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대화 공간을 온라인 공간으로 국한 시킨다.

영국의 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CEOP)는 아동들에 성적인 사진을 찍도록 강요하거나, 성적인 대화 및 비디오 채팅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온라인상 아동 성범죄가 최근 웹 기반으로 발전해왔음을 발견했다. 2015년 NSPCC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웹 기반 아동 성범죄가 3,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3시간마다 한 명의 아동이 온라인상 성학대를 당하는 것과 같은 수치이다.

CEOP에 따르면 2012년 영국에서 조사된 온라인 그루밍(온라인 아동 성착취) 1,145건 중, 가해자가 오프라인에서 아동을 만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경우는 7% 미만으로 나타난 반면, 대다수는 온라인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0년 CEOP는 “해피 작전(Operation Hattie)”으로 알려진 조사를 지휘했고, 이를 통해 영국 내 78명의 아동들에 온라인상 성적 학대 및 폭력을 가한 두 형제가 체포되기도 했다. 이 두 가해자는 피해 아동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날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란사로테 위원회는 란사로테 협약 23조에 대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아동과의 만남이 반드시 직접적인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온라인 내에서만 만남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아동에 심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그루밍은 종종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이어지기도 한다: “성착취” 즉, 범죄자가 아동을 설득하여 노골적으로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보내게 하고, 그 자료를

역으로 사용하여 아동을 협박하고, 또 다른 성적 이미지 및 영상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가해자가 피해 아동에 자신이 가진 이미지/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 보내줬다며 협박을 하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 아동들이 돈을 보내기도 한다.

아동·성착취의 전형적인 단계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해자와 피해 아동 간의 연락 - 보통 인터넷이나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짐
- 피해 아동 본인이 직접 찍은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 혹은 피해 아동에 웹캠이나 스마트폰 앞에서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가해자가 이를 녹화
- 위 이미지 및 영상 인터넷 혹은 주변에 배포
- 피해 아동에 더 많은 성적 이미지/영상을 보내줄 것을 설득
- 이미 가지고 있는 영상/이미지를 발미로 피해 아동 협박
- 더 많은 성적 이미지/영상을 보내지 않을 경우,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인터넷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영상 퍼트릴 것을 협박
-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자해를 할 수도 있고, 성적 자해 혹은 자살까지 이르기도 함

* 출처: ICMEC(2017).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p.15.

〈위장수사〉

호주의 인터넷 아동보호 협회(Australian Child Exploitation Internet Unit, CEIU)는 ICT(정보통신기술)를 이용하여 아동 성학대 및 착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트롤러스 기동대(Strike Force Trawlers)를 투입해 온라인 그루밍 조사를 위한 특별한 비밀 작전을 실시했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의 CEIU와 경찰은 정기적으로 비밀리에 온라인 그루밍 관련 위장수사를 진행하였다. 2016년 이 작전을 통해 매주 한 건 이상이 발견됐고, 관련 범죄자는 체포가 되었으며, 2017년 4월 한 달 동안 8차례의 체포가 이루어졌음이 보고 됐다. 체포된 가해자들의 직업은 교사, 아버지, 사제, 경찰학교 학생 등으로 연령층 또한 10대부터 70대까

지 다양했다. CEIU는 “범죄자 검거 시 가상으로 만든 아동을 통한 경우도 있지만, 70% 이상의 케이스가 실제 피해 아동의 온라인 그루밍 의심사례를 부모가 신고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또한, CEIU는 위장수사 시 검거를 목표로 하는 범죄자들을 부추겨 위장수사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범죄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을 잘 지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3)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모니터링 의무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1) 정부의 기업 규제 프레임워크⁵⁵⁾

정부는 기업 및 제3자가 국내외 운영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이들이 정보 접근, 유해 자료 차단, 폭력 발생 사례 즉시 보고를 할 수 있는 기술 및 자원 개발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거나 알릴 수 있는 환경에서 ICT(정보통신기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

올바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모두 동일할 것이라고 단정 짓지 않아야 한다. 디지털 환경을 사용함에 있어 위험 요소에 더 많이 노출된 아동들뿐만 아니라 아동 연령에 따른 그룹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보호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 입안자가 법적 프레임워크 및 조항의 범위를 검토하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55) 출처: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020). Guidelines for policy-makers on Child Online Protection.
https://www.itu.int/en/ITU-D/Cybersecurity/Documents/COP/Guidelines/2020-translations/S-GEN-COP.POL_MAKERS-2020-PDF-E.pdf에서 2021년 7월 12일 인출.

- 아동이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나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그루밍 또는 다른 형태의 원격 유인, 갈취 또는 강요
- 배포 의도의 유무에 상관없이 CSAM 보유, 생산, 유통 체계
- 괴롭힘, 불링, 학대, 증오 연설(헤이트 스피치, hate speech)
- 온라인 테러리스트
- 사이버 안전
- 오프라인 상 불법인 것이 온라인상으로도 불법으로 취급하는지

* 출처: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020). Guidelines for policy-makers on Child Online Protection. p.31.

기업이 아동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거나 아동 권리 침해에 협력하고 용인한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기업 및 인권에 관한 지침(Guiding Principle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기업들이 대화와 참여,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을 바탕으로 합법적 접근 가능, 예측 가능, 공정한 권리들과 양립 가능, 투명한 교정 및 고충처리 시스템을 갖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고충처리 시스템은 유연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안 및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으며, 아동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경우든 법원을 이용하거나, 구체적인 행정적 절차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들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아동의 시선에 맞춘 안전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충처리 시스템이 기업 차원에서 마련이 되더라도, 정부는 기업 조사 및 아동권리 위반 관련 보상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이는 ICT 및 관련 회사들의 책임의무를 강화하고, 아동 권리와 ICT 간의 관계성 기준점 수립에 대한 규제 관련 기관들의 책임의무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기업의 의무 불이행으로 악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용할만한 다른 구제책, 즉, 민사소송이나 기타 사법적 보상 신청 과정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

에 정부의 이러한 역할은 특히 더 중요하다.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산업체가 행하는 위반 사항에 대한 불만을 접수, 조사 및 중재하는 역할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고, 대규모 학대에 대한 공개 조사 및 관련 입법 검토를 실시함으로써, 이 분야에서의 각 국가 인권 기관의 잠재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는 일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각 국가들은 아동의 권리와 기업을 동시에 수용해 낼 수 있도록 국가 인권 기관의 입법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고충처리 시스템은 아동 관련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보호를 보장해야 하며, 아동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 후속 조치 및 지속적인 확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인권 기관이나 기타 규제 기관이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한 예시는 사이버불링이다. 내부 교정 및 고충처리 시스템이 때로는 비효과적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이는 사이버불링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률상의 근거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련 공공기관이 사이버불링 신고를 접수 받고, 사이버불링 콘텐츠 원본 업로드자가 관련 자료를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권한 부여는 아동들의 디지털 사용 환경에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며, 사이버불링을 다루는 데에 중요한 요소인 신속한 대응이 명확한 법을 근거로 실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기업에 아동 권리에 대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비즈니스 관계 전반과 글로벌 운영 내에서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 방지 및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체들에 대한 보완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한 예로, 잠재적 아동 권리 위반을 예방 및 대응하는 데 있어 산업체들이 가장 높은 기준을 준수해야만 정부 관여 펀딩이나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2) 온라인 그루밍 관련하여 조사받은 기업 사례⁵⁶⁾

2018년 말-2019년 초, 영국의 각종 미디어는 언론에 제보된 기사를 통해 구글 및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의 소프트웨어사들이 아동 성포르노 이미지 교환 및 아동 그루밍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경우, Bing (마이크로소프트 사 검색 엔진)에 ‘아동 포르노(porn kids)’ 또는 ‘아동 누드 패밀리(nude family kids)’를 검색하면 성적인 아동 이미지 관련한 결과물을 여과 없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한 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미지들은 불법적인 콘텐츠들이 아니며, 해당 콘텐츠들이 성적이긴 하나 모두 18세 이상이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언론 기사가 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Bing에서 아동 성적 포르노와 관련하여 검색어를 넣을 때 성인 포르노 관련 이미지가 뜨지 않도록 검색 엔진 시스템을 더욱 강화시켰다. 마이크로소프트 영국 지사 법률 및 대외협력부장 Hugh Milward(밀 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엔지니어링 분야를 이끄는 회사로서,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당면한 과제 (아동 온라인 성착취 관련)를 해결해 나갈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이 기사를 통해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BBC 뉴스 기사에 따르면, 아동 성관련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는 왓츠앱(WhatsApp)의 그룹채팅방으로 연결되는 다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구글을 대표해 크리스티 카네갈로(Kristie Canegallo)는 이에 대해, 구글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발행되기 전 구글 정책 위반이 없는지 사전 검토, 정기적 검토, 사용자들이 정책 위반 의심 신고를 할 시, 해당

56) 출처: Independent Inquiry Child Sexual Abuse(2020). The Internet Investigation Report. <https://www.iicsa.org.uk/key-documents/17805/view/internet-investigation-report-march-2020.pdf>에서 2021년 7월 12일 인출.

애플리케이션은 별도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기사에서 지적된 애플리케이션들은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됐으며, 해당 애플리케이션 제공자들의 계정도 삭제됐음을 밝혔다.

BBC 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 소속인 왓츠앱 대변인은 “최근 여러 신고를 통해 두 앱스토어 및 대화 플랫폼 서비스들이 아동 성 학대 콘텐츠 공유에 이용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를 멈추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 관련 회사들이 협력해야만 한다”. 왓츠앱은 현재 PhotoDNA를 도입하고 있으며, “아동 성학대 관련 이미지 등을 공유하는 모든 그룹방에 플래그를 지정하고 없앨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 감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인터넷 회사들이 신고 관련한 절차를 검토하거나 향후 개선을 고려하게 된 데에는 부정적인 언론 보도로 인한 회사 평판 하락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를 향한 매스컴의 부정적인 시선들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전략에 변화를 가져오고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아가 아동 성학대 관련 이미지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그들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매스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3) 민간 기업 참여 및 기업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⁵⁷⁾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성장함에 따라 범법자들의 아동 성착취 기회가 확장되었다. 법적인 부문은 온라인의 위험 요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만, 민간 기업 역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법 집행을 보조하는 동시에 온라인 그루밍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힘을 보태야만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57) 출처: ICMEC(2017).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https://www.icmec.org/wp-content/uploads/2017/09/Online-Grooming-of-Children_FINAL_9-18-17.pdf에서 2021년 7월 17일 인출.

(SNS)와 기술 관련 기업,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 금융 서비스 업체 등이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 등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왓츠앱, 스냅챗, 스카이프 그리고 우부(영상 채팅 가능한 플랫폼, Oovoo)와 같은 SNS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온라인 포식자들이 아동에 접촉하고 이들을 그루밍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해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SNS 기업들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SNS는 자사 이용자들의 프로필 맨 위에 “패닉 버튼(Panic Button)”을 배치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그루밍이나 위협적인 행동이 의심되는 사용자가 사이버 범죄 보고 웹사이트에 신고되는 시스템이다. 이는 페이스북과 온라인 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CEOP)가 협업하여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며, 2010년 13세~18세의 영국 모바일 이용자를 대상으로 배포됐다. 즉, “패닉 버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대상자가 자신의 모바일에 다운받으면, 이들이 사용하는 SNS의 모든 이용자 프로필에서 “패닉버튼” 볼 수 있다. 패닉버튼은 뿐만 아니라, 여러 온라인상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들이 간편하고 쉽게 의심 행동을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된 첫 달에만 5만 5천 건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고, 영국 내 211건의 온라인 학대 및 온라인 그루밍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211건 모두 매우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었다.

또 다른 일부 SNS 관련 기업은 온라인 그루밍이나 온라인상 성적 학대와 관련된 법 집행을 보조하기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 책임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은 아동 성착취를 퇴치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몇몇 대기업들은 이미 아동들을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 책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술 관련 기업들은 아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구글은 이미지 분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중남미 국가에 배포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Photo DNA와 같이 다른 기술 관련 기업들도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 등 감지하고, 법 집행 기관을 보조하기 위해 전문가를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출처: ECPAT International (2012).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in the Fight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ttp://www.ecpat.org/wp-content/uploads/legacy/ecpat_journal_oct_2012.pdf에서 2021년 8월 3일 인출.

여러 SNS 관련 기업이 법 집행기관과의 협업뿐만 아니라,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동 성학대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주요 SNS 플랫폼 기업은 법 집행 관련 개인정보 보호협약이 포함되며, 개인 사용자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소환장, 법원 명령, 구속영장 등의 법적 문서를 요하고 있다. 긴급상황의 경우 SNS 기업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공개할 수 있으며, 각 기업마다 긴급상황이라 판단할 구성요건을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주요 기술 관련 기업들 또한 아동들의 안전한 온라인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CEOP와 협력하여 영국 이용자를 위해 패닉 버튼 인터넷 브라우저용 패닉 버튼을 개발했다. 패닉 버튼 사용 대상자가 이를 클릭할 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며, 온라인 성적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린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녀에게 온라인 안전을 교육하고, 자녀가 낯선 사람과 대화할 수 없도록 하는 부모 전용 여러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Claro, Telecom Personal, Telefónica Movistar와 같은 아르헨티나의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모바일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GSMA(글로벌 모바일 사업자 협회,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 도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Equipo Niñ@s는 아동 성착취 및 온라인 그루밍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공유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아르헨티나 법무부와 인권 관련 부처는 국가지원망을 통해 폭력피해 방지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피해 및 피해 의심사실이 있을 시, 0800-1987-1717을 통해 무료 상담 및 학대 신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모바일 통신사의 판매점 및 웹사이트를 통해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무료 상담 및 피해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심리 및 사회 복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24/7 팀을 운영하고 있다.

* 출처: ICMEC(2017).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p.34,
https://www.icmec.org/wp-content/uploads/2017/09/Online-Grooming-of-Children_FINAL_9-18-17.pdf에서 2021년 7월 17일 인출.

(4) 규제기관의 플랫폼기업에 대한 강제조치(Enforcement measures)⁵⁸⁾

플랫폼은 그루밍을 포함하여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들이 자사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그루밍을 확인하고 예방 조치에 투자하도록 규제 요건이 있어야 한다. 또한 플랫폼에서 콘텐츠 삭제가 있을 경우, 다른 플랫폼사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많은 소셜 미디어 제공자를 위한 가장 큰 마켓 중 하나로서, 대다수의 플랫폼이 적절한 균형 잡힌 강력한 규제 요건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도입된 규제체제로 인해 유튜브, 구글, 트위터는 새로운 NetzDG 규정 시행 첫 6개월 동안 90% 이상의 불법적인 혐오 발언 내용을 삭제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페린과 우즈가 강력하게 주장했듯이, 어떠한 제재 체제라도 이는 기업이 운영되는 규모에 비례해야 한다. 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의 크기와 규모를 감안할 때, 이는 금융제재의 규모와 보다 광범위한 집행조치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규제 기관은 기업들이 온라인상 아동성범죄와 관련한 제재방침을 여기는 대신 변화를 시도할 때에 이를 장려하고 합당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장 간단한 것으로는,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단순히 ‘과징금을 납부’하고 상업적/잠재적으로 자신들에 유리하나 아동들의 안전에는 유해한 관행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만큼 충분한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제 기관이 다음과 같은 민사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58) 출처: NSPCC(2018). Taming the Wild West Web: How to regulate social networks and keep children safe from abuse.
<https://www.nspcc.org.uk/globalassets/documents/news/taming-the-wild-west-web-regulate-social-networks.pdf>에서 2021년 7월 28일 인출.

〈금융 제재(Financial Saction)〉 규제 기관은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그들의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시, 혹은 규제 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실패했을 시 등의 경우에 해당 기업들에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 패널티〉 제재 기준수를 방지하고,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제재를 어김으로써 얻는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온라인 상의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심각한 수준의 제재 위반이 지속될 경우, 벌금부과에 있어 GDPR과 비슷한 규모 - 즉, (유럽 기준) 2천만 유로 혹은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4% 중 더 높은 쪽 -로 진행하는 것이다. 규제 기관은 기업들의 규제 위반 공시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부과된 벌금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해 벌금감형을 해주는 재량도 필요하다. 시행 경고 및 통지(Enforcement warnings and notices): 규제 기관은 각 산업 분야에 알맞게 디자인된 아동 안전 장치를 기업 운영에 적용하는 등, 아동 안전과 관련하여 교정조치를 적용하도록 기업에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 제재 및 금지〉 규제 기관은 기업이 온라인상 아동 보호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용인할 경우 이를 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공개 비판 및 부정적 간접광고 명령(Public censure and adverse publicity orders): 기업들의 행동이 아동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사 홈페이지에 메시지를 띄우거나 미디어 캠페인으로 악영향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PA 컨설팅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규제 위반 및 시행 조치를 공표하는 것은 규제 인식과 신뢰를 쌓는 데에 있어 중요한 방법이며, 따라서 학부모들이 사이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더 잘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규제기관(82%)과 규제 위반사항이 공표될 때(80%) 소비자들이 더 보호

받음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에서 아동 보호의무를 크게 위반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기업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의 의무위반 범죄화는 합리적이고, 적절하며 전세계의 온라인상 아동 보호를 위한 제재 목표와 명확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범죄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통제나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많은 나라에서 이들을 형사적으로 제재할 만한 규제 절차를 갖추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7년 형사재정법(Criminal Finance Act 2017)에 규정된 기업 범죄와 관련하여 ‘예방 실패(failure to prevent)’ 범죄가 있다. 이는 기업 내 직원이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충분한 절차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뇌물이나 탈세 등의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기업 내 피고용인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기업에서 충분히 안전환경을 제공하지 못함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 기업의 최고 경영인은 미필적고의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다. 또한, 피고용인 및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주의의무(a duty of care)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영국 내에서는 1974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Act 1974)에 따라 기업은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자가 주의 의무를 총체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업은 여러 죄목으로 기소될 수 있다.

나아가 아동들에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동이므로, 이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 기업은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크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기업에 혐의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업형 범죄를 확장하고 규제 수준을 엄격하게 정하여 이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4) 국제공조 신고시스템과 시민단체

(1) 신고 시스템(Reporting Mechanisms) 및 성범죄 근절 시민단체⁵⁹⁾

아동들을 온라인상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아동이 속한 커뮤니티의 책임이다. 커뮤니티에 속한 개개인이 이러한 책임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전화 “핫라인”과 온라인 “팁라인”과 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제 인터넷 핫라인 협회(INHOPE)⁶⁰⁾는 45개국에 51개 핫라인을 설치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대중들에 아동 성학대 및 착취 자료 등의 온라인상 아동 성적 학대 정보가 있을 시 익명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별 핫라인은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된 내용의 불법 여부를 판단한 뒤, 관련 법 집행기관으로 자료를 넘기고 추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이버 팁라인(CyberTipline)⁶¹⁾을 운영하며 미국 국립실종취약 아동센터(NCMC), 연방수사국(FBI), 이민관세청, 우편검사국(USP), 비밀정보국(Secret Service) 등이 협력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이버 팁라인에 접수된 아동 성착취 의심 사례는 1,213건이다.

영국은 인터넷 감시 협회(Internet Watch Foundation, IWF)⁶²⁾를 통해 관련

59) 출처: ICMEC(2017).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https://www.icmec.org/wp-content/uploads/2017/09/Online-Grooming-of-Children_FINAL_9-18-17.pdf에서 2021년 7월 17일 인출.

60) 출처: 국제 인터넷 핫라인 협회(INHOPE) 홈페이지.

<https://www.inhope.org/EN/articles/who-we-are>에서 2021년 10월 8일 인출.

61) 출처: 사이버 팁라인(CyberTipline) 홈페이지.

<https://www.missingkids.org/gethelpnow/cybertipline>에서 2021년 10월 8일 인출.

62) 출처: 인터넷 감시 협회(IWF) 홈페이지.

<https://www.iwf.org.uk/>에서 2021년 10월 8일 인출.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 사례는 협회에서 분석한다. IWF는 2016년을 기준으로 웹사이트 및 뉴스 등에서 발생한 의심 사례 10만 5,420건 중 절반 이상인 5만 7,790건 이상이 아동 성적 학대 영상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IWF는 이러한 의심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 관련 자료들을 제거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캐나다의 톱라인(Tipline)⁶³⁾ 역시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고 대중에게 정보 및 예방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톱라인 Cybertip.ca는 매달 평균적으로 3,000건의 보고와 80,000 이상의 방문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 어린이 보호 센터(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는 2017년 2월 학부모 및 아동 게이머들에게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게임사이트인 Roblox상에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 메시지는 Cybertip.ca 사이트를 통해 전달됐으며, 캐나다 전역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채팅 메시지와 Roblox 채팅 기능을 사용하여 아동들에 직접적인 만남을 시도하는 성인 게이머들이 있음을 경고했다.

Roblox 관계자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모든 사용자의 계정은 기본적으로 친구와만 소통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 채팅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 사용을 찾아내고, 플러그를 지정하여 해당 계정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 오디오 및 영상 파일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 및 영국에서도 Roblox를 통한 온라인 그루밍 시도에 대한 경고가 발표됐으며, 미국에서도 조사가 실시됐다.

* 출처: ICMEC(2017). p.36.

63) 톱라인(Tipline) 홈페이지. <https://www.cybertip.ca/app/en/>에서 2021년 10월 8일 인출.

(2) 공공-민간의 협업과 국제적 신고 및 정보 구축⁶⁴⁾

국가 간 혹은 산업 간, 공공-민간 분야의 협력은 온라인 그루밍 예방책 및 사후 책임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법집행기관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 및 자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경우, 아동이 관여된 온라인상 불법 자금 거래 내역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함으로써 법 집행기관을 도울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의 접근을 막음으로써 법 집행기관을 보조할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과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범죄는 국경이 없고, 범죄자들이 온라인 범죄 관련 국가마다 다른 법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국가 간 및 산업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 국립경찰이 실시하고, 인터폴 및 유로폴이 협력한 탄탈리오 작전(Operation Tantalio)에 중남미/ 유럽의 15개국이 참여했다. 이 작전을 통해 2016년부터 모바일 메신저 앱을 통한 아동 성학대 자료를 교환하고 조사했으며, 2017년 4월 기준 중남미와 유럽에서 범죄자 38명이 체포됐다. 콜롬비아 인터폴 국가중앙국장인 호르헤 모라 코르테스(Jorge Mora Cortes)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아동 성범죄 관련 수사 간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데 있어 국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이해당사자 간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와 자원을 최대화하고, 동일한 사건에 투입되는 인력을 줄이고,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64) 출처: ICMEC(2017).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https://www.icmec.org/wp-content/uploads/2017/09/Online-Grooming-of-Children_FINAL_9-18-17.pdf에서 2021년 8월 1일 인출.

(3) 아동 성착취물 타파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⁶⁵⁾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를 타파하기 위하여, 국제사회 및 각 국가가 함께 해나가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국제 사회는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와 관련 초범과 상습범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피해 아동들을 평생 지원하고, 피해 사실을 조사 및 기소, 재판, 그리고 가해자 교화에 드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비용적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 사회는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업스트림 기술 및 서비스 제공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아동 성착취 피해 아동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콘텐츠 제공자들을 온라인상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현행 고지 및 테이크다운 모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이슈와 관련해 국가 간 접근성 및 데이터 공유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 범죄(Online Child Sexual Exploitation, OCSE)와 관련하여 일관되고 공유할 수 있는 분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각국의 기존 입법 허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글로벌 기술 관련 기업들은 온라인상 아동 인증 시스템과 같이 OCSE에 사후 대응하는 것이 아닌, 아동 성착취 이미지 및 영상들(Child Sexual Abuse Material)을 탐지 및 제거하고, 온라인 그루밍 시도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 모델 국가 대응의 측면에서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국가는 이를 다른 국가와 공유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65) 출처: WeProtect Global Alliance(2019). Global Threat Assessment: Working together to end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online.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630f48de4b00a75476ecf0a/t/5deecb0fc4c5ef23016423cf/1575930642519/FINAL+-+Global+Threat+Assessment.pdf>에서 2021년 7월 27일 인출.

국가 차원에서는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 관련 국가 리더, 교육자, 규제 기관을 임명하여 온라인상 안전 확보에 있어 협동하여 노력해야 하며, 위해한 콘텐츠를 삭제하고 막는 데에 용이하게 해야 한다. 국가는 피해 아동 전 인생에 걸쳐 이들을 보조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결성해야 하며, 피해 아동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국가적 인력 및 자원 지원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국가 정책 입안자는 기업이 CSAM 또는 그루밍 행위를 사전 예방적으로 스캔할 수 있는 기술을 무력화하거나 최소화하지 않도록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공공 안전 법률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 정책 입안자들은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 예방 캠페인과 범죄에 개입 조치를 설계하고, 전문 언론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들의 시각과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은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수사 기법의 공유를 늘리고, 피해자 식별 장치를 개선하고 규모에 맞게 OCSE의 퍼짐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온라인 안전 전문가는 모범 사례 교육 프레임워크, 내용 및 교육 방법을 공유하고 행동 변화에서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 업체는 온라인 이용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4) 아동 성착취물(CSAM)을 인터폴 국제 아동 성착취(ICSE) 데이터베이스 전송⁶⁶⁾

〈CSAM 교환을 위한 안전한 플랫폼 - ICCAM〉

온라인상 CSAM(Child Sexual Abuse Materials)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40개의 관할구역 간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자료를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INHOPE의 ICCAM 플랫폼은 정확히 이를 구사하고 있다.

INHOPE는 전세계 핫라인 간 CSAM 교환을 위한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10년 이상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원을 받고 있다. ‘커넥팅 유럽 시설 자금 지원’에 따르면, INHOPE는 파트너인 ZiauZ 포렌식스 및 인터폴과 함께 ICCAM 플랫폼을 운영/유지/관리하고 있다. ICCAM은 2018년 44개의 핫라인에서 아동의 성적 이미지 및 영상을 모두 인터폴 국제 아동 성착취(ICSE)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고 있다.

40개 이상의 관할구역 간 CSAM 및 불법 자료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합의와 데이터 보호 규정 준수는 필수이다. 이를 위해 ICCAM을 사용하는 INHOPE 핫라인은 2018년 한 해 동안 43개국에 설치된 47개 핫라인 간 체결한 ICCAM 참여 협약을 개발했다.

2018년 INHOPE는 ICCAM 유지보수의 일환으로 ICCAM 플랫폼 사용자와 협력하여 시스템 개선 목록을 식별하고, 이를 우선순위로 정했다. 플랫폼 개선사항은 6주마다 새로 플랫폼을 통해 발표된다. 2018년~2019년 초 ICCAM 플랫폼은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총 8개의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NHOPE와 ZiuZ는 하드웨어를 2배 늘리고, 현재 서버를 가상화하고

66) 출처: INHOPE(2018). Annual Report 2018.

https://www.inhope.org/media/pages/the-facts/download-our-whitepapers/3976156299-1591885517/2019.12.13_jh_annual_report_digital.pdf에서 2021년 8월 4일 인출.

일반 컴퓨터 시스템의 통신 장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스템의 고장 발생 시, 긴급한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스템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게 됐다.

INHOPE는 시스템 개선 외에도 핫라인 분석가가 시스템 사용 및 자료 평가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에는 프랑스 리옹에 있는 인터폴 유럽본부의 INHOPE 교육 담당자 및 인터폴 형사정보담당관이 제공하는 CSAM 평가방법 교육이 포함된다. 2018년에는 콘텐츠 평가 교육에 35명, 2019년 초에는 17명의 신규 핫라인 분석가가 참여했다.

3.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해외사례는 국가 온라인상의 아동보호 전략개발, 온라인 그루밍 판례 및 처벌규정의 실효성,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모니터링 의무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국제공조 신고시스템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시민단체활동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 국내외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며 본 연구의 정책제안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강조된 정책과제는 그루밍 처벌 규정의 실효성 마련(김정연, 2021; 정익중 외, 2020), 플랫폼 기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모니터링 의무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정익중 외, 2020; 최진웅, 2020). 피해자지원센터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전윤정, 2020; 정익중 외, 2020; 탁틴내일, 2021), 집합적 임팩트 방식의 민관협업 국제공조체제 구축(이수정 외, 2019; 탁틴내일, 2021)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제안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문제점과 대응정책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 (1) 국가 온라인상 아동보호 전략개발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핵심 사항임을 보여준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제시한, 국가 온라인상 아동보호 전략개발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실천적 신속한 대응이 핵심 사항임을 보여준다. 온라인상 아동 안전 관련 국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정책입안자들은 다양한 범위의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안전 사용을 위해 다른 기관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학부모 및 아동들이 온라인 학대 의심 관련 신고를 서비스 사용 기관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등 실질적인 내용들을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보호를 위한 정책입안자들이 좀 더 구체적인 지침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신고할 것인지 등과 같이 실천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대응 전략에서 실천적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실제 만남이 없어도 처벌하고, 미성년자 연령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있고, 노골적인 성착취 대화가 아니더라도 신분을 속이고 2차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를 처벌하는 사례들은 한국에서 그루밍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실제 만남은 없었지만 처벌받았던 온라인 그루밍 해외 판례로서, 2014년 영국 (Independent Inquiry Child Sexual Abuse, 2020)과 2010년 캐나다(Canada Legal Information Institution, 2009)의 판결문은 한국에서 그루밍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만남이 없어도 성적 의도만으로 유죄판결이 되며, 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입증을 가해자가 입증하거나 미성년자임이 예상된 경우도 처벌됨을 보여준다. 의사소통이 반드시 성적으로 노골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해 아동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악의 없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 사이에 실제 육체적 접촉이 있을 필요도 없고, 의사소통이 성적으로 노골적일 필요도 없다. 다만, 2차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신분을 속이고 2차 범죄를 위한 의사소통이었음이 증명된다면, 만남이 없어도 의도만으로 유죄판결이 됨을 시사한다. 한편, 국내의 그루밍 처벌 규정에서는 성적인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기준이 없어 애매모호하다는 논란이 있는 법조항, 미성년자인지 알고 있는 경우도 그 입증을 피해자 미성년자가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해외에서는 캐나다(Canada Legal Information Institution, 2009)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예상된 경우도 포함하여 처벌하고, 호주의 경우(정익중 외, 2020)는 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루밍 처벌규정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목적 대화 등)에서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3) 아동 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과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 기업이 아동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매스컴의 영향을 중요시하는 기업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업이 아동 온라인 성착취물(CSAM)에 대한 자율규제와 신고대응을 하게 된 데에는, 기업 이미지에 대한 언론과 여론 형성으로 매스컴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과 활동은 아동 성착취물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왓츠앱, 스냅챗, 스카이프 등과 같은 SNS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 프로그램으로 패닉 버튼(Panic Button), Photo DNA 등과 같은 기술 프로그램 개발과 자율규제, 모니터링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ICMEC, 2017).

따라서 아동 성착취물(CSAM)에 대한 기업의 모니터링 의무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신고(혹은 통보) 의무 부과와 모니터링 의무가 요구된다. 아동 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과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 기업이 아동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기업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기업 및 제3자가 아동보호 책임을 이행하도록 국내외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자율규제 시스템을 마련하더라도,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가 의심되는 사용자가 사이버 범죄 보고 웹사이트에 신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들이 자사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그루밍을 확인하여 예방 조치에 투자하도록 규제 요건을 만들고, 플랫폼에서 콘텐츠 삭제가 있을 경우 다른 플랫폼사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규제 기관은 기업들이 아동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금융제재, 금융패널티, 기업 제재 및 금지 등 강제조치를 마련한다. 규제기관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제 조치와 합당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규제 기관은 기업이 온라인상 아동 보호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용인할 경우 이를 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기업형 범죄를 확장하고 규제 수준을 엄격하게 정하여 기업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아동 성착취물(CSAM)에 대한 기업의 신고 및 자율 규제, 모니터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 활성화와 관련한 법 조항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있다. 우리나라 현행의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신고(혹은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를 위한 법 개선사항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에 기업의 신고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4)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신고 접수 조사, 삭제,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접근 권한, 국제공조 및 직접적 수사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아동 성착취 모니터링을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아동 성착취물 유통의 경로는 대부분 국내가 아닌 해외 플랫폼이기 때문에(최진웅, 2020), 이러한 국제공조와 다분야 협업방식은 집합적 임팩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필수적인 접근 방법이라 생각된다.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하여서는 국제사회 및 각 국가, 공공과 민간과 산업이 함께 협업하는 방식이 필수적이다. 사안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더라도 정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움으로 정부-산업-민간의 다분야 협업(collaboration)으로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 접근 방식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다분야 협업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의 역할이 요구된다. 전담기구는 정보 접근, 직접 수사, 국제 공조 신고시스템 연결, 신속한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CSAM) 발견 및 신고 삭제 등 데이터 베이스 구축, 후속조치 등에 대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전담기구의 기능은 연구,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피해자와 전문기관 연결 등 중간지원조직이 아니라, 중추지원조직(backbone support organization)의 기능에서 직접수사, 정보접근 등 특수기능이 요구된다.

국제 인터넷 핫라인 협회(INHOPE), 국제 실종 착취 아동센터(ICMEC), 미국의 사이버 토플라인(CyberTipline), 캐나다의 토플라인(Tipline), 영국의 인터넷 감시협회(IWF), 캐나다 어린이 보호 센터(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 아시아 관광 아동 성매매 근절(ECPAT) 등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시민단체이다.

성범죄 전담 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 사례(권현정, 2021)로 영국의 아동착취·온

라인보호센터(CEOP), 미국의 아동 대상 사이버범죄 대응팀(ICAC)은 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국제공조 및 직접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구이다. 이러한 전담 기구의 성격은 시민단체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보 접근 및 직접 수사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담당하여 실효성 있는 국제공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성범죄 전담기구는 중추지원조직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기능에서 추가적으로 정보접근 권한과 직접적인 수사권, 국제공조 연결까지 가지는 것임으로 법에 근거를 두고 국가 기관 내에 소속하는 사례가 많다. 국제공조 신고시스템 구축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업-NGO-정부의 국제공조가 필수적임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의 설치에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 제4장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 1. 조사내용
- 2. 조사실시
- 3. 조사결과

1. 조사내용

실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 혹은 온라인 그루밍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개인적인 요소, 환경적 요소의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그루밍 범죄 위험요인으로 지적된 익명의 오픈채팅이나 일탈계정 이용 혹은 노출경험의 여부 등을 포함한 온라인 생활행동을 포함해 가정생활, 학교생활, 심리적인 특성에 관련된 문항과 온라인·오프라인 성범죄 관련 교육 및 기관에 대한 지식수준을 포함한 조사지를 구성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노출경험이나 가해·피해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은 탁틴내일(2020)과 교육부(김경희, 김수아, 김은경, 2019), 형사정책연구원(김지영 외, 2020)에서 실시한 선행연구 조사 문항을 참고했다. 그 외에 아동·청소년의 가정 학교 생활환경과 심리적인 요소에 관해서는 민주시민역량국제비교연구(Schulz 외, 2018) 및 본원에서 실시한 2020 청소년 종합실태조사(김기현 외, 2021) 문항을 인용했다. 이에 덧붙여 연구진의 문헌검토 결과 발견한 위험요소(오픈채팅, 일탈계정 보유 등)를 측정하기 위한 신규문항을 추가했다.

최종 조사지는 아래 <표 IV-1>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실태조사지는 크게 1. 아동·청소년의 가정환경과 학교환경,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 적응 수준, 2.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생활 실태, 3. 실제 디지털 성범죄 노출현황, 4. 관련교육 경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사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IV-1.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지 구성

분류	항목 내용	중고생용		초등생용		상세 출처
		기본	추가	기본	추가	
배경정보	응답자 성별, 부모학력	2		2		기본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행복도	2		2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가정환경	가정 내 소장 책 권수	1		1		ICCS
	용돈 (직접 입력)	1		1		형사정책 C8
	부모님과 식사 횟수	1		1		신규
	부모 관계 신뢰도, 친밀감	5		5		형사정책 C2
학교환경	학교와 친구관계 신뢰 스트레스 랜덤채팅 이용현황	7		7		형사정책 C3
양성평등 의식	양성평등의식	9		0		문36
온라인 생활현황	인터넷 활동 내용 (우선순위 3개 선택)	3		3		형사정책 A1, 탁 틴내일 문2
	익명계정 / 일탈계정 보유여부	1		1		신규
	익명계정 / 일탈계정 보유 시 운영기간 (개월)		1		1	신규
	익명계정 / 일탈계정 보유 시 이용정지 경험		1		0	신규
	오픈채팅 참여 빈도	1		1		신규
	오픈채팅 참여 기간 (연), 개인톡 경험		2		2	신규
	모르는 성인과 개인톡 대화경험	1		1		신규

분류	항목 내용	중고생용		초등생용		상세 출처
		기본	추가	기본	추가	
온라인 성적 침해경험	최근 3개월간 온라인 침해 피해 경험	9		9		교육부2019 Q4
	최근 3개월간 온라인 침해 가해 경험	7		7		교육부2019 Q6
온라인 그루밍 노출경험	모르는 사람 기프트콘 경험	1		1		신규
	모르는 사람 쪽지 받은 경험, 내용, 대응	10		6		형사정책 A11 (QA10~QA11)
	모르는 사람 1:1 대화 경험 여부	1		1		신규
	인원수, 연령, 기간, 개인정보 노출		4		4	형사정책 A11 (QA1~QA9)
	모르는 사람 직접만남 여부	1		1		탁틴내일 문11, 11-1
	상대방 연령, 만남장소, 사전/사후알림여부		4		4	탁틴내일 문13 형사정책 QB3-4-4변형
예방교육 경험	위클래스 여부,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폭력(범죄) 예방교육, 가족 간 대화	3		3		형사정책 C4
	위클래스 이용여부, 만족도		3		3	신규
	가족과 온라인 성폭력 관련 대화 여부	1		1		형사정책 C4
	그루밍 인지도	1		1		형사정책 A6
보호기관 인지도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등	5		5		형사정책 C7
총 문항 수		73	15	60	14	

1) 조사문항 타당성 검토

문항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분야 전문가들에게 연구진이 구성한 문항 초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고 이를 반영해서 수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또한 현직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을 통해 응답 선택지

의 선정, 현재 초·중·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어휘에 부합하는 단어로 수정·보완하였다.

2) 연구윤리 검토

본 연구의 윤리적인 면에 대한 검토는 본 조사가 조사에 참여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유해성 혹은 사생활 침해의 요소를 최소화 하되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모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본 조사가 다루는 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답자가 조사 이전에는 몰랐을 수 있는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되는 문항들은 최소한으로 단축시키고 우회적으로 질문하도록 수정했다.

모든 조사 참여자는 조사 도중에 언제든지 응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참여 중단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조사지의 표지에 명시하고, 조사진행자를 통해서도 반복하여 설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사생활에 관련된 문항의 선택지에 ‘잘 모르겠다’를 추가하여 응답자가 무응답 혹은 응답거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유효 응답률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나 본 연구 주제의 특성상 연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였다.

2. 조사실시

다음과 같이 표집된 전국의 157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기간은 6월 28일부터 시작하여 8월 3주차에 종료되었다. 실제 표집 결과는 초등학교 재학생 951명, 중학교 1,415명, 고등학교 1,432명으로 목표 표본인 4천명에서 202명 미달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수업 등으로 인해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 중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결과였다.

자세한 표집 내용은 조사결과에서 기술하였다.

3. 조사결과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분포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는 아래와 같이 분포되었다. 전반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낮는데 특히 고등학교 1학년에서 그 편차가 컸다. 이는 코로나19 환경에서 조사를 하면서 발생한 결과이며 이후 조사 결과 해석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단, 응답결과를 합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성별 편차와 지역별 모집 편차를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표 IV-2. 응답자 특성(학교급)

(단위: 명, %)

학교급	학년	성별				전체	
		남		여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초등학교	초5	265	52.0	245	48.0	510	100
	초6	230	51.0	221	49.0	451	100
중학교	중1	277	53.1	245	46.9	522	100
	중2	244	50.5	239	49.5	483	100
	중3	224	47.9	244	52.1	468	100
고등학교	고1	296	72.4	113	27.6	409	100
	고2	196	41.8	273	58.2	469	100
	고3	278	57.2	208	42.8	486	100
전체		2,010	52.9	1,788	47.1	3,798	100

표 IV-3. 응답자 특성(권역)

(단위: 명, %)

권역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서울	150	15.6	210	14.3	260	19.1
경기/인천	315	32.8	471	32.0	351	25.7
강원/충청	155	16.1	248	16.8	200	14.7
경상	239	24.9	386	26.2	356	26.1
전라/제주	102	10.6	158	10.7	197	14.4
전체	961	100.0	1,473	100.0	1,364	100.0

참고로 이후의 결과 보고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전체 모집단을 추정하기 위해 부여한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치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례수와 비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표본 사례수와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치를 제시했다. 또한 응답결과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산출할 때 ‘잘모르겠다’ 혹은 ‘무응답’을 선택한 사례는 결측치로 산정하여 분석에서 제외하되, 숫자와 비율을 산출할 때는 전체 사례수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2) 아동·청소년의 가정생활 환경

부모님과 관계, 특히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부모님이 다음 사항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다. ①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어디 있는지, ② 내가 집 밖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③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다음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함께 질문했다. ④ 내가 개인 적인 문제를 상담하려고 할 때 잘 들어주시지, ⑤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지.

응답결과는 아래 그래프로 요약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부모님이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관심이나 사랑에 대한 동의수준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가 있었으며, 이 감소추세는 특히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더욱 뚜렷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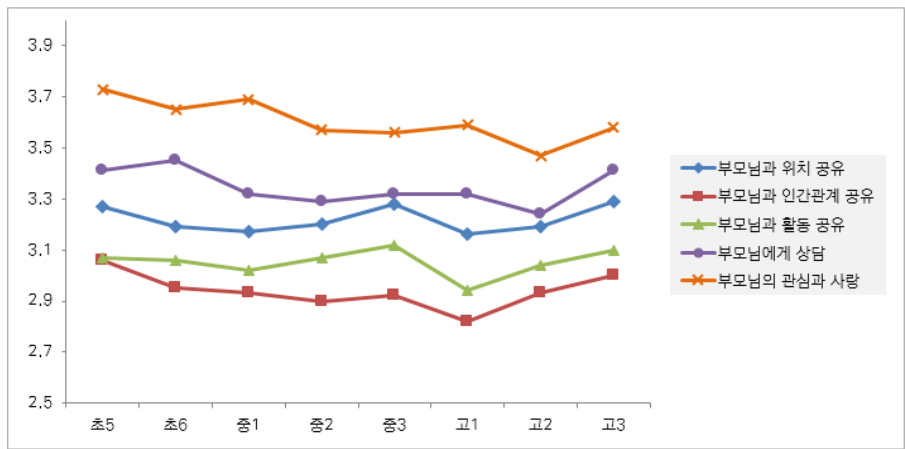


그림 IV-1. 남자 아동·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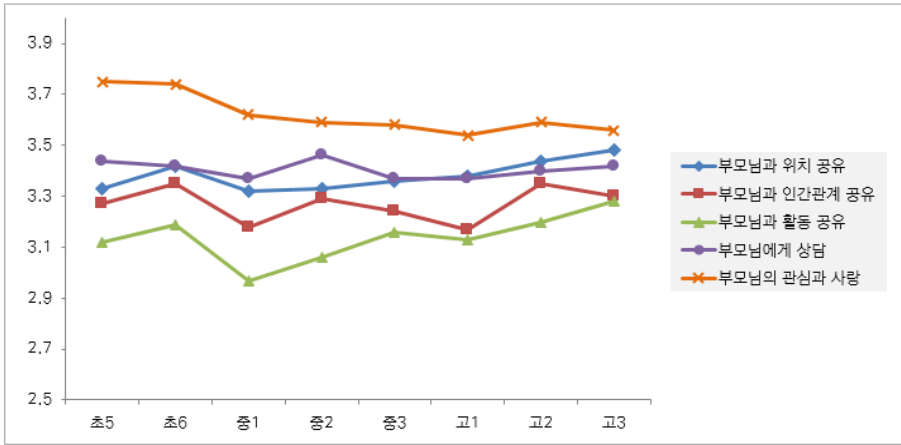


그림 IV-2. 여자 아동·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 응답결과

부모가 자신의 친구와 자신이 밖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잘 안다는 응답은 남자 청소년들에게서 낮은 경향이 있었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남자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낮았다. 여자 청소년들은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 부모가 자신이 집 밖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낮았다. 이는 남자 청소년들과 여자 청소년들이 부모와 느끼는 단절감이 가장 높은 시기가 서로 다를 것을 시사한다. 여자 청소년들은 중학교 1학년 시점에, 남자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 부모와의 단절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그래프의 원자료 표는 부록에 수록했다.

3) 아동·청소년의 학교 생활 환경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을 살펴보기 위해서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 생활과 학업 성적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을 질문했다. 조사 결과, 남자 청소년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사가 자신에게 주는 관심 수준을 낮게 평가했다. 반면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고민 상담 상대로서 친구들에 대한

의존도는 체계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친구와 느끼는 친밀감이나 교사를 고민 상담 상대로 느끼는 인식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 모두 친밀감과 교사의 관심에 대한 믿음, 교사를 고민 상담 상대로 신뢰하는 수준은 초등학교들이 가장 높았다. 여자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친구를 고민상담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더 높았다. 반면에 교사를 고민상담 상대로 여기는 정도는 남자 청소년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요약하면 또래 친구의 중요도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의 고민을 교사에게 잘 털어놓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위험 요소에 노출되는 경우, 여자 청소년들이 교사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더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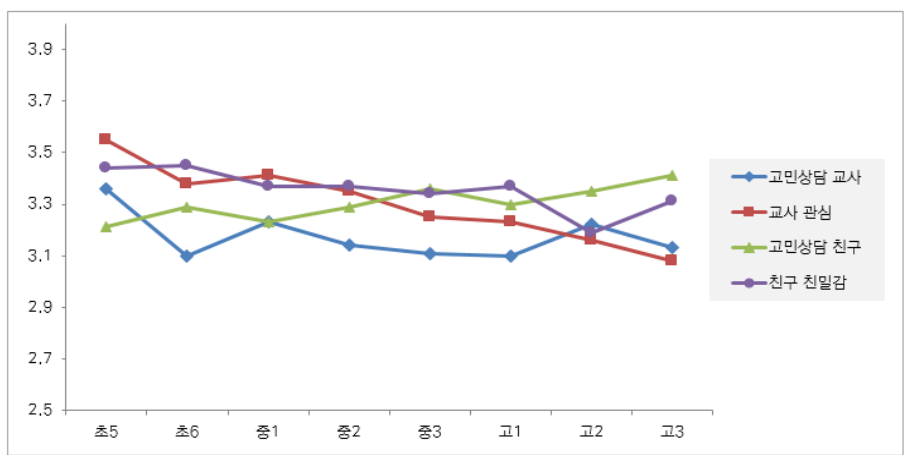


그림 IV-3. 남자 아동·청소년의 교사, 친구관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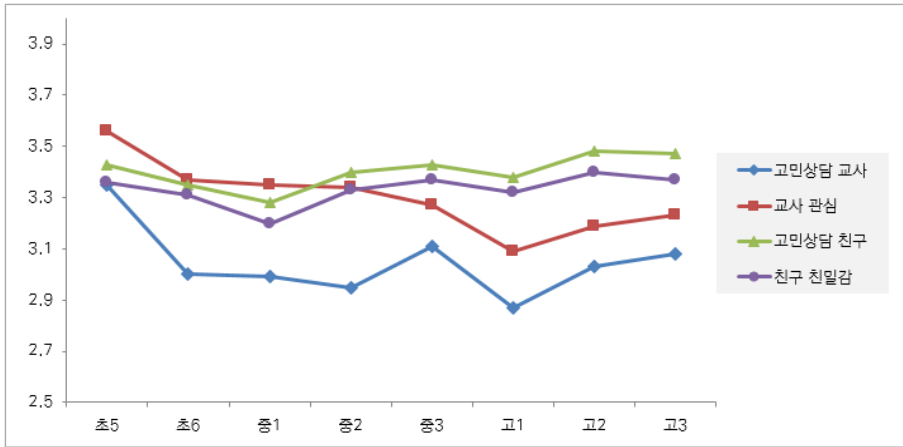


그림 IV-4. 여자 아동·청소년의 교사, 친구관계 평가

4) 랜덤 채팅앱과 또래 영향력

랜덤 채팅(random chat)은 불특정 다수의 익명 상대와 익명성을 전제로 한 온라인 공간에서 말 그대로 무작위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활동을 말한다. 많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만나는 경로 중의 하나가 이 랜덤채팅이다. 그런 면에서 랜덤 채팅 이용의 시기와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래 친구들 중에 랜덤채팅 앱을 사용하는 친구가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했다.

조사 결과, [그림 IV-5]에서 나타나듯 랜덤 채팅앱을 사용하는 친구가 있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가장 높았고, 그 이후로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질문에 긍정하는 응답은 여자 청소년들보다는 남자 청소년들에게서 더 많았다. 이 결과는 랜덤 채팅이 단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님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들은 초등학교 시기에 이미 위험한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오히려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면 랜덤 채팅이 아닌 다른 매체를 이용하고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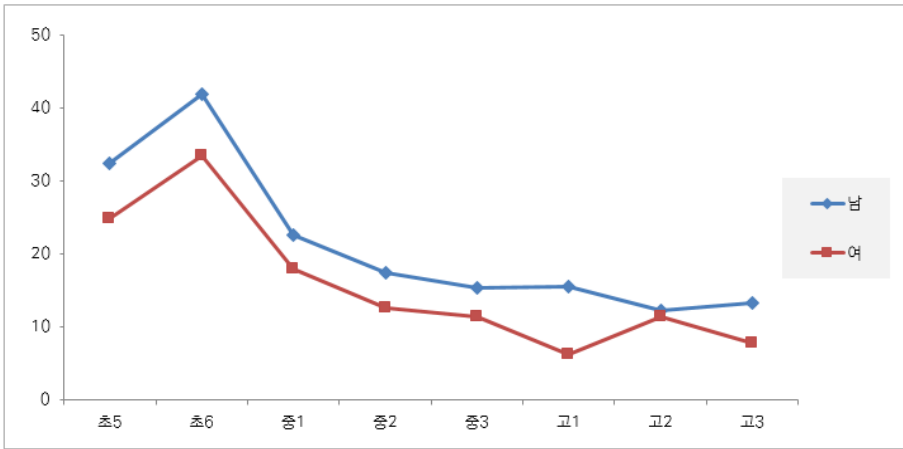


그림 IV-5. 친구가 랜덤 채팅앱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

5)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수준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즘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생활만족도), 그리고 평소 생활에서 얼마나 행복하다고 여기는지(행복도)를 질문했다. 응답은 0점(전혀 아니다)에서 10점(매우 그렇다) 사이의 11점 척도로 측정했다. 조사 결과, 생활만족도와 행복도 수준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IV-6]을 보면 남자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점에 가장 낮은 반면, 여자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는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 급격히 낮아졌다가 다시 전체 추세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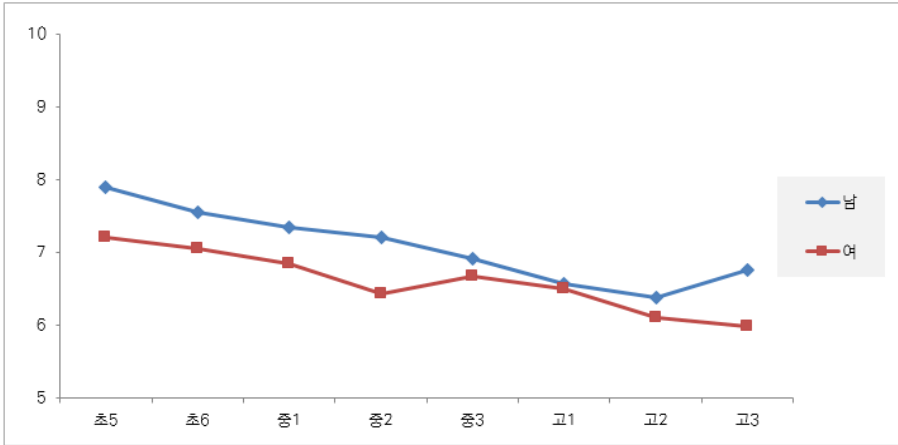


그림 IV-6. 생활만족도 평가

[그림 IV-7]에서 나타나듯 행복도 역시 학년에 따라 감소했으며, 남자 청소년들은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 집단에서 가장 낮았고, 여자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중학교 1, 2학년 시점에 낮아졌다가 중학교 3학년 시점에 전체 추세로 복귀하여 다시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의 생활만족도나 행복도가 아동기에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전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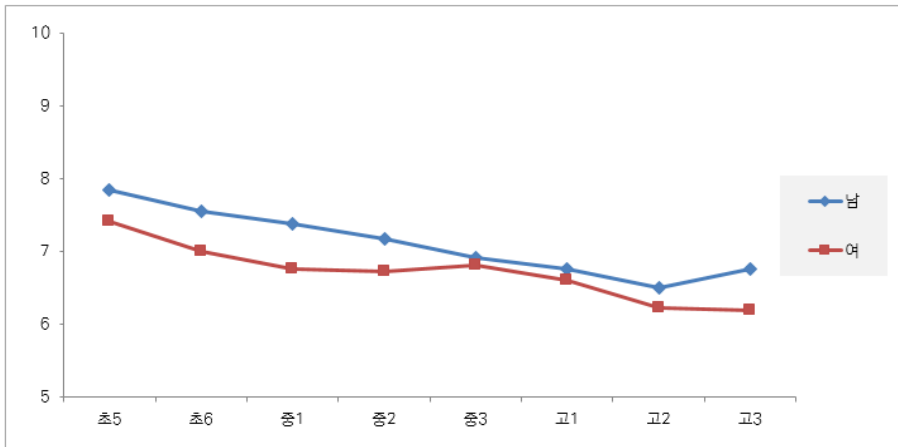


그림 IV-7. 행복도 평가

학교 생활의 적응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학업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을 질문했다.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의 점수로 응답한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생활 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추세가 남녀 모두에게서 발견되었다.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 생활 스트레스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초등학교 5학년 시기 남자 집단에서 유일하게 학업 스트레스보다 학교 생활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또한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 생활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 모두 고등학교 2학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오히려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서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시점의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두 영역의 스트레스가 모두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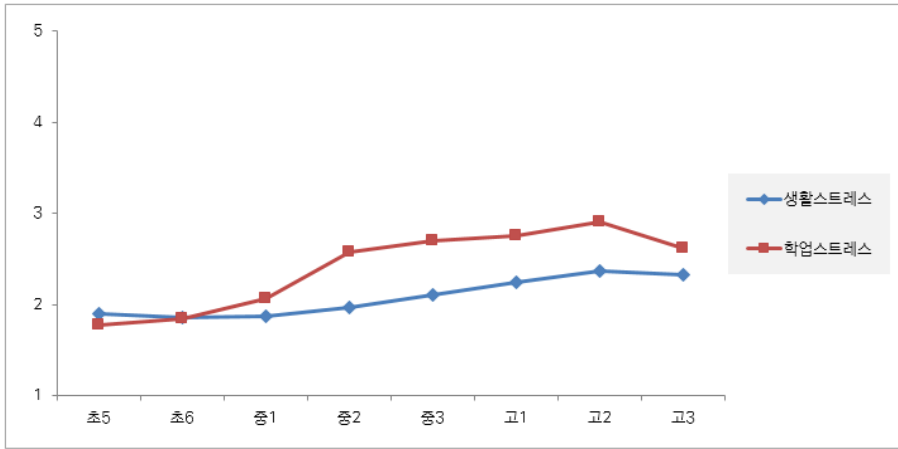


그림 IV-8. 남자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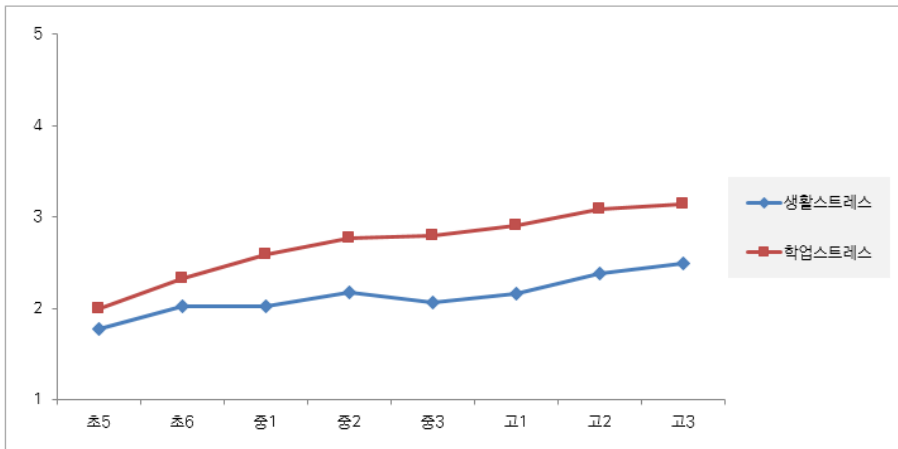


그림 IV-9. 여자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 지수

5) 양성평등 의식 가치관

남녀 청소년들이 얼마나 편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녀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질문하는 9개 문항으로 구성된 양성평등 의식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에서는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뚜렷하며, 성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자 청소년들에게서 뚜렷이 더 높았으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 가장 높은 U자형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의 성역할 고정관념 점수는 중학교 1학년에 가장 높았다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체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실 내에서 남녀간의 가치관 충돌이 부각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교육의 필요성 역시 남자와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타인에 대한 성적 침해를 정당화하는 경향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을 때, 남자 청소년들에 대한 초기 양성평등 교육과 사후 교육의 중요성도 시사한다.

표 IV-4. 특성 수준

구 분		학교급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성역할고정관념 점수	남	1.95	1.87	1.87	1.82	1.85	2.06	1.91
	여	1.60	1.53	1.49	1.43	1.44	1.42	1.49
	전체	1.78	1.70	1.69	1.71	1.57	1.76	1.70

6) 온라인 생활 현황

온라인 미디어 중에서 익명계정과 오픈채팅은 말 그대로 익명의 불특정 다수와 만나는 대표적인 통로이다. 그리고 이 익명계정은 많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아동이나 청소년 피해자들을 발굴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문제는 익명계정이 제시하는 가능성, 낯선 사람과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이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 특히 여자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인 유혹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히 익명계정의 사용여부 뿐만 아니라 이 계정을 얼마나 안전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디지털 성범죄 취약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익명계정의 사용여부만이 아니라 익명계정을 이용정지 당한 경험을 질문했다. 해당 플랫폼의 이용자 규정을 어긴 행동을 한 경우에만 사용 정지를 받기 때문에 이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행동을 했음을 의미한다.

(1) 익명계정 보유여부

익명계정은 특히 여자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여자 청소년의 21.7%가 익명계정을 보유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체계적으로 증가해서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1학년 이전의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에 남자 청소년들에게서는 연령에 따른 변화추세가 뚜렷하지 않았다.

특기할 것은 익명계정의 보유비율은 여자 청소년이 뚜렷이 높았지만, 익명으로 참여하는 오픈채팅 경험은 남자 청소년들이 뚜렷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오픈채팅 경험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남자 청소년들과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안전 교육의 내용과 시기,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픈채팅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모험 행동의 욕구가 오픈채팅을 통해서 익명의 상대와 새로운 관계 형성을 시도하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이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표 IV-5. 익명계정 및 오픈채팅 경험 비율

(단위: %)

구 분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익명계정 사용 경험	남	8.8	12.6	11.9	13.4	10.5	10.7	10.8	11.9	11.5
	여	8.3	12.8	19.3	19.7	22.5	24.1	22.3	23.2	21.7
	전체	8.5	12.7	15.5	16.5	16.8	14.3	17.5	16.8	16.3
익명계정 이용정지 경험	남	-	-	12.2	28.6	9.7	17.5	19.0	13.5	16.6
	여	-	-	3.6	13.5	3.3	0.0	11.6	3.7	6.5
	전체	-	-	7.2	19.5	5.4	10.0	13.3	7.7	10.4
오픈채팅 참여 경험	남	15.6	37.4	29.3	26.1	15.2	19.4	9.6	8.5	19.9
	여	17.1	28.8	32.4	18.9	18.8	15.4	14.2	6.5	19.3
	전체	16.3	33.0	30.8	22.5	17.1	18.3	12.3	7.7	19.6
오픈채팅 개인톡 경험	남	76.5	81.9	62.3	72.5	65.5	60.8	52.9	85.7	70.5
	여	74.3	63.8	61.5	63.2	40.5	68.8	47.1	58.3	59.3
	전체	75.4	73.8	61.9	68.5	50.7	62.7	49.0	75.8	65.3

오픈채팅과 익명계정을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여자 청소년들은 13세에서 14세 사이에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7세 시기였다. 학년의

로 환산하면 중학교 1, 2학년 시기와 고등학교 1학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남자 청소년들은 오픈채팅을 14세와 12세에 가장 많이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으로 환산하면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최소한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오픈채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역시 중학교 1학년 시기부터 구체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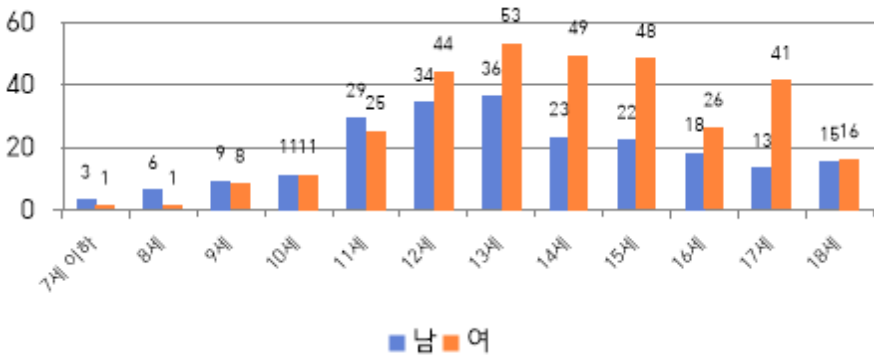


그림 IV-10. 익명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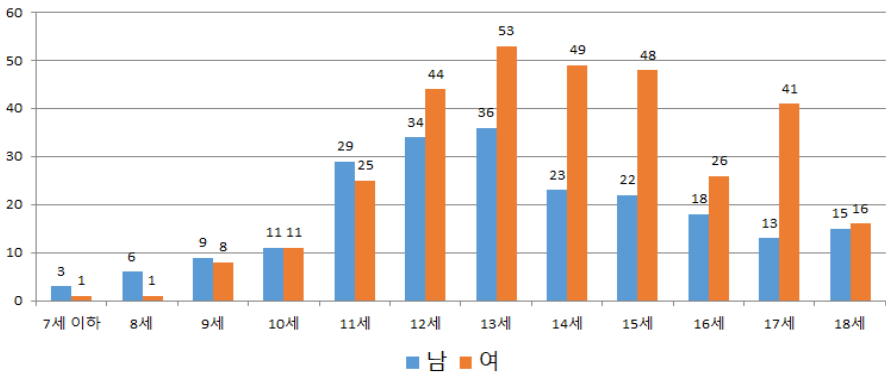


그림 IV-11. 익명계정을 처음 개설한 연령의 빈도분포

7) 온라인에서 성적 침해행동 경험

(1) 온라인 성적 침해 피해경험

또래 친구들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성적인 침해를 당해본 경험을 조사해본 결과는 아래 <표 IV-6>과 같다. 성적인 농담과 외모에 대한 품평을 당해본 경험이 가장 높았고,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받은 경험이 가장 적었다. 침해 피해경험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늘어났다.

표 IV-6. 디지털 성범죄 피해경험 긍정 비율

(단위: %)

구 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외모나 몸매에 대해 불쾌한 말을 들은 적 있다	남	20.1	26.1	20.1	23.1	21.1	22.6	23.8	18.5
	여	24.9	21.8	33.2	26.8	25.2	28.3	33.5	25.1
동의 없이 몸 일부(다리, 가슴 등)가 촬영된 경험	남	0.8	2.2	2.2	3.7	0.9	2.7	7.3	4.7
	여	1.2	1.8	0.8	0.4	0.4	2.7	3.3	1.0
원치 않는 야하거나 싫은 메시지를 반복해 받은 경험	남	4.6	5.2	4.5	6.6	6.7	5.4	5.7	1.8
	여	3.7	4.1	12.7	11.7	10.2	11.5	13.7	5.3
야한 노출 사진이나 음란물 등을 전송받은 경험	남	1.1	1.7	5.9	9.5	5.8	6.4	9.8	8.4
	여	2.0	4.1	8.6	7.9	7.4	10.6	14.3	3.4
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본인/지인이 합성된 것을 본 경험	남	5.3	4.3	6.7	13.6	6.7	12.2	14.5	11.2
	여	3.7	5.5	7.8	7.1	8.6	6.2	15.0	9.1
성적인 농담이나 섹드립을 듣거나 본 적 있다	남	11.4	17.8	42.0	52.1	49.3	51.4	45.6	38.2
	여	9.0	18.2	41.4	42.3	40.6	36.3	44.0	35.6
내 사진이나 영상이 원치 않게 온라인으로 공유된 경험	남	4.6	11.7	11.2	15.3	9.4	8.1	7.3	6.9
	여	8.6	12.3	15.2	11.3	8.6	6.2	8.1	4.3

구 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 협박 받은 경험	남	2.7	5.2	4.5	3.7	1.3	1.0	3.6	2.2
	여	2.0	4.5	2.0	3.8	2.0	1.8	3.3	0.5
몸이 노출된 사진 촬영, 전송 요 구받은 경험	남	0.8	0.9	1.9	2.5	0.4	0.3	3.6	1.5
	여	0.4	3.6	3.7	2.5	2.9	3.5	5.5	1.4
전체	남	5.7	8.4	11.0	14.5	11.3	12.2	13.5	10.4
	여	6.2	8.4	13.9	12.7	11.8	11.9	15.6	9.5

(2) 온라인 성적 침해 가해경험

온라인에서 타인을 성적으로 침해한 경험을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은 것은 타인의 외모에 대한 품평 경험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적인 농담이나 섹드립이었다. 특히 성적 농담은 중학교 1학년부터 급속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 감수성 교육이나 양성평등 교육을 최소한 중학교 1학년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IV-7. 디지털 성범죄 가해경험 긍정 비율

(단위: %)

구 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타인의 외모나 몸매를 평가	남	13.0	16.1	14.9	24.4	17.5	18.6	21.4	20.3
	여	11.8	14.1	18.0	16.7	16.4	17.9	15.6	12.5
타인에게 원하지 않는 메시지 를 반복 발송	남	8.5	12.2	8.9	10.7	9.0	7.1	7.3	2.9
	여	4.9	6.8	6.6	2.9	2.0	2.7	2.6	1.4

구 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인 농담이나 섹드립	남	4.2	3.0	10.4	28.1	20.6	23.0	20.8	22.1
	여	1.2	2.3	9.4	12.1	7.0	3.6	8.5	2.9
야한이미지 음란물 등 전송	남	1.5	0.0	1.1	3.3	1.8	2.4	5.7	4.7
	여	0.8	0.0	1.2	2.5	0.8	0.9	2.6	0.5
타인의 합성 이미지 제작	남	0.8	0.9	0.4	1.7	0.0	0.3	3.1	1.4
	여	0.0	0.5	0.0	0.0	0.4	0.9	2.2	0.0
타인의 신체(다리, 가슴 등)를 촬영	남	1.1	0.0	1.1	1.7	0.4	1.0	4.7	2.5
	여	0.4	0.0	0.0	0.0	0.4	1.8	3.0	0.0
타인 이미지를 동의 없이 온라인으로 공유	남	1.5	5.2	5.2	6.6	4.5	4.4	7.3	6.5
	여	2.9	5.0	4.5	4.2	2.9	3.6	3.3	1.9
전체	남	4.4	5.3	6.0	10.9	7.7	8.1	10.0	8.6
	여	3.1	4.1	5.7	5.5	4.3	4.5	5.4	2.7

8) 온라인 그루밍 노출 실태

(1) 온라인 그루밍 노출 경험

온라인 그루밍은 처음에는 호의적이고 친절한 접근부터 시작된다. 특히 기프티콘이나 문화상품권과 같은 작은 선물을 낚신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험은 그루밍의 시작인 경우가 많다. 이에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 있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최소 5%에서 최대 12% 정도의 청소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기프티콘 등을 받아본 경험은 남자 청소년 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현저히 높았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12.4%)과 중학교 1학년(14.4%) 여자 청소년들은 최소한 10명 중 1명 이상이 낚신 이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 5학년생조차도 남자는 5.3%, 여자는 4.9%가 이유 없이 선물

을 받아본 적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예방교육 연령을 지금보다 더 낮추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표 IV-8.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선물을 받은 경험

(단위: %)

구 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메신저, SNS, 랜덤 채팅앱,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기프트콘이나 문화상품권을 받아본 경험	남	1~2명	4.2	3.1	7.6	3.7	1.3	5.8	3.1	5.1	
		3명 이상	1.1	1.8	4.0	4.9	2.2	3.7	4.1	2.5	
		합계	5.3	4.9	11.6	8.6	3.5	9.5	7.2	7.6	
	여	1~2명	4.1	4.1	9.8	5.0	4.5	7.1	5.1	4.3	
		3명 이상	0.8	2.7	4.5	5.9	4.5	5.3	3.3	1.9	
		합계	4.9	6.8	14.3	10.9	9.0	12.4	8.4	6.2	

또한 낯선 사람이 온라인을 통해서 DM(직접 메시지)이나 1:1 채팅으로 접근해 온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여자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아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제안을 받은 청소년들 중에서 많은 수가 이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제안을 받은 중학교 1학년 여자 청소년 중에서 53.3%와 중학교 2학년 여자 청소년 중 56.3%는 이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일상 생활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비율의 경우 여자 청소년의 경우

25% 정도였다. 특기할 것은 이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점이다. 이런 제안을 받은 중학교 2학년 남자 청소년의 23.5%,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남자 청소년의 60%가 이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 청소년 중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17.1%가 응한 것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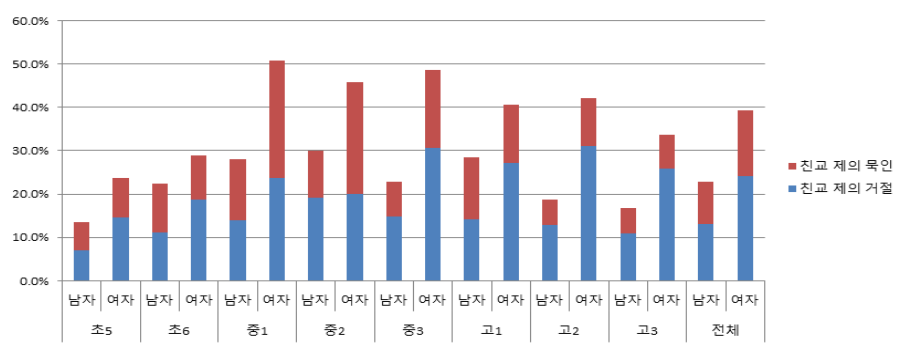


그림 IV-12. 온라인에서 친교제의에 메시지에 대한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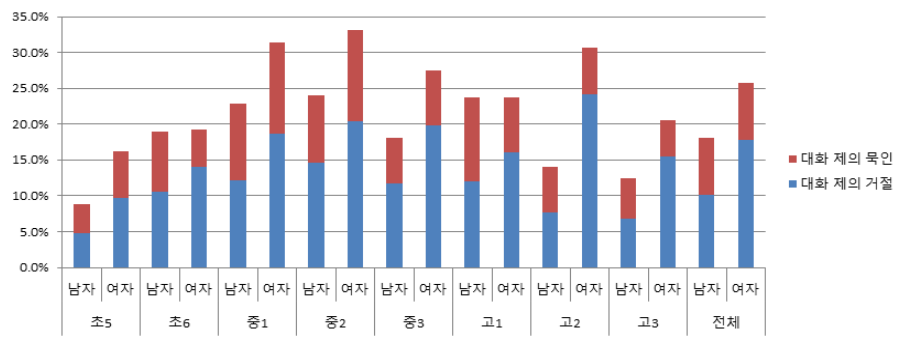


그림 IV-13. 온라인에서 대화제의에 메시지에 대한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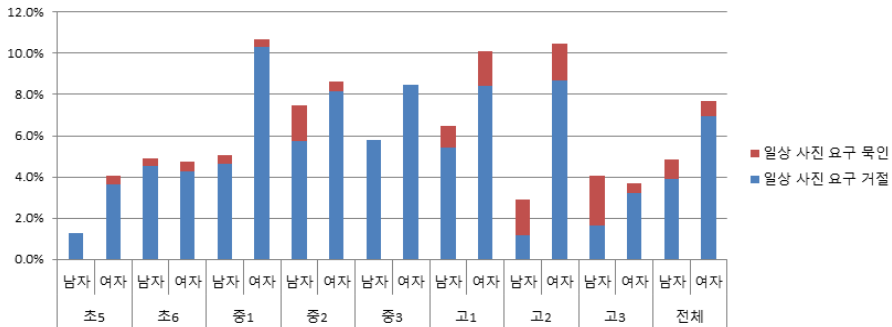


그림 IV-14. 온라인에서 일상사진 요구 메시지에 대한 반응

(2)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청소년들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고 있었다. 나이를 알려준 경험은 56.2%에 달했으며, 이름은 37.8%, 사는 지역이나 생년월일을 알려준 비율 역시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다는 응답은 17.1%로 나타났는데, 고등학교에서 이 비율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 4명 중 1명 꼴(25%), 여자 청소년에서는 5명 중 1명 꼴(21.2%)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교를 알려준 비율은 고등학교에서도 10% 내외였으며, 집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려준 비율은 3%를 넘지 않았다. 어떤 정보도 알려준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37%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서 특히 자신의 나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등을 노출할 때의 위험성 교육 및 이를 노출하지 않고 교류를 지속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9.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보

(단위: %)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보												
구 분	나이	이름	사는 지역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라인/ 카톡 아이디	다니는 학교	이메일	집 주소	집 전화 번호	기타	알려 준 적 없음
전체	56.2	37.8	25.1	24.1	17.1	14.2	10.3	2.5	2.1	0.4	2.3	37.0
	남	31.5	22.4	19.1	16.7	11.9	10.6	3.6	2.2	0.7	2.8	45.3
여	63.6	42.6	27.1	28.0	17.3	15.9	10.1	1.7	2.0	0.2	1.9	30.8
초등학교	47.8	20.8	11.8	16.2	11.8	5.6	5.9	2.0	1.4	0.4	1.2	43.3
중학교	57.5	41.5	27.2	27.0	15.8	12.6	12.3	1.9	2.2	0.3	2.7	36.7
고등학교	60.4	44.7	31.8	25.7	22.8	22.7	10.7	3.9	2.4	0.5	2.5	32.9
성 별 × 학 교 급	초등	33.9	17.8	12.1	14.9	12.3	6.3	5.9	3.2	3.0	0.0	54.4
	초등 학교	60.6	23.6	11.5	17.4	11.3	4.9	5.9	0.9	0.0	1.5	33.1
	중	43.8	31.3	20.2	18.7	13.5	7.7	12.5	2.1	1.6	0.8	48.9
	중 학교	67.0	48.5	32.0	32.8	17.4	16.1	12.1	1.7	2.6	0.0	28.2
고등 학교	60.4	42.8	33.9	23.0	25.0	22.3	11.7	6.1	2.3	1.2	4.9	32.6
	여	60.3	46.2	30.1	27.8	21.2	23.0	9.9	2.3	2.5	0.0	33.1

(3) 낯선 상대와 오프라인 만남 경험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낯선 상대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났다는 비율 역시 상당히 높았다. 전체 청소년 중 10.2% 정도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비율은 여자 청소년들이 11.5%로 남자 청소년의 9%보다 높았다. 특히 중학교 2학년 여자 청소년의 15.4%, 고등학교 2학년 16.7%가 한 번 이상 이런 오프라인 만남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난 경험

(단위: %)

구 분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난 경험	남	7.4	7.7	11.7	12.7	6.0	10.6	7.3	8.1	9.0
	여	5.1	4.1	14.4	15.4	13.5	11.1	16.7	10.4	11.5
	전체	6.3	5.9	13.0	14.0	9.9	10.7	12.8	9.1	10.2

이렇게 만나서 어떤 곳에 가본 적이 있는지를 다중 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표 IV-11>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식당(45.1%)이나 공원(24.3%), PC방(22.9%) 같은 공공장소에서 만났다고 응답했지만, 보다 사적인 장소인 룸카페(20%)에서 만났다는 비율도 5명 중 1명이나 있었다. 심지어는 상대방의 집이나 모텔(4.4%), 상대방의 자동차(1.8%)에서 만났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이런 위험한 장소에서 만났다는 응답은 남자 청소년들이 더 높았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비율인 3.2%가 상대방의 숙소(모텔이나 집)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IV-11.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들)과의 만남 및 이동 장소(복수응답)

(단위: %)

구 분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들)과의 만남 및 이동 장소							
		음식점, 카페	근처에 있는 놀이터, 공원 등	PC방	룸카페, 만화카페, 노래방 등	멀리 떨어진 놀이공원, 관광지 등	모텔이나 집	그 사람의 자동차	그 외 장소
전체		45.1	24.3	22.9	20.0	4.5	4.4	1.8	29.2
성별	남	34.0	21.9	35.4	17.7	7.2	6.7	3.4	25.0
	여	53.6	26.2	13.5	21.8	2.4	2.6	0.7	32.3
학교급	초등학교	23.2	37.8	12.2	9.3	5.9	2.7	2.0	40.4
	중학교	42.0	27.6	20.3	17.8	3.8	3.9	2.2	32.6
	고등학교	55.3	16.5	29.0	25.9	4.7	5.4	1.5	22.0
성별 × 학교급	초등 학교	남	20.7	34.9	12.2	8.3	6.2	4.3	37.9
		여	27.3	42.6	12.2	10.9	5.4	0.0	44.6
	중 학교	남	23.0	24.1	31.0	10.1	8.5	6.1	28.5
		여	54.8	30.0	13.1	22.9	0.7	2.5	35.3
	고등 학교	남	52.5	13.1	51.4	30.5	6.2	8.6	2.3
		여	57.3	18.8	14.0	22.8	3.6	3.2	0.9

9)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시설 인지도

(1) 위클래스 인지도

위클래스는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시설로서 또래간의 디지털 성적 침해가 문제 되는 경우 가장 먼저 개입하거나 당사자들이 신고 혹은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표 IV-12>에서 나타나듯 교내에 위클래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청소년은 70.3%에 달했으며 여자 청소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5.1%였다.

표 IV-12. 학교 위(Wee)클래스 이용 경험

(단위: %)

구 분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학교에 위클래스(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상담실) 있음	남	61.7	45.2	71.9	67.6	73.9	67.0	63.6	68.9	65.2
	여	66.3	54.1	82.7	80.2	89.7	76.8	77.6	81.7	76.3
	전체	63.9	49.6	77.1	73.9	82.1	69.7	71.7	74.5	70.5
상담 선생님에게 고민 상담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 학교 위클래스 이용 경험	남	11.3	12.6	12.6	14.4	16.9	14.1	4.3	9.3	12.2
	여	18.6	24.1	14.4	18.0	23.5	16.3	13.9	14.3	17.8
	전체	15.0	18.7	13.5	16.3	20.7	14.7	10.4	11.7	15.1

(2) 예방 교육 경험

〈표 IV-13〉에서 응답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개인정보 보호교육(58.4%)이나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76.2%)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조금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이 예방 교육 경험 비율이 높았고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더 많은 경향이 있었다.

특기할 것은 학년별 도움 정도 평가로서 낮은 학년일수록 해당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았다. 초등학교 5학년은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에 높았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13.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 점(4점 척도))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개인정보 보호교육 경험	개인정보 보호교육 도움 정도	온라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온라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도움 정도
초등 학교	5학년	남	68.5	3.55	77.2	3.50
		여	68.0	3.50	79.1	3.55
	6학년	남	70.8	3.15	75.2	3.37
		여	57.5	3.15	75.0	3.37
	소계	남	69.5	3.33	76.3	3.44
		여	63.0	3.33	77.1	3.46
중학교	1학년	남	60.6	3.28	74.4	3.29
		여	55.2	3.08	69.7	3.24
	2학년	남	64.4	2.98	75.2	3.07
		여	66.4	3.13	83.3	3.21
	3학년	남	71.2	2.86	88.9	2.81
		여	60.3	2.92	87.1	2.96
	소계	남	65.1	3.05	79.1	3.06
		여	60.6	3.05	80.1	3.13
고등 학교	1학년	남	47.1	2.93	61.4	2.97
		여	45.5	3.10	70.3	2.81
	2학년	남	57.6	3.03	78.4	2.98
		여	43.2	3.01	70.9	3.06
	3학년	남	46.5	2.74	75.7	2.68
		여	51.7	2.86	80.4	2.83
	소계	남	49.6	2.90	70.8	2.87
		여	46.6	2.98	74.1	2.95
전체			58.4	3.09	76.2	3.12

(4) 온라인 그루밍 인지도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집에서 가족과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 자체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를 질문했다. 그 결과, 가족끼리 온라인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1.0%로 높았으나,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9.9%에 불과했다. 대개의 경우 이번에 이슈가 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범죄의 방법에 대한 정보는 전달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표 IV-14. 집에서 가족과 온라인 성폭력(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 해 본 경험
(단위: %)

구 분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집에서 가족과 온라인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에 대해 이야기 해 본 경험	남	20.7	15.6	10.4	10.2	9.7	13.9	16.0	11.3	13.4
	여	31.5	29.0	29.9	28.9	32.6	20.0	30.8	27.0	29.4
	전체	26.0	22.3	19.6	19.5	21.8	15.6	24.7	18.1	21.0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음	남	9.9	4.8	5.6	11.2	6.7	10.3	12.0	11.6	9.0
	여	5.0	6.8	10.3	18.7	13.6	8.9	11.5	11.7	10.8
	전체	7.5	5.8	7.8	14.9	10.3	9.9	11.7	11.6	9.9

(5) 관련 기관 및 시설 인지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가장 인지도가 높은 기관은 전체 응답자의 84.2%가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사이버 상담센터(1388)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 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21%로 가장 낮았다. 지원 기관들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함께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서는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모든 기관에 대한 인지도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기관에 대한 인지도 교육이 남자 청소년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서 특히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15. 디지털 성범죄 도움 기관 인지도

(단위: %)

구 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남	66.5	69.6	79.5	86.4	86.2	89.2	80.2	85.5	80.6
	여	69.8	84.6	86.9	92.9	94.2	94.7	92.5	93.2	88.2
	전체	68.1	77.0	83.0	89.6	90.4	90.7	87.4	88.8	84.2
온라인 상담센터	남	44.1	39.0	54.6	56.8	60.3	55.3	55.0	58.2	53.0
	여	41.3	49.5	54.9	66.9	59.5	61.1	51.7	57.5	54.8
	전체	42.7	44.2	54.7	61.9	59.9	56.9	53.1	57.9	53.9
여성긴급전화 1366	남	24.4	27.2	37.9	40.2	42.9	46.8	42.7	44.6	38.4
	여	43.8	60.5	63.7	74.8	77.4	81.4	75.7	81.6	69.0
	전체	33.7	43.5	50.1	57.4	60.8	56.4	61.9	60.5	52.8

구 분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남	34.2	33.5	43.9	43.2	49.1	42.7	49.5	39.1	41.6
	여	37.9	40.5	56.6	57.7	51.9	54.0	50.4	52.7	50.0
	전체	36.0	36.9	49.9	50.4	50.5	45.8	50.0	44.9	45.6
해바라기 센터	남	14.9	12.8	17.6	17.9	21.4	23.7	25.5	19.6	19.1
	여	9.6	15.0	20.1	25.6	25.5	26.5	32.1	31.9	23.1
	전체	12.4	13.9	18.8	21.8	23.6	24.5	29.3	24.8	21.0

10) 교육과 위험행동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취약성을 보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 교육의 경험 여부, 그리고 그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수준에 따라서 온라인에서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이 높은 행동의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비교 결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이 전반적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위험한 행동을 적게 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우선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번 이상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온라인 그루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거절하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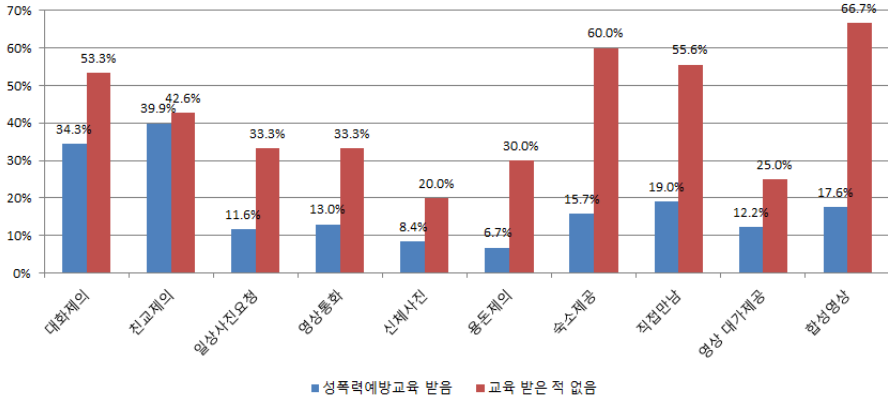


그림 IV-15.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에 따른 온라인 그루밍 접근을 거부했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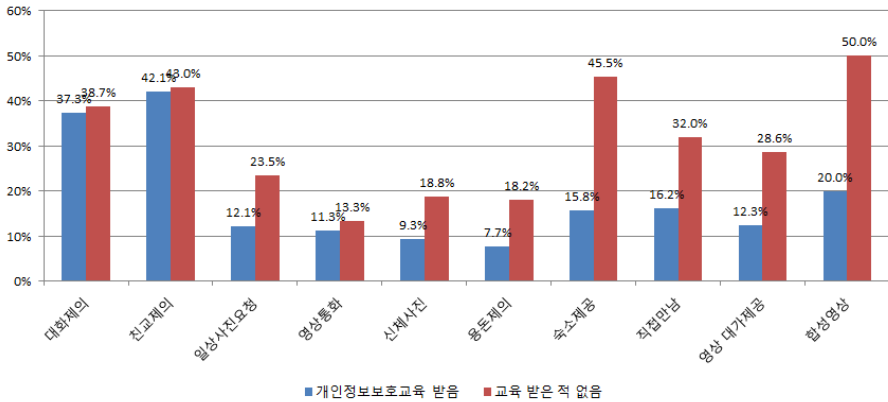


그림 IV-16. 개인정보보호교육 경험에 따른 온라인 그루밍 접근을 거부했다고 응답한 비율

익명 계정을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이용정지를 당해본 경험은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뚜렷하게 낮았으며, 특히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에 따른 격차가 더욱 분명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응답 역시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집단이 뚜렷하게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모두 60% 이상이 하나 이상의 개인정보를 노출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으로 알게된 사람과 직접 만나서 공공장소가 아닌 보다 사적인 장소(룸카페, 만화방, 노래방, 낚선 이의 자동차, 모텔이나 집)로 간 적이 있는 비율 역시 학교에서의 교육(개인정보 보호교육,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현저하게 낮았다. 특히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은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이런 위험한 장소로 간 적이 있다는 비율이 39.1% 대비 14.3%로 거의 1/3 수준으로 낮았다. 반면에 디지털 성적 침해 피해나 가해 정도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16.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에 따른 위험 행동

(단위: %, 점)

위험 행동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			
	개인정보 보호교육 경험		온라인 성폭력(디지털 성폭력)예방교육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익명계정 사용 비율(%)	15.6	16.5	15.4	13.0
익명계정 이용금지 비율(%)	10.7	11.5	9.0	30.8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에게 개인정보 노출 비율(%)	60.7	67.0	61.1	68.0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들)과 위험 장소 (예, 룸카페, 만화방, 노래방, 그 사람의 자동차, 모텔이나 집)에서 만남 비율(%)	15.2	22.9	14.3	39.1
디지털 성적 침해 피해 정도(평균)	1.22	1.27	1.22	1.22
디지털 성적 침해 피해 점수(평균)	10.76	11.18	10.74	10.78
디지털 성적 침해 가해 정도(평균)	1.12	1.18	1.12	1.15
디지털 성적 침해 가해 점수(평균)	7.74	8.18	7.74	7.93

자신이 받은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의 위험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단순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에 익명계정 사용비율은 약간 낮았으나 익명계정을 이용정지 당할 정도로 문제행동을 했던 비율은 오히려 2배 가까이 높았다. 익명계정 이용 정지를 당한 청소년들이 관련 교육을 강제적으로 받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본 조사 내용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에 디지털 성적 침해나 가해 점수는 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표 IV-17. 학교에서의 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위험 행동 비율

(단위: %, 점)

위험 행동	학교에서의 교육 도움 정도			
	개인정보 보호교육 도움 정도		온라인 성폭력(디지털 성폭력)예방교육 도움 정도	
	상 집단	하 집단	상 집단	하 집단
	(도움 정도가 높은 집단)	(도움 정도가 낮은 집단)	(도움 정도가 높은 집단)	(도움 정도가 낮은 집단)
익명계정 사용 비율(%)	14.6	16.6	13.8	16.9
익명계정 이용정지 비율(%)	14.5	8.5	11.5	7.3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에게 개인정보 노출 비율(%)	57.2	63.8	58.8	62.9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들)과 위험 장소(예, 룸카페, 만화방, 노래방, 그 사람의 자동차, 모텔이나 집)에서 만남 비율(%)	13.9	13.6	13.5	13.5
디지털 성적 침해 피해 정도(평균)	1.20	1.24	1.21	1.22
디지털 성적 침해 피해 점수(평균)	10.55	10.96	10.68	10.78
디지털 성적 침해 가해 정도(평균)	1.10	1.13	1.11	1.12
디지털 성적 침해 가해 점수(평균)	7.61	7.85	7.69	7.78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험여부와 교육을 받은 경우 만족도 수준에 따른 온라인 위험 행동 추세를 종합하면 아래 [그림 IV-17]과 [그림 IV-18]과 같다. 그림에서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 수준에 따라 ‘도움 됨(만족도 상)’과 ‘도움 안 됨(만족도 하)’로 구분하였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집단은 ‘교육 안받음’으로 명명하였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온라인에서 낯선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응답은 이 두 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아본 경우에, 그리고 그 교육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낮았다. 또한 공공장소가 아닌 사적인 장소에서 낯선 타인과 오프라인 만남을 해본 경험의 비율은 교육의 만족도와는 상관없이 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아본 경우에 뚜렷이 낮았다.

반면에 이 두 예방교육은 익명계정 사용 여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단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여부에 따라 익명계정 이용을 정지 당해본 경험은 약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익명계정 이용 자체는 또래 문화로서 예방교육으로 막기 어렵지만 그 계정을 통해 위험한 행동이나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음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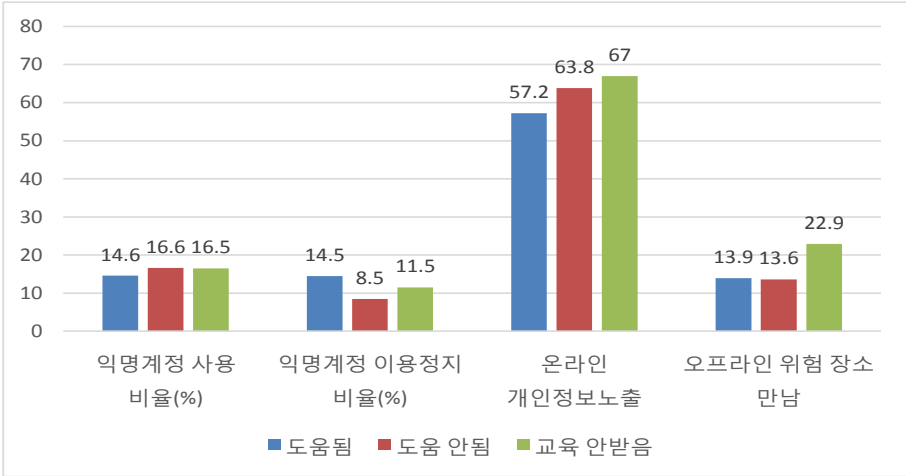


그림 IV-17. 개인정보 보호교육 경험 여부와 만족도(상, 하)에 따른 온라인 위험행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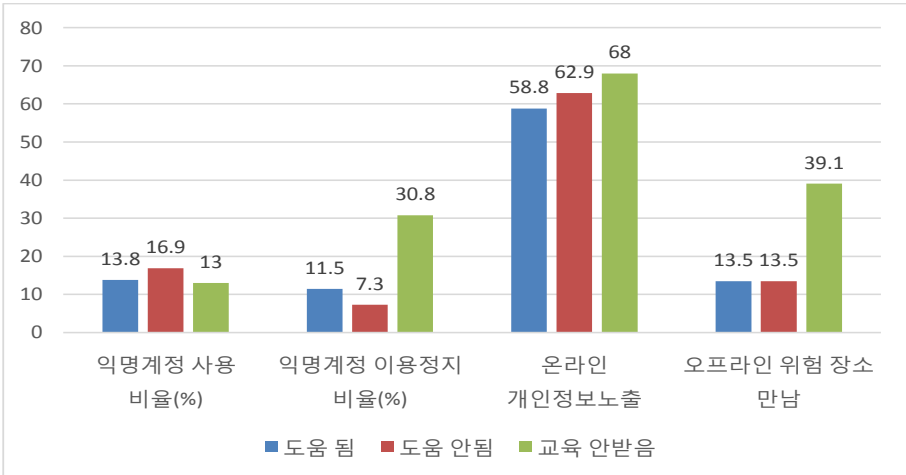


그림 IV-18.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여부와 만족도(상, 하)에 따른 온라인 위험행동 비율



제5장 정책 방안

- 1. 그루밍 처벌 규정의 실효성
보완
- 2. 기업의 자율규제 활성화 및
모니터링 의무화
- 3. 국제공조 신고시스템 구축과
전담기구 설치
- 4. 추진로드맵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와 해외사례, 전문가 콜로키움,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수집한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자료와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제시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 정책개발 가이드라인⁶⁷⁾를 종합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정리했다.

여기서 도출한 정책과제는 온라인 그루밍 판례 및 처벌규정의 실효성,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모니터링 의무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국제공조 신고시스템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이다. 정책과제별로 추진배경, 추진근거, 추진방안, 법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전체적으로 추진단계와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67) 출처: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020). Guidelines for policy-makers on Child Online Protection, p.37-44, p.52.

https://www.itu.int/en/ITU-D/Cybersecurity/Documents/COP/Guidelines/2020-translations/S-GEN-COP.POL_MAKERS-2020-PDF-E.pdf 에서 2021년 7월 12일 인출.

1. 그루밍 처벌 규정의 실효성 보완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정책과제1. 그루밍 처벌 규정의 실효성 마련

- 1) 실제 만남이 없어도 그루밍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 2) 그루밍 과정을 범죄화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 3)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성적착취의 목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 4) 피해자 청소년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지 않도록 연령 등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둔다.
 - 5)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 특례가 필요하다.
 - 6) 법 집행 책임에 관련된 기관들에게 관련 법 조항을 교육한다.
 - 7) 그루밍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한다.
 - 8) 법 개선사항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취목적 대화 등)에서 성적취목적에 대한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 9) 법 개선사항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와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신분위장수사는 3개월의 제한이 있으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

1) 추진배경

2021년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15조의2, 1항)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⁶⁸⁾. 이 법안은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근거로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는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 규정으로는 온라인 그루밍으로 이어지기 위한 준비과정을 막을 수 없고, 가해자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접근했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연령 등 입증 책임 관행의 문제점 개선,

68) 출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1.12. 타법개정, 법률 제1789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2021년 10월 8일 인출.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성적착취의 목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기준제시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법안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보완과 법 집행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2) 추진근거

2010년 캐나다의 르가리 케이스(R vs Legare) 판결⁶⁹⁾은 실제 만남이나 구체적인 성적 활동이 없이, 단지 인터넷 상에서 아동을 그루밍하는 대화만으로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캐나다 사법부에서 성인이 16세 이하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성적 활동을 다룬 대화를 금지하는 근거가 되었다. 판결문은 지금 현재 오간 대화의 내용 보다는 그 대화에 추후 성범죄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의도적인 의사소통인지, 상대방이 14세 미만의 아동임을 알고 있었거나, 14세 미만임이 예상된 경우, 특정한 2차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경우는 초기단계의 범죄로 판결하였다.

69) 출처: Canada Legal Information Institution (2009). R v Legare [2009]3 SCR 551: Closing the Cyberspace Door on Luring.
<https://canliiconnects.org/en/commentaries/36239> 에서 2021년 8월 3일 인출.

〈2010년 캐나다의 온라인 그루밍 판례로서 르가리 케이스 판결문〉

피쉬 판사는 캐나다 형법 제172.1조는, 다른 범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 단계” 범죄에 관한 것임을 명시했다. 즉, 2차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 172.1(1)(c)에 명시된 범죄들에 선행되는 행동들은 범죄화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항 내에 명시된 범죄들을 행하기 용이하도록 환경을 설정하는 행동들 역시 해당 범죄화 대상이다. 형법 제172.1(1)조를 적용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컴퓨터를 통해 범죄를 목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해당 법에 적시된 범죄 발생이 결과적으로 용이해졌음을 보여야 하며, 이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다. 또한, 의사소통이 반드시 성적으로 노골적이어야만 범죄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해 아동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악의 없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 출처: Canada Legal Information Institution (2009). R v Legare [2009]3 SCR 551: Closing the Cyberspace Door on Luring. <https://canliiconnects.org/en/commentaries/36239> 에서 2021년 8월 3일 인출.

비슷한 예로 아동 성착취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IICSA) 보고에서 언급한 2014년 영국의 온라인 그루밍 판례가 있다. 여기서도 실제 만남은 없었음에도 그루밍의 전단계 작업으로 간주해 유죄로 판단했다⁷⁰⁾. 또한 호주의 Carly’s 법 역시 아동과의 부정직한 소통을 처벌대상으로 본다(탁틴내일, 2021). 이 모든 판결을 관통하는 원칙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착취 준비나 계획을 하는 모든 행위’는 범죄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8세 이상인 성인이 ① 일부러 미성년자를 찾아서 소통하는 것, ② 미성년자와 대화 하면서 자신의 연령을 실제보다 낮추어 소개하거나, 자기 신분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경우, ③ 실제로 미성년자와 만나거나 타인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경우 징역 5년 형을 선고한다.

호주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위장수사를 실시하며, 피해자 미성년자의 연령에 대한 증명 책임을 피의자에게 두고 있다(정익중 외, 2020: 45). 이에 따라 범죄행위자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

70) 출처: Independent Inquiry Child Sexual Abuse(2020). The Internet Investigation Report. <https://www.iicsa.org.uk/key-documents/17805/view/internet-investigation-report-march-2020.pdf> 에서 2021년 7월 12일 인출. p.55-56.

하고 범행을 했는지에 대한 검사가 아니라 범죄행위자가 입증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권현정, 2021: 99).

국제 실종 및 착취 아동 센터(ICMEC)에서는 그루밍 처벌규정의 집행과정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⁷¹⁾.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었다면, 법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법 집행 책임에 관련된 기관들이 관련 법 조항에 대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법 집행관, 사회복지사, 변호사, 판사 등은 아동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들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아동 성학대 및 착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루밍 처벌 규정의 실효성 마련을 위해서는 아동복지 전달체계 종사자의 디지털 성범죄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현재는 청소년지원체제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체제 간의 정보교류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성폭력상담원, 성매매방지상담원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배치하고 그루밍 관련 교육이수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한다(정익중 외, 2020).

또한 아동과 실제 만남의 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화 해야 한다. 영국의 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센터(CEOP)에 의하면, 2012년 영국에서 조사된 온라인 그루밍(온라인 아동 성착취) 1,145건 중, 가해자가 오프라인에서 아동을 만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경우는 7% 미만으로 나타난 반면, 대다수는 온라인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란사로테 위원회는 란자로테 협약 23조에 대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아동과의 만남이 반드시 직접적인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온라인 내에서만 만남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아동에 심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장수사〉 호주의 인터넷 아동보호 협회(CEIU)와 경찰은 정기적으로 비밀리

71) 출처: ICMEC(2017).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https://www.icmec.org/wp-content/uploads/2017/09/Online-Grooming-of-Children_FINAL_9-18-17.pdf 에서 2021년 7월 17일 인출 p.11-15.

에 온라인 그루밍 관련 위장수사를 진행하고 있다(NSPCC, 2018).

〈공공 인식 개선 캠페인〉⁷²⁾을 통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 및 시민, 기타 잠재적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공동 커뮤니티 내의 아동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된다. 2016년 영국에서는 증가하는 온라인 그루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hildline에서 #ListenToYourSelfie 캠페인을 시작해 아동들이 성착취 문제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다(ICMEC, 2017).

〈그루밍인법안의 실행 과정〉⁷³⁾에서 온라인 그루밍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 예방책 및 사후책을 적절히 시행하도록 하는 종합적 접근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국가 간 혹은 산업 간, 공공-민간 분야의 협력은 온라인 그루밍 예방책 및 사후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온라인 그루밍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예방책 및 사후책을 적절히 시행하도록 하는 종합적 접근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ICMEC, 2017).

72) 출처: ICMEC(2017).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https://www.icmec.org/wp-content/uploads/2017/09/Online-Grooming-of-Children_FINAL_9-18-17.pdf 에서 2021년 7월 17일 인출. p.26-36.

73) 출처: ICMEC(2017).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https://www.icmec.org/wp-content/uploads/2017/09/Online-Grooming-of-Children_FINAL_9-18-17.pdf 에서 2021년 7월 17일 인출. p.26-36.

구분	온라인 그루밍 예방책 및 사후책의 종합적 접근	
	예방책	사후책
내용	• 국가 전략/행동 계획 • 온라인 아동 보호 프레임워크 설정 • 트레이닝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공공 인식 개선 캠페인 • 연구 및 데이터 확보	•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마련 • 온라인 그루밍 피해 발생 시 가해자의 행동을 범죄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체포, 기소, 판결 등) • 피해자 지원책 마련 • 모니터링/ 신고 시스템 마련

* 출처: ICMEC(2017). p.26.

3) 추진방안

첫째,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둘째, 실제 만남이 없어도 그루밍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셋째, 그루밍 과정을 범죄화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넷째,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성적 착취의 목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다섯째, 피해자 청소년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지 않도록 연령 등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둔다. 여섯째,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 특례가 필요하다. 일곱째, 법 집행 책임에 관련된 기관들에게 관련 법 조항에 대해 교육을 제공한다. 여덟째, 그루밍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한다. 아홉째, 법 개선사항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서 성착취 목적에 대한 기준과 내용 제시가 필요하다.

4) 법 개선 사항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이 시행(2021년 9월 24일)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서는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성적 착취목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기준제시가 필요하다(권현정, 2021; 김정연, 2021).

- 법 개선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목적 대화 등)에 대한 기준과 내용 제시가 필요하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 출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1.12. 타법개정, 법률 제1789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2021년 10월 8일 인출.

○ 개선안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2에 대한 미성년자 연령 입증, 성적착취 목적 대화 등 개선사항)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연령에 대한 인지 문제와 성적 착취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내용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캐나다의 르가리케이스로 온라인 그루밍 판결문에 의하면, 만남이나 실제 성적 활동이 없었지만, 인터넷 상에서 아동을 그루밍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물리적인 만남 없이 대화만 하더라도 유죄가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도 처벌이 된다. 의사소통이 반드시 성적으로 노골적이어야만 범죄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해 아동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악의 없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Canada Legal Information Institution, 2009). 아동에게 접근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부적절한 소통을 처벌하며(탁틴내일, 2021), 범죄행위자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 호주에서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의자에게 두고 있다(정익중 외, 2020: 45). 이처럼 미성년자 연령을 범죄행위자가 입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준과 내용을 반영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착취의 목적이라는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법 개선안(위장수사 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에서 신분위장수사)가 법제화되어 2021년 9월 24일 시행되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와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7에 신분위장수사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신분위장수사는 3개월의 제한이 있으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
 -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1. 3. 23.]

* 출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1.12. 타법개정, 법률 제1789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2021년 10월 8일 인출.

○ 개선안 (위장수사 기간연장, 행정지원 등)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방향으로 위장수사 등 관련 향후과제가 남아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도입되어 경찰에서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분 비공개 수사관련 법조문 일부개정으로 신분위장수사는 3개월의 제한이 있으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위장수사를 위한 행정지원 근거 마련, 위장수사에 특화된 전문가활용을 위하여 정기적인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탁틴내일, 2021: 69-74).

2. 기업의 자율규제 활성화 및 모니터링 의무화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정책과제2. 아동 성착취물(CSAM)에 대한 기업의 모니터링 의무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프로그램 활성화

- 1)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신고(혹은 통보) 의무를 부과한다.
 - 2)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기업의 모니터링 의무가 필요하다.
 - 3) 아동 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과 활동을 활성화한다.
 - 4) 기업이 아동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여론을 형성한다.
 - 5) 정부는 기업 및 제3자가 아동보호 책임을 이행하도록 국내외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조성한다
 - 6) 정부는 기업이 자율규제 시스템을 마련하더라도,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한다.
 - 7)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가 의심되는 사용자가 사이버 범죄 보고 웹사이트에 신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8) 기업들이 자사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그루밍을 확인하고 예방 조치에 투자하도록 규제 요건을 만든다.
 - 9) 플랫폼에서 콘텐츠 삭제가 있을 경우, 다른 플랫폼사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 10) 규제기관은 기업들이 아동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금융제재, 기업 제재 및 금지 등 강제조치를 마련한다.
 - 11) 규제기관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제조치와 합당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 12) 규제 기관은 아동보호 조치를 어긴 기업의 부당 수익을 몰수한다. 각 산업 분야에 알맞게 충분한 규모의 금융패널티 권한을 가진다.
 - 13) 아동 보호의무를 크게 위반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기업에 대해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
 - 14) 기업형 범죄를 확장하고 규제 수준을 엄격하게 정하여 기업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 15) 법 개선사항으로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에 16.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현행의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신고(혹은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1) 추진배경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법 등에서 그루밍 처벌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그루밍 처벌규정의 집행과정 실효성 증진을 위해서는 집행 과정에 대한 교육과 개선이 필요하다.

2) 추진근거

기업이 아동 온라인 성착취물(CSAM)에 대한 자율규제와 신고대응을 하게 된 데에는, 기업 이미지에 대한 언론과 여론 형성으로서 매스컴의 영향이 가장 크다.

온라인 그루밍 관련하여 조사받은 기업 사례⁷⁴⁾로서 BBC 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 소속인 왓츠앱 대변인은 “최근 여러 신고를 통해 두 앱스토어 및 대화 플랫폼 서비스들이 아동 성 학대 콘텐츠 공유에 이용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를 멈추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 관련 회사들이 협력해야만 한다”. 왓츠앱은 현재 PhotoDNA를 도입하고 있으며, “아동 성학대 관련 이미지 등을 공유하는 모든 그룹방에 플래그를 지정하고 없앨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 감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과 활동은 아동 성착취물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왓츠앱, 스냅챗, 스카이프 등과 같은 SNS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⁷⁵⁾ 기술 프로그램으로 패닉 버튼(Panic Button), Photo

74) 출처: Independent Inquiry Child Sexual Abuse(2020), The Internet Investigation Report.
<https://www.iicsa.org.uk/key-documents/17805/view/internet-investigation-report-march-2020.pdf> 에서 2021년 7월 12일 인출. p.45-46.

75) 출처: ICMEC(2017),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https://www.icmec.org/wp-content/uploads/2017/09/Online-Grooming-of-Children_FINAL_9-18-17.pdf 에서 2021년 7월 17일 인출. p.33.

DNA 등과 같은 기술 프로그램 개발과 자율규제, 모니터링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ICMEC, 2017).

또한 정부의 기업 규제 프레임워크⁷⁶⁾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 및 제3자가 아동보호책임을 이행하도록 국내외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는 정부의 기업 규제 프레임 워크로 기업 및 제3자가 국내외 운영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률 및 규제 환경 조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규제기관의 플랫폼기업에 대한 강제조치⁷⁷⁾가 필요하다. 규제기관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제조치와 합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권한을 가진다. 플랫폼은 그루밍을 포함하여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플랫폼에서 콘텐츠 삭제가 있을 경우, 다른 플랫폼사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규제 기관은 기업들이 온라인상 아동성범죄와 관련한 제재방 침을 어기는 대신 변화를 시도할 때에 이를 장려하고 합당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규제기관은 금융 제재(Financial Saction)를 통해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그들의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시, 혹은 규제 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실패했을 등의 경우에 해당 기업들에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 패널티는 제재 비준수를 방지하고,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제재를 어김으로써 얻는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여야 한다. 시행 경고 및 통지

76) 출처: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2020). Guidelines for policy-makers on Child Online Protection.

https://www.itu.int/en/ITU-D/Cybersecurity/Documents/COP/Guidelines/2020-translations/S-GEN-COP.POL_MAKERS-2020-PDF-E.pdf 에서 2021년 7월 12일 인출. p.30-33.

77) 출처: NSPCC(2018). Taming the Wild West Web: How to regulate social networks and keep children safe from abuse

<https://www.nspcc.org.uk/globalassets/documents/news/taming-the-wild-west-web-regulate-social-networks.pdf> 에서 2021년 7월 28일 인출.

(Enforcement warnings and notices)는 규제 기관에서 각 산업 분야에 알맞게 디자인된 아동 안전 장치를 기업 운영에 적용하는 등, 아동 안전과 관련하여 교정 조치를 적용하도록 기업에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 제재 및 금지는 규제 기관에서 기업이 온라인상 아동 보호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용인할 경우 이를 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공개 비판 및 부정적 간접광고 명령(Public censure and adverse publicity orders)은 기업들의 행동이 아동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사 홈페이지에 메시지를 띄우거나 미디어 캠페인으로 악영향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기업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에서는 아동 보호의무를 크게 위반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 기업의 의무위반 범죄화는 합리적이고, 적절하며 전세계의 온라인상 아동 보호를 위한 제재 목표와 명확하게 연결되는 것이다(NSPCC, 2018).

영국 내에서는 1974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Act 1974)에 따라 기업은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자가 주의의무를 총체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업은 여러 죄목으로 기소될 수 있다. 나아가 아동들에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동이므로, 이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 기업은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크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기업에 혐의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업형 범죄를 확장하고 규제 수준을 엄격하게 정하여 이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NSPCC, 2018).

3) 추진방안

아동 성착취물(CSAM)에 대한 기업의 모니터링 의무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는 첫째,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신고(혹은 통보)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 둘째,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기업의 모니터링 의무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 성착취물을 근절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과 활동을 활성화한다. 넷째, 기업이 아동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여론을 형성한다. 다섯째, 정부는 기업 및 제3자가 아동보호 책임을 이행하도록 국내외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조성한다. 여섯째, 정부는 기업이 자율규제 시스템을 마련하더라도,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한다. 일곱째,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가 의심되는 사용자가 사이버 범죄 보고 웹사이트에 신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덟째, 기업들이 자사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그루밍을 확인하고 예방 조치에 투자하도록 규제 요건을 만든다. 아홉 번째, 플랫폼에서 콘텐츠 삭제가 있을 경우, 다른 플랫폼사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열 번째, 규제 기관은 기업들이 아동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금융제재, 금융패널티, 기업 제재 및 금지 등 강제조치를 마련한다. 열 한번째, 규제기관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제조치와 합당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열두번째, 규제 기관은 아동보호 조치를 어긴 기업의 부당 수익을 몰수한다. 그리고 각 산업 분야에 알맞게 충분한 규모의 금융패널티 권한을 가진다. 열세번째, 아동 보호의무를 크게 위반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기업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 규제 기관은 기업이 온라인상 아동 보호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용인할 경우 이를 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열네번째, 기업형 범죄를 확장하고 규제 수준을 엄격하게 정하여 기업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4) 법 개선 사항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성폭력처벌법)이 있다(전운정, 2020).

개선 사항으로는 플랫폼 기업의 신고(혹은 통보)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현행의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신고(혹은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신고나 발견한 경우는 증거를 보존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혹은 제3의 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권현정, 2021; 97). 현행 법안에서는 현행은 과징금 부과 대상을 제공자로 개인으로 표현하였지만, 조치의무기업체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현행 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출처: 전기통신사업법(2021.10.19. 일부개정, 법률 제18477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내용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 개설, 신고받은 정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경고문구 게시(제30조의 6)이며, 벌칙은 연 평균 매출액 기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이다.

대상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며 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자, 전년도 3개월 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다(권현정, 2021: 93-94).

○ 현행 법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출처: 전기통신사업법(2021.10.19. 일부개정, 법률 제18477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내용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신고건수, 처리결과, 처리기준, 책임자 배치 상황 등), 책임자 교육 2시간 포함이다(권현정, 2021: 93).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시행 2021. 9. 24.]

제3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1.12. 타법개정, 법률 제1789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2021년 10월 8일 인출.

○ 개정안 제안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에 제30조의 6에 신고받은 정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경고문구 게시 =>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1안)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에 16.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2안) 제34조2(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통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에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정황을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혹은 제3기관, 수사전담기구 등)에 즉시 통보한다(권현정, 2021: 94).

3. 국제공조 신고시스템 구축과 전담기구 설치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정책과제3. 국제공조 신고시스템 구축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

- 1) 법에 근거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전담기구는 국제공조 시스템구축, 직접 수사권과 정보 접근 등 권한을 가진다.
 - 2)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전화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전화 “핫라인”과 온라인 “팁라인”과 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3) 신고 사이트 접근성을 쉽게 개편한다.
 - 4)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한다.
 -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혹은 제3의 기관은 신고내용을 확인, 삭제지원, 경찰수사 의뢰 등을 의무화 한다.
 - 6) 산업-정부-NPOs의 다분야 협업 방식으로 국제공조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플랫폼에 삭제 명령 가능하도록 해외 사업자에 국가간 협약, 국제조약 등 국제공조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 7) 신고 및 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국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한다.
 - 8) 디지털 성범죄관련 정보 유통의 온상인 해외 플랫폼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한다.
 - 9) 아동 성착취물(CSAM)을 인터폴 국제 아동 성착취(ICSE)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 10) 아동들을 위한 국가차원 디지털 어젠다 개발 및 구현, 모니터링을 주도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 11) 법 개선사항으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

1) 추진배경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 및 차단 현황을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최진웅, 2020: 2).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 이전에 사업자에게 자율규제조치(삭제)를 요청하며, 이후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는데, <표 V-1>에서 대부분이 접속차단 요청인 것으로 볼 때 디지털 성범죄 유통의 주된 경로가 해외 플랫폼임을 알 수 있다(최진웅, 2020: 2).

국제 사회는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와 관련 초범과 상습범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피해 아동들을 평생 지원하고, 피해 사실을 조사 및 기소, 재판, 그리고 가해자 교화에 드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비용적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기술 관련 기업들은 온라인상 아동 인증 시스템과 같이 OCSE에 사후 대응하는 것이 아닌, 아동 성착취 이미지 및 영상들(Child Sexual Abuse Material)을 탐지 및 제거하고, 온라인 그루밍 시도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 모델 국가 대응의 측면에서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국가는 예를 들어, PHoto DNA 등을 다른 국가와 공유할 의무가 있다(WeProtect Global Alliance, 2019).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입법 및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법적 요건이 모호하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사후적 통제 방식만이 법제화되어 있으며, 법적 규제 강화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해외 플랫폼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최진웅, 2020). 또한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공조 수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김한균, 2020; 최진웅, 2020).

표 V-1.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현황

구분	심의	시정요구		
		계	삭제	접속차단
2018년	17,486	17,371	123	17,248
2019년	25,992	25,900	4	25,896
2020년(3월)	8,282	8,282	2	8,280

* 출처: 최진웅(2020).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 관련 플랫폼 규제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p.2.

국내 디지털 플랫폼의 사후적 법적 책임보다도 사전적으로 행해지는 기술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전적인 기술조치 의무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포를 비교적 신속하게 차단하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진웅, 2020). 디지털 성범죄 정보 구성요건의 모호성과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행 법적인 제재하에서 국내 디지털 플랫폼의 협조 및 순응 정도를 평가한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이 존재한다(최진웅, 2020). 사전적 모니터링으로 사적 통신의 자유 침해 및 사적 검열의 문제가 있고, 영세한 플랫폼의 경우 사전적 조치를 위한 인적 기술적 자원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도 있다(최진웅, 2020). 따라서 국내 플랫폼의 협력이 중요하며, 영세한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유포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위한 인적 기술적 자원을 지원하는 소요예산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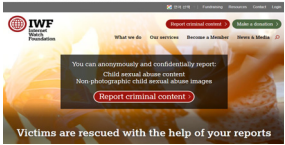
2) 추진근거

아동·청소년을 온라인상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아동이 속한 커뮤니티의 책임이다. 이를 위해 전화 “핫라인”과 온라인 “팁라인”과 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제공조 신고 시스템(Reporting Mechanisms)⁷⁸⁾은 국제 인터넷 핫라인 협회(INHOPE), 미국의 사이버 팁라인(CyberTipline), 영국의 인터넷 감시 협회(IWF), 캐나다의 팁라인(Tipline) 등이 있다.

78) 출처: ICMEC(2017).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https://www.icmec.org/wp-content/uploads/2017/09/Online-Grooming-of-Children_FINAL_9-18-17.pdf 에서 2021년 7월 17일 인출. p.31.

표 V-2.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신고시스템

시민단체 신고시스템	내 용
INHOPE  국제인터넷하라인협회 https://www.inhope.org/EN/articles/who-we-are	• 국제 인터넷 핫라인 협회(INHOPE)는 45개국에 51개 핫라인을 설치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대중들에 아동 성학대 및 착취 자료 등의 온라인상 아동 성적 학대 정황이 있을 시 익명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 • INHOPE는 전세계 핫라인 간 CSAM 교환을 위한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10년 이상 유럽 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커넥팅 유럽 시설 자금 지원'에 따르면, INHOPE는 파트너인 Ziauz 포렌식스 및 인터폴과 함께 ICCAM 플랫폼을 운영/유지/관리하고 있다. ICCAM은 2018년 44개의 핫라인에서 아동의 성적 이미지 및 영상을 모두 인터폴 국제 아동 성착취(ICSE) 데이터베이스로 전송
CyberTipline  https://www.missingkids.org/gethelpnow/cybertipline	• 미국은 사이버 틱라인(CyberTipline)을 운영하며, 미국 국립실종취약아동센터(NCMEC), 연방수사국(FBI), 이민 관세청, 우편검사국(USP), 비밀정보국(Secret Service) 등이 협력 • NCMEC는 CyberTipline을 운영
IWF  https://www.iwf.org.uk/	• 영국의 인터넷 감시 협회인 Internet Watch Foundation (IWF)를 통해 관련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 사례는 협회에서 분석
Tipline  https://www.cybertip.ca/app/en/	• 캐나다의 틱라인(Tipline) 역시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고 대중에게 정보 및 예방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출처: ICMEC(2017). p.31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함.

국제공조 신고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추지원조직(backbone organization)으로서의 역할은 단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 연구기능, 정보제공 기능, 비전과 전략제시 기능, 커뮤니케이션, 참여촉진, 홍보 기능과 연결 및 컨설팅 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신속한 수사 및 예방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 삭제명령부터 전문 수사의 수행 및 지원, 전문 수사기법의 연구 및 개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수사의 수행 및 지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맡도록 하고자 한다(권현정, 2021: 90-91).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해외 입법사례는 영국의 국가범죄수사국 산하 아동착취온라인보호센터(CEOP), 미국의 아동대상 사이버범죄 대응팀(ICAC)이 있다.

표 V-3.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의 입법사례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	내 용
영국의 아동착취 온라인보호센터(CEOP)	• 영국의 국가범죄수사국 산하에 있으며 중대조직범죄수사대와 협력체계를 통해 2010년 비정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 범죄 및 법원법으로 국가범죄수사국이 설립되어 그 산하로 흡수되었음. • CEOP는 경찰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의 협력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범죄사령부, 경제범죄사령부 등과 함께 직접적인 아동 성착취 수사가 가능하고, 온라인 그루밍 잠입수사, 아동 성착취물 분석, 아동 구조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접수, 수사, 조사, 분석, 관계 부처간 협조, 국제공조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
미국의 아동대상 사이버범죄 대응팀(ICAC)	• 연방, 주, 지방 수사기관 및 검찰로 이루어진 61개의 협력대응팀이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 각 대응팀은 사이버 공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응한 위장수사와 법과 학수사 및 형사소추 업무를 전담. • 미국 법전의 범죄 통제 및 법률 집행과 아동 등의 보호, 아동착취 예방 및 차단을 위한 국가전략 중에 ICAC Task Force의 의의 설립목적, 책임과 기능, 데이터 시스템, 정부보조금, 보고 및 승인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 출처: 권현정(2021). p.91-93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함.

아동 성착취물 타파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⁷⁹⁾로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를 타파하기 위하여, 국제사회 및 각 국가가 함께 해나가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표 V-4. 아동 성착취물 타파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⁸⁰⁾

	아동 성착취물 타파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국제사회	- 기술 및 서비스 제공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 -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국가는 이를 다른 국가와 공유
글로벌 기술 기업	온라인상 아동 인증 시스템과 같이 OCSE에 사후 대응하는 것이 아닌, 아동 성착취 이미지 및 영상들(Child Sexual Abuse Material)을 탐지 및 제거하고, 온라인 그루밍 시도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기술을 개발
국가정책입안자	- 기업이 CSAM 또는 그루밍 행위를 사전 예방적으로 스캔할 수 있는 기술을 무력화하거나 최소화 하지 않도록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공공 안전 법률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모색 - 국가 정책 입안자들은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 예방 캠페인과 범죄에 개입 조치를 설계하고, 전문 언론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들의 시각과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
법집행기관	-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수사 기법의 공유를 늘리고, 피해자 식별 장치를 개선하고 규모에 맞게 OCSE의 퍼짐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 - 온라인 안전 전문가는 모범 사례 교육 프레임워크, 내용 및 교육 방법을 공유하고 행동 변화에서 그 효과를 평가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온라인 이용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를 개발

* 출처: WeProtect Global Alliance(2019). p.45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79) 출처: WeProtect Global Alliance (2019). Global Threat Assessment: Working together to end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online.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630f48de4b00a75476ecf0a/t/5deecb0fc4c5ef23016423cf/1575930642519/FINAL+++Global+Threat+Assessment.pdf> 에서 2021년 7월 27일 인출.
 p.45

80) 출처: WeProtect Global Alliance (2019). Global Threat Assessment: Working together to end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online.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630f48de4b00a75476ecf0a/t/5deecb0fc4c5ef23016423cf/1575930642519/FINAL+++Global+Threat+Assessment.pdf> 에서 2021년 7월 27일 인출.
 p.45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3) 추진 방안

국제공조 신고시스템 구축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추진방안은 첫째,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전화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전화 “핫라인”과 온라인 “팁라인”과 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신고 사이트 접근성을 쉽게 개편한다. 셋째, 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한다. 넷째, 아동들을 위한 국가차원 디지털 어젠다 개발 및 구현, 모니터링을 주도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다섯째, 국제공조 신고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와 같은 중추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여섯째, 신고 및 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혹은 제3의 기관은 신고내용을 확인, 삭제지원, 경찰수사 의뢰 등을 의무화 한다. 여덟 번째, 기업-정부-NPOs의 다분야 협업 방식으로 국제공조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플랫폼에 삭제 명령 가능하도록 해외 사업자에 국가간 협약, 국제조약 등 국제공조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아홉 번째,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제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한다. 열 번째, 아동 성착취물(CSAM)을 인터폴 국제 아동 성착취(ICSE)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4) 법 개정 사항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전담기구 설치 입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CSAM) 발견 시 즉시 삭제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국제공조와 NGO-산업-정부의 협업 등이 필요하다(권헌정, 2021; 서울특별시, 탁틴내일, 2020.12.20; 전윤정, 2020).

서울특별시와 탁틴내일(2020.12.20.)은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국제연대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해법과 국제적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미국(THORN), 영국(Facebook), 네덜란드(INHOFE), 중국(CLIA) 등 5개국의 NGO,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산업-NGO-정부의 협업이 한국뿐아니라 전세계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NGO와 산업의 협업이 아동 성착취물의 해쉬태그(hashtag)를 공유하여 동영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되었는데, 정부가 직접 산업에 해쉬태그 등을 제공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제공조 협업으로 전세계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 더불어 성착취물 제거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하려면 국제공조와 정보 공유가 되어야 한다(서울특별시, 탁틴내일, 2020.12.20.).

신고 및 통보의 내용은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의심되는 정황 발견 시간, 내용, 계정 정보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미국실종착취아동센터 등과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혹은 제3의 기관은 신고내용을 확인, 삭제지원, 경찰수사 의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요청이 아니라 플랫폼에 삭제 명령 가능하도록 해외 사업자에 국가간 협약, 국제조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의 법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에 의해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홍보 및 모니터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권현정, 2021: 97).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⁸¹⁾. 디지털 성범죄의 신속한 수사 및 예방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 삭제명령부터 전문 수사의 수행 및 지원, 전문 수사기법의 연구 및 개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수사의 수행 및 지원, 피해자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

81) 출처: 권현정(2021).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의미와 향후 과제. 탁틴내일. 국제심포지움 자료집(2021. 07. 01) p.89-99에서 인용함.

○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의 3 <신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뿐 아니라, 더불어 아동·청소년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의2(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출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1.12. 타법개정, 법률 제1789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2021년 10월 8일 인출.

○ 개정안<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7조의3(아동·청소년 전담기구의 설치) ①국가는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고 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담기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온라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 삭제명령 나. 제25조의 2에 따른 전문수사의 수행 및 지원 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범죄 수사 기법의 연구 및 개발 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범죄 수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마.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수사의 수행 및 지원 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아동 성착취 모니터링 지원 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담조직은 검찰, 경찰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전담기구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권현정(2021).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의미와 향후과제,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모색: 청소년 성보호법시행 21주년기념국제심포지엄. 여성가족부, 탁틴내일. p.92-93.

4. 추진로드맵

표 V-5. 추진로드맵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과제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추진단계 ⁸²⁾	추진체계 ⁸³⁾
1. 그루밍 처벌 규정의 실효성 마련 1)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2) 실제 만남이 없어도 그루밍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3) 그루밍 과정을 범죄화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4)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성적착취의 목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5) 피해자 청소년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지 않도록 연령 등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둔다. 6)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 특례가 필요하다. 7) 법 집행 책임에 관련된 기관들에게 관련 법 조항을 교육한다. 8) 그루밍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한다.	단기과제 (1~2년)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지자체
2. 아동 성착취물(CSAM)에 대한 기업의 모니터링 의무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프로그램 활성화 1)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신고(혹은 통보) 의무를 부과한다. 2)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기업의 모니터링 의무가 필요하다. 3) 아동 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과 활동을 활성화한다. 4) 기업이 아동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여론을 형성한다. 5) 정부는 기업 및 제3자가 아동보호 책임을 이행하도록 국내·외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조성한다. 6) 정부는 기업이 자율규제 시스템을 마련하더라도,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한다. 7)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가 의심되는 사용자가 사이버 범죄 보고 웹사이트에 신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8) 기업들이 자사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그루밍을 확인하고 예방 조치에 투자하도록 규제 요건을 만든다.	단기과제 (1~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추진단계 ⁸²⁾	추진체계 ⁸³⁾
9) 플랫폼에서 콘텐츠 삭제가 있을 경우, 다른 플랫폼사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10) 규제기관은 기업들이 아동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금융제재, 기업 제재 및 금지 등 강제조치를 마련한다. 11) 규제기관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제조치와 합당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12) 규제 기관은 아동보호 조치를 어긴 기업의 부당 수익을 몰수한다. 각 산업 분야에 알맞게 충분한 규모의 금융패널티 권한을 가진다. 13) 아동 보호의무를 크게 위반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기업에 대해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 14) 기업형 범죄를 확장하고 규제 수준을 엄격하게 정하여 기업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3. 국제공조 신고시스템 구축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 1) 법에 근거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전담기구는 국제공조 시스템구축, 직접 수사권과 정보 접근 등 권한을 가진다. 2)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전화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전화 “핫라인”과 온라인 “팁라인”과 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3) 신고 사이트 접근성을 쉽게 개편한다. 4)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한다.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혹은 제3의 기관은 신고내용을 확인, 삭제지원, 경찰수사 의뢰 등을 의무화 한다. 6) 산업-정부-NPOs의 다분야 협업 방식으로 국제공조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플랫폼에 삭제 명령 가능하도록 해외 사업자에 국가간 협약, 국제조약 등 국제공조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7) 신고 및 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국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한다. 8)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한다. 9) 아동 성착취물(CSAM)을 인터넷 국제 아동 성착취(ICSE)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10) 아동들을 위한 국가차원 디지털 어젠다 개발 및 구현, 모니터링을 주도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단기·중기과제 (1~3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 위원회, 경찰청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추진단계 ⁸²⁾	추진체계 ⁸³⁾
4. 법 개선 및 개정안 1)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목적 대화 등)에서 성착취 목적에 대한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와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신분위장수사는 3개월의 제한이 있으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3)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에 16.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현행의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신고(혹은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의3<신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센터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단기·중기과제 (1~3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 위원회, 경찰청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82) 추진단계는 대부분 단기과제(1~2년), 중기과제(3~4년)로 나타났다.

83) 추진체계는 정책이나 사업 주관부처, 연계부처, 지자체를 명시하였음.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권현정 (2021).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의미와 향후과제. **여성가족부. 탁틴내일 청소년성보호법시행 21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모색**, 92-93.
- 김경희, 김수아, 김은경 (2019).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 김기현, 문호영, 황세영, 유민상, 김균희, 이용해 (2021).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 조사**. 세종,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 김여진 (2020).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정책세미나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자료집**, 53-58.
- 김정연 (2021). 온라인그루밍 처벌규정의 도입 의의와 과제. **형사정책** 33(2), 121-150.
- 김지선, 한민경, 조병철, 고가영 (2020).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지영, 황지태, 최수형, 이영섭 (2020). **청소년 대상 온라인그루밍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한균 (2017). 사이버성범죄·디지털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 9(3), 27-57.

- 김한균 (2020). 디지털 성범죄 차단과 처단-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의 형사정책-. **저스티스**, 178, 388.
- 김한균, 김지선, 윤정숙, 윤지영, 김대근, 장다혜 (2020). **디지털 성범죄 및 성착취 대응방향**. KIC 이슈페이퍼 특별호.
- 김혜진 (2020). 디지털 아동 성착취 대응현황과 해외 인공지능 범죄 예측 시스템 비교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8(7), 357-368.
- 박다은, 이관희 (2020).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CSEM)의 실태와 대응 방향에 관한 소고. **경찰학논총**, 15(3), 177-207.
- 박성혜 (2019).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 **2019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컨퍼런스 자료집**, 46-61.
- 박찬걸 (2017).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소년보호연구**, 30(1), 59-114.
- 서승희 (2020a).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에 대한 아청법 제11조의 한계와 개선방안.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6-10.
- 서승희 (2020b). 처벌 공백 및 입법 제안. **2020 한국 인권보고서**, 789-801.
- 송영지 (2021).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인자와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62, 391-427.
- 신원부, 이원희 (2020). 아동음란물 전담조직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2(4), 263-286.
- 심희기 (2002).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매매 방지. **형사정책**, 14(2), 75-103.
- Elena Martellozzo (2018).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아동 청소년을 노리는 위험한 손길**(탁틴내일 역). 서울: 한울림.
- 유홍식, 김찬원, 나재은 (2013).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 연구**(연구보고 2013-18). 서울: 여성가족부, 중앙대학교.
- 윤정숙 (2020).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가해자 심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95-95.

윤정숙, 박미숙 (2016). **성희롱의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연구총서 16-B-08).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정숙, 이태현, 김현숙 (2019).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연구 보고 19-BB-04).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수정, 김성현, 김리원, 서연주, 석희진, 이연제, 이은정, 홍정운 (2019).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체계분석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장다혜, 김수아 (2018).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방안**(연구 보고 18-AA-01).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수아, 권하늬, 정한나, 김수영 (2021).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52(1), 97-138.

전윤정 (2020). 디지털 아동·청소년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NARS 현안분석 제 161호**, 국회입법조사처.

정익중, 김현숙, 이현숙, 김시아, 석희진 (2020). **아동 디지털성범죄 전문영향평가**,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이화여자대학교.

차선자 (2005). 아동의 성매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미국의 사례를 참고로-. **아세아여성법학**, 8(11), 285-308.

최소윤, 한민경 (2020). '사이버 음란물'에서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까지 :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범죄학**, 14(2), 145-168.

최진웅 (2020).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관련 플랫폼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4.

탁틴내일 (2020). **2020년 청소년 대상 인터넷 이용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현대리서치연구소.

탁틴내일 (2021).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모색: 청소년성보호법시행 21주년기념국제심포지엄**. 여성가족부, 탁틴내일.

허경미 (2017).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의 범죄화 및 처벌법 쟁점연구. **한국경찰**

연구, 16(4), 361-388.

[외국 문헌]

Canada Legal Information Institution (2009). *R v Legare [2009] 3 SCR 551: Closing the Cyberspace Door on Luring*.

<https://canliiconnects.org/en/commentaries/36239>에서 2021년 8월 3일 인출.

ECPAT International (2012).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in the Fight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ttp://www.ecpat.org/wp-content/uploads/legacy/ecpat_journal_oct_2012.pdf에서 2021년 8월 3일 인출.

Independent Inquiry Child Sexual Abuse (2020). *The Internet Investigation Report*.

<https://www.iicsa.org.uk/key-documents/17805/view/internet-investigation-report-march-2020.pdf>에서 2021년 7월 12일 인출.

INHOPE (2018). *Annual Report 2018*.

https://www.inhope.org/media/pages/the-facts/download-our-whitepapers/3976156299-1591885517/2019.12.13._ih_annual_report_digital.pdf에서 2021년 8월 4일 인출.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ICMEC] (2017).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https://www.icmec.org/wp-content/uploads/2017/09/Online-Grooming-of-Children_FINAL_9-18-17.pdf에서 2021년 7월 17일, 8월 1일 인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020). *Guidelines for policy-*

makers on Child Online Protection.

https://www.itu.int/en/ITU-D/Cybersecurity/Documents/COP/Guidelines/2020-translations/S-GEN-COP.POL_MAKERS-2020-PDF-E.pdf에서 2021년 7월 12일 인출.

NSPCC (2018). *Taming the Wild West Web: How to regulate social networks and keep children safe from abuse.*

<https://www.nspcc.org.uk/globalassets/documents/news/taming-the-wild-west-web-regulate-social-networks.pdf>에서 2021년 7월 28일 인출.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Losito, B., Agrusti, G., & Friedman, T. (2018). *Becoming Citizens in a Changing World: IEA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2016 International Report.* Cham, Switzerland: Springer.

UNODC (2015). *Study of the Effects of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on the Abuse and Exploitation of Children.*

WeProtect Global Alliance (2019). *Global Threat Assessment: Working together to end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online.*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630f48de4b00a75476ecf0a/t/5deecb0fc4c5ef23016423cf/1575930642519/FINAL+-+Global+Threat+Assessment.pdf>에서 2021년 7월 27일 인출.

[법령 및 판례]

대법원 2017.6.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판례/\(2016도21389\)](https://www.law.go.kr/판례/(2016도21389))에서 2021년 7월 30일 인출.

대법원 2020.8.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CaseNote 사이트.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6965>에서 2021년 7월 17일 인출.

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CaseNote 사이트. <https://casenote.kr/대법원/2015도9436>에서 2021년 7월 29일 인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선고 2020노799 판결.

CaseNote 사이트.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0노799>에서 2021년 7월 17일 인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1.12. 일부개정, 법률 제17895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2021년 7월 21일 인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10.20. 일부개정, 법률 제17507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2021년 5월 9일, 7월 19일, 7월 21일, 7월 29일 인출.

아동복지법(2021.8.17. 타법개정, 법률 제18425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234781#0000>에서 2021년 5월 9일 인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1.12. 타법개정, 법률 제1789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2021년 5월 9일, 7월 9일, 7월 25일, 10월 8일 인출.

울산지방법원 2020.10.8. 선고 2020고합73 판결.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ulsa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2001&gubun=44&cbub_code=000411&searchWord=&pageIndex=1에서 2021년 7월 17일 인출.

전기통신사업법(2021.10.19. 일부개정, 법률 제18477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에

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6.8. 일부개정, 법률 제 18201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2021년 5월 9일 인출.

헌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4헌바45 판결.

CaseNote 사이트.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4헌바45>에서 2021년 7월 29일 인출.

헌법재판소 2019.12.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CaseNote 사이트.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8헌바46>에서 2021년 7월 29일 인출.

[인터넷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0.4.23.).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히”.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97974>에서 2021년 4월 2일 인출.

국제 인터넷 핫라인 협회(INHOPE) 홈페이지.

<https://www.inhope.org/EN/articles/who-we-are>에서 2021년 10월 8일 인출.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0.12.7.).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6/digital_sexual_01.jsp에서 2021년 7월 20일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1.5.12.).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 앱 사업자 수사 의뢰.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29>
7에서 2021년 5월 20일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543>에서 2021년 7월 5일 인출.

사이버 톱라인(CyberTipline) 홈페이지.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Overview.

<https://www.missingkids.org/gethelpnow/cybertipline> 에서 2021년 10월 8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4.15.).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19.3% 증가-‘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tSn=707729에서 2021년 11월 12일 인출.

연합인포맥스 (2020.10.8.). 불법 앱 사업자 5천584개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은 고작 5개.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1059>
에서 2021년 5월 20일 인출.

인터넷 감시 협회(IWF: Internet Watch Foundation) 홈페이지.

<https://www.iwf.org.uk/>에서 2021년 10월 8일 인출.

토플라인(Tipline) 홈페이지.

<https://www.cybertip.ca/app/en/>에서 2021년 10월 8일 인출.

[녹화 자료]

서울특별시, 탁틴내일 (2020.12.20.).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대응 국제 심포지움.

http://tv.seoul.go.kr/new/src/onair/vod_about.asp?cid=138692에서
2021년 1월 25일 인출.



부록

부록

1. 디지털 생활 실태조사지 (중·고등학생용)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조사학교ID (면접원이 작성합니다) <table border="1"> <tr>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6 2021 아동·청소년 디지털 생활실태조사

중·고등학생용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디지털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디지털 위험 요소에의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디지털 생활의 위험 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044-415-2232 임지연 선임연구위원 044-415-2226 홍정윤 연구사업운영원 044-415-2214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 담당자: 홍세정 과장 ※ 문의전화: 02-3014-1016
--	---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021 아동·청소년 디지털 생활실태조사〉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별, 학교 정보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별	본인의 성별을 응답해주세요.	☐ 남자 ☐ 여자



설문 응답방법 안내문

※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에게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그렇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잘 모르겠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내 부모님(함께 사는 보호자)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아래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내 부모님(함께 사는 보호자)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다	X	②	③	④	⑤

03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8-1 귀하의 학교에는 위클래스(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상담실)가 있나요?

① 있다

② 다

③ 잘 모르겠다

8-2번 문항으로

8-1-1 상담 선생님께서 고민 상담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 위클래스를 이용해 본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04 강조 지침

당구장 표시(※)로 강조된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2-2 귀하의 할 달 용돈은 얼마인가요?

※ 교통비, 교재비 같이 꼭 써야 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응답해주세요

2

만

0

천원



삶의 만족도

1-1 귀하는 요즘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귀하는 평소 생활에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일상생활

2-1 귀하의 집에 교과서, 만화책, 잡지를 제외한 책이 어느 정도 있나요?

- ① 거의 없다 (10 권 이내)
- ② 책꽂이 한 칸 분량 (11~25 권 정도)
- ③ 책장 하나 분량 (26~100 권 정도)
- ④ 책장 두 개 분량 (101~200 권 정도)
- ⑤ 책장 세 개 이상 (200 권 이상)
- ⑥ 잘 모르겠다

2-2 귀하의 한 달 용돈은 얼마인가요?

※ 교통비, 교재비 같이 꼭 써야 하는 비용을 빼고 응답해주세요
※ 용돈이 없는 경우 0원으로 응답해 주세요.

	만		천원
----------------------	---	----------------------	----

2-3 지난 1개월간, 부모님 혹은 함께 사는 보호자와 함께 식사하는 날이 일주일에 평균 며칠 정도 있었나요?

- ① 일주일에 1일 이하
- ② 일주일에 2~3일
- ③ 일주일에 4~5일
- ④ 일주일에 6일 이상
-
- ⑤ 잘 모르겠다

2-4 평소 부모님(함께 사는 보호자)과의 관계에 대한 귀하의 느낌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내 부모님(함께 사는 보호자)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누구와 있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하면 잘 들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 생활

3 학교와 친구 관계에 대한 귀하의 느낌과 가장 가까운 곳에 동그라미(O)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내가 걱정거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4) 학업 성적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게 걱정거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친구들과 매우 친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친구들은 랜덤채팅 앱(인톡, 즐톡, 채팅몬, 양캣 등)을 사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 안에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의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동그라미(O)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책(회장, 사장, 대표이사 등)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여자는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일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를 더 많이 취직시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맞벌이도 가능하지만 가정의 생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를 키우는 일의 일차적인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여자는 남자보다 더 감성적이고 정서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남자는 여자보다 강하므로 여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이성 관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여자가 성적인 부분을 밝히면 보기에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사회는 일상생활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이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⑤

온라인 생활 현황

5-1

귀하께서 PC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주로 이용하는 순으로 3가지를 선택해주세요.

※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없는 경우 1순위 네모 칸 안에 숫자 ⑩을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등) 혹은 블로그
 ② 개인방송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③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
 ④ 커뮤니티 사이트(루리웹, 오유, 디시, 다음카페, 네이버카페 등)
 ⑤ PC 게임 / 모바일 게임 (LOL, 배그, 로스트아크, 쿠키런, 브롤 등)
 ⑥ 메신저 (카톡, 라인, 텔레그램 등)
 ⑦ 직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⑧ 랜덤 채팅앱 (줄톡, 앙톡, 영톡, 채팅몬, 앙챗 등)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⑩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 없음

5-2 귀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는 익명 계정(부계정, 일탈계정)을 사용하고 있나요?

- ① 사용 중이다
 ② 사용한 적 있으나 지금은 아니다
 ③ 사용한 적 없다
 ④ 잘 모르겠다
- 5-3번 문항으로

5-2-1 익명계정은 언제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나요?

년 개월 전부터

5-2-2 귀하의 익명계정이 이용정지를 당한 적이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5-3 귀하는 오픈채팅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나요?

※ 오픈 채팅 :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특정 주제를 기준으로 모여 콘텐츠를 주고 받는 채팅방(예: 카카오톡 오픈 채팅)

- ① 참여 안함 → 6-1번 문항으로
 ② 일주일에 1번 이하
 ③ 일주일에 2번~6번
 ④ 거의 매일
 ⑤ 잘 모르겠다 → 6-1번 문항으로

5-3-1 오픈채팅에는 언제부터 참여하기 시작했나요?

년 개월 전부터

5-3-2 귀하는 오픈채팅에서 개인톡을 얼마나 자주 하나요?

- ① 개인톡 안함
 ② 일주일에 1번 이하
 ③ 일주일에 2번~6번
 ④ 거의 매일
 ⑤ 잘 모르겠다



온라인 활동 경험 I

6-1

최근 3개월간 온라인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해당 응답에 동그라미(O) 표시해 주세요.

	전혀 없었다	1번	2-4번	5번 이상	잘 모르겠다
1) 나 혹은 다른 사람의 외모나 몸매에 대해 불쾌한 말을 들은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동의 없이 내 몸 일부(다리, 가슴 등)가 촬영된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아하거나 싫은 메시지를 받은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야한 노출 사진이나 음란물 등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다른 사람 얼굴이 합성된 것을 본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성적인 농담이나 섹드립을 듣거나 본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사진이나 영상이 내가 원치 않는데 채팅방(단톡방 포함) 등에서 공유된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몸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자거나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6-2

최근 3개월 간 온라인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한 적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자주 했나요? 해당 응답에 동그라미(O) 표시해 주세요.

	전혀 없었다	1번	2-4번	5번 이상	잘 모르겠다
1) 다른 사람의 외모나 몸매를 평가하는 말을 한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성적인 농담이나 섹드립을 한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야한 노출 사진이나 음란물 등을 전송한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다른 사람 얼굴을 합성한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체(다리, 가슴 등)를 촬영한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남의 사진을 그 사람 동의 없이 채팅방(단톡방 포함) 등에서 공유한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온라인 활동 경험 II

7-1

메신저, SNS(익명계정 포함), 랜덤 채팅앱,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없이 기프티콘이나 문화상품권을 받아본 적 있나요? 받았다면 몇 명에게 받아봤나요?

- ① 받아본 적 없다
- ② 1~2명
- ③ 3~4명
- ④ 5~9명
- ⑤ 10~29명
- ⑥ 30명 이상
- ⑦ 잘 모르겠다

7-2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쪽지나 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응답에 동그라미(O) 표시해 주세요.

	받아본 적 없다	받았지만 무시하거나 거절했다	거절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1)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하자고 했다	①	②	③	④
2) 친해지고 싶다고 했다	①	②	③	④
3) 일상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	①	②	③	④
4)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다	①	②	③	④
5) 얼굴, 손, 발, 몸, 특정신체부위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다	①	②	③	④
6) 쉽게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했다	①	②	③	④
7)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	①	②	③	④
8) 직접 만나자고 했다	①	②	③	④
9) 영상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을 해주겠다고 했다	①	②	③	④
10) 원한다면 사진을 합성해주거나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①	②	③	④

7-3

메신저, SNS(익명계정 포함), 랜덤 채팅앱,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과 1대1로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 7-4번 문항으로

7-3-1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 ① 1~2명
- ② 3~4명
- ③ 5~9명
- ④ 10~29명
- ⑤ 30명 이상

7-3-2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나이는 어느 정도였나요? 여러 명인 경우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13세 이하
- ② 14세~16세
- ③ 17세~19세
- ④ 20세~24세
- ⑤ 25세~30세
- ⑥ 31세~35세
- ⑦ 36세 이상
- ⑧ 잘 모르겠다

7-3-3 대화를 나눈 사람(들)과 가장 길게 연락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① 1개월 미만
- ② 1개월~6개월
- ③ 7개월~12개월
- ④ 13개월~18개월
- ⑤ 19개월~24개월
- ⑥ 25개월 이상

7-3-4 대화를 나눈 사람(들)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나요? 알려준 적이 있는 정보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알려준 적 없다
- ② 이름
- ③ 나이
- ④ 이메일
- ⑤ 라인/카톡 아이디
- ⑥ 사는 지역
- ⑦ 핸드폰 번호
- ⑧ 집 전화번호
- ⑨ 다니는 학교
- ⑩ 집 주소
- ⑪ 생년월일
- ⑫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7-4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 8-1번 문항으로

7-4-1 그 사람(들)의 나이는 어느 정도였나요? 여러 명인 경우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13세 이하

② 14세-16세

③ 17세-19세

④ 20세-24세

⑤ 25세-30세

⑥ 31세-35세

⑦ 36세 이상

⑧ 잘 모르겠다

7-4-2 그 사람과 만나기 전에 그 만남에 대해 누구에게 말했나요?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친구

② 선배

③ 부모님

④ 선생님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⑥ 말한 적 없다

7-4-3 그 사람과 만나거나 이동한 곳은 어디였나요?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그 사람의 자동차

② 음식점, 카페

③ PC방

④ 근처에 있는 놀이터, 공원 등

⑤ 멀리 떨어진 놀이공원, 관광지 등

⑥ 룸카페, 만화카페, 노래방 등

⑦ 모텔이나 집

⑧ 그 외 장소(적어주세요 : _____)

7-4-4 그 사람과 만난 다음에 그 만남에 관해 누구에게 말했나요?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친구

② 선배

③ 부모님

④ 선생님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⑥ 말한 적 없다



학교 및 가정 생활

8-1 귀하의 학교에는 위클래스(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상담실)가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 8-2번 문항으로

8-1-1 상담 선생님께서 고민 상담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 위클래스를 이용해 본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8-2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 8-3번 문항으로

8-2-1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⑤ 잘 모르겠다

8-3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온라인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 8-4번 문항으로

8-3-1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⑤ 잘 모르겠다

8-4 집에서 가족과 온라인 성폭력(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 해본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8-5 귀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 ① 잘 알고 있다
- ② 약간 알고 있다
- ③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르다
- ④ 전혀 들어본 적 없다
- ⑤ 잘 모르겠다

9 귀하는 다음 기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1)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1388)	①	②	③
2) 온라인 상담센터(www.wee.go.kr, www.safe182.go.kr 등)	①	②	③
3) 여성긴급전화 1366	①	②	③
4)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①	②	③
5) 해바라기 센터	①	②	③

배경 정보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 1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중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인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⑨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⑨

부록2. 디지털 생활 실태조사 결과 상세

부표 1. 응답자 특성(학교급)

(단위: 명, %)

학교급	학년	성별				전체	
		남		여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초등학교	초5	265	52.0	245	48.0	510	100.0
	초6	230	51.0	221	49.0	451	100.0
중학교	중1	277	53.1	245	46.9	522	100.0
	중2	244	50.5	239	49.5	483	100.0
	중3	224	47.9	244	52.1	468	100.0
고등학교	고1	296	72.4	113	27.6	409	100.0
	고2	196	41.8	273	58.2	469	100.0
	고3	278	57.2	208	42.8	486	100.0

부표 2. 응답자 특성(권역)

(단위: 명, %)

권역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서울	150	15.6	210	14.3	260	19.1
경기/인천	315	32.8	471	32.0	351	25.7
강원/충청	155	16.1	248	16.8	200	14.7
경상	239	24.9	386	26.2	356	26.1
전라/제주	102	10.6	158	10.7	197	14.4
전체	961	100.0	1,473	100.0	1,364	100.0

부표 3. 응답자 특성(부모학력)

(단위: 명, %)

부모학력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부	고졸이하	103	10.9	229	15.7	319	23.7
	대졸이상	529	55.8	912	62.4	791	58.9
	부재	8	0.8	9	0.6	22	1.6
	잘 모름	308	32.5	311	21.3	212	15.8
전체		948	100.0	1,461	100.0	1,344	100.0
모	고졸이하	131	13.9	275	18.8	373	27.8
	대졸이상	520	55.2	900	61.7	763	56.9
	부재	8	0.8	12	0.8	9	0.7
	잘 모름	283	30.0	272	18.6	196	14.6
전체		942	100.0	1,459	100.0	1,341	100.0

부표 4. 사회인구학적 배경

구 분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부모자녀관계 총점	남	3.32	3.27	3.22	3.20	3.22	3.16	3.16	3.27	3.23
	여	3.38	3.41	3.27	3.32	3.34	3.31	3.39	3.40	3.36
	전체	3.35	3.34	3.25	3.26	3.27	3.20	3.31	3.33	3.29
교사관계	남	3.42	3.23	3.30	3.21	3.15	3.15	3.19	3.09	3.22
	여	3.44	3.16	3.16	3.10	3.16	2.96	3.09	3.14	3.16
	전체	3.43	3.20	3.23	3.16	3.16	3.10	3.13	3.11	3.19
스트레스	남	1.86	1.87	1.97	2.30	2.41	2.51	2.64	2.47	2.25
	여	1.90	2.19	2.31	2.50	2.44	2.54	2.74	2.82	2.44
	전체	1.88	2.03	2.14	2.40	2.42	2.52	2.71	2.63	2.34
친구관계	남	3.31	3.35	3.29	3.33	3.33	3.32	3.26	3.35	3.32
	여	3.38	3.30	3.23	3.34	3.40	3.35	3.43	3.42	3.36
	전체	3.35	3.33	3.26	3.33	3.36	3.32	3.37	3.38	3.34
성역할고정관념 점수	남	-	-	1.95	1.87	1.87	1.82	1.85	2.06	1.91
	여	-	-	1.60	1.53	1.49	1.43	1.44	1.42	1.49
	전체	-	-	1.78	1.70	1.69	1.71	1.57	1.76	1.70

부표 5. 디지털 성범죄 가해경험

구 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다른 사람의 외모나 몸매를 평가하는 말을 한 적 있다	남	1.19	1.26	1.26	1.47	1.33	1.34	1.41	1.37
	여	1.16	1.19	1.27	1.32	1.28	1.33	1.27	1.19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적 있다	남	1.14	1.17	1.16	1.17	1.16	1.14	1.12	1.06
	여	1.07	1.10	1.08	1.04	1.05	1.03	1.03	1.03
성적인 농담이나 섹드립을 한 적 있다	남	1.06	1.04	1.19	1.65	1.49	1.48	1.47	1.47
	여	1.01	1.04	1.14	1.27	1.15	1.07	1.13	1.06
야한 노출 사진이나 음란물 등을 전송한 적 있다	남	1.02	1.00	1.02	1.06	1.03	1.05	1.11	1.11
	여	1.01	1.00	1.01	1.03	1.02	1.02	1.04	1.02
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다른 사람 얼굴을 합성한 적 있다	남	1.01	1.02	1.01	1.04	1.00	1.01	1.04	1.02
	여	1.00	1.01	1.00	1.00	1.00	1.03	1.03	1.00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체(다리, 가슴 등)를 촬영한 적 있다	남	1.02	1.00	1.02	1.04	1.00	1.02	1.08	1.06
	여	1.00	1.00	1.00	1.00	1.01	1.04	1.05	1.00
남의 사진을 그 사람 동의 없이 채팅방(단톡방 포함) 등에서 공유한 적 있다	남	1.03	1.07	1.07	1.13	1.09	1.09	1.15	1.12
	여	1.05	1.07	1.05	1.06	1.05	1.06	1.05	1.03
전체	남	1.07	1.08	1.10	1.22	1.16	1.16	1.20	1.17
	여	1.04	1.06	1.08	1.10	1.08	1.08	1.09	1.05
가해경험점수	남	7.38	7.40	7.63	8.38	7.94	8.00	8.30	8.10
	여	7.24	7.32	7.44	7.60	7.48	7.54	7.54	7.26

부표 6. 디지털 성범죄 가해경험 긍정 비율

구 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다른 사람의 외모나 몸매를 평가하는 말을 한 적 있다	남	13.0	16.1	14.9	24.4	17.5	18.6	21.4	20.3
	여	11.8	14.1	18.0	16.7	16.4	17.9	15.6	12.5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적 있다	남	8.5	12.2	8.9	10.7	9.0	7.1	7.3	2.9
	여	4.9	6.8	6.6	2.9	2.0	2.7	2.6	1.4
성적인 농담이나 섹드립을 한 적 있다	남	4.2	3.0	10.4	28.1	20.6	23.0	20.8	22.1
	여	1.2	2.3	9.4	12.1	7.0	3.6	8.5	2.9
야한 노출 사진이나 음란물 등을 전송한 적 있다	남	1.5	0.0	1.1	3.3	1.8	2.4	5.7	4.7
	여	0.8	0.0	1.2	2.5	0.8	0.9	2.6	0.5
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다른 사람 얼굴을 합성한 적 있다	남	0.8	0.9	0.4	1.7	0.0	0.3	3.1	1.4
	여	0.0	0.5	0.0	0.0	0.4	0.9	2.2	0.0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체(다리, 가슴 등) 를 촬영한 적 있다	남	1.1	0.0	1.1	1.7	0.4	1.0	4.7	2.5
	여	0.4	0.0	0.0	0.0	0.4	1.8	3.0	0.0
남의 사진을 그 사람 동의 없이 채팅방(단톡방 포함) 등에서 공유한 적 있다	남	1.5	5.2	5.2	6.6	4.5	4.4	7.3	6.5
	여	2.9	5.0	4.5	4.2	2.9	3.6	3.3	1.9
전체	남	4.4	5.3	6.0	10.9	7.7	8.1	10.0	8.6
	여	3.1	4.1	5.7	5.5	4.3	4.5	5.4	2.7

부표 7. 디지털 성범죄 피해경험

구 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나 혹은 다른 사람의 외모나 몸매에 대해 불쾌한 말을 들은 적 있다	남	1.40	1.53	1.39	1.51	1.42	1.47	1.55	1.41
	여	1.49	1.38	1.67	1.59	1.48	1.51	1.64	1.49
내 동의 없이 내 몸 일부(다리, 가슴 등)가 촬영된 적 있다	남	1.01	1.03	1.04	1.07	1.01	1.04	1.10	1.08
	여	1.01	1.02	1.01	1.00	1.00	1.04	1.04	1.01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야하거나 싫은 메시지를 받은 적 있다	남	1.07	1.08	1.09	1.12	1.10	1.09	1.09	1.04
	여	1.05	1.07	1.23	1.17	1.16	1.15	1.19	1.08
야한 노출 사진이나 음란물 등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	남	1.02	1.02	1.11	1.15	1.09	1.10	1.16	1.17
	여	1.03	1.05	1.15	1.12	1.12	1.15	1.21	1.05
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다른 사람 얼굴이 합성된 것을 본 적 있다	남	1.09	1.06	1.13	1.29	1.14	1.22	1.24	1.19
	여	1.04	1.09	1.13	1.11	1.12	1.11	1.26	1.14
성적인 농담이나 섹스랩을 듣거나 본 적 있다	남	1.18	1.31	1.89	2.35	2.17	2.26	2.15	1.89
	여	1.13	1.29	1.85	1.93	1.84	1.66	1.93	1.76
내 사진이나 영상이 내가 원치 않는데 채팅방(단톡방 포함)등에서 공유된 적 있다	남	1.07	1.19	1.17	1.28	1.13	1.11	1.14	1.11
	여	1.12	1.21	1.19	1.17	1.16	1.09	1.14	1.07
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 있다	남	1.03	1.07	1.08	1.07	1.01	1.02	1.06	1.04
	여	1.03	1.06	1.03	1.05	1.04	1.03	1.05	1.01
내 몸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자거나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적 있다	남	1.01	1.02	1.02	1.06	1.01	1.01	1.05	1.04
	여	1.02	1.05	1.04	1.04	1.06	1.07	1.07	1.01
전체	남	1.10	1.14	1.21	1.32	1.23	1.26	1.28	1.22
	여	1.10	1.14	1.26	1.24	1.22	1.20	1.28	1.18
피해경험점수	남	9.70	10.03	10.74	11.48	10.86	10.92	11.26	10.66
	여	9.75	10.06	11.01	10.95	10.81	10.64	11.29	10.44

부표 8. 디지털 성범죄 피해경험 긍정 비율

구 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나 혹은 다른 사람의 외모나 몸매에 대해 불쾌한 말을 들은 적 있다	남	20.1	26.1	20.1	23.1	21.1	22.6	23.8	18.5
	여	24.9	21.8	33.2	26.8	25.2	28.3	33.5	25.1
내 동의 없이 내 몸 일부(다리, 가슴 등)가 촬영된 적 있다	남	0.8	2.2	2.2	3.7	0.9	2.7	7.3	4.7
	여	1.2	1.8	0.8	0.4	0.4	2.7	3.3	1.0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야하거나 싫은 메시지를 받은 적 있다	남	4.6	5.2	4.5	6.6	6.7	5.4	5.7	1.8
	여	3.7	4.1	12.7	11.7	10.2	11.5	13.7	5.3
야한 노출 사진이나 음란물 등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	남	1.1	1.7	5.9	9.5	5.8	6.4	9.8	8.4
	여	2.0	4.1	8.6	7.9	7.4	10.6	14.3	3.4
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다른 사람 얼굴이 합성된 것을 본 적 있다	남	5.3	4.3	6.7	13.6	6.7	12.2	14.5	11.2
	여	3.7	5.5	7.8	7.1	8.6	6.2	15.0	9.1
성적인 농담이나 섹드립을 듣거나 본 적 있다	남	11.4	17.8	42.0	52.1	49.3	51.4	45.6	38.2
	여	9.0	18.2	41.4	42.3	40.6	36.3	44.0	35.6
내 사진이나 영상이 내가 원치 않는데 채팅방(단톡방 포함)등에서 공유된 적 있다	남	4.6	11.7	11.2	15.3	9.4	8.1	7.3	6.9
	여	8.6	12.3	15.2	11.3	8.6	6.2	8.1	4.3
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 있다	남	2.7	5.2	4.5	3.7	1.3	1.0	3.6	2.2
	여	2.0	4.5	2.0	3.8	2.0	1.8	3.3	0.5
내 몸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자거나 보내달라고 요구 받은 적 있다	남	0.8	0.9	1.9	2.5	0.4	0.3	3.6	1.5
	여	0.4	3.6	3.7	2.5	2.9	3.5	5.5	1.4
전체	남	5.7	8.4	11.0	14.5	11.3	12.2	13.5	10.4
	여	6.2	8.4	13.9	12.7	11.8	11.9	15.6	9.5

부표 9.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1. 2. 3위)

구 분	개인방송	SNS	PC 게임 /모바일 게임	매신저	포털사이 트 혹은 블로그	랜덤 채팅앱	커뮤니티 사이트	직거래 사이트	기타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 없음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7.7	25.0	20.6	13.4	8.5	1.2	0.7	0.1	1.8	1.1
성별	남	30.3	12.7	34.6	9.2	8.2	1.0	0.7	0.2	1.8
	여	24.9	38.2	5.6	17.9	8.7	1.3	0.8	0.1	0.8
학교급	초등학교	26.7	8.7	29.7	12.6	12.8	3.4	0.5	0.2	3.1
	중학교	26.2	26.0	21.7	15.0	8.3	0.5	0.5	0.1	1.1
	고등학교	29.8	34.8	13.4	12.4	5.8	0.3	1.1	0.2	1.7
초등학교	남	23.3	2.8	47.1	6.2	11.9	2.6	0.7	0.4	2.8
	여	30.2	14.8	11.4	19.4	13.6	4.4	0.2	0.0	3.4
성별 x 중학교	남	28.8	12.0	38.7	9.5	7.6	0.5	0.6	0.0	1.1
	여	23.5	40.7	3.8	20.8	8.9	0.5	0.4	0.1	1.1
고등학교	남	36.3	19.7	22.4	10.9	6.4	0.5	0.7	0.2	1.9
	여	22.6	51.4	3.4	13.9	5.2	0.1	1.5	0.2	1.4

부표 10. 친구나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는 익명 계정(부계정, 일탈계정) 사용 여부

(단위: %, 년)

구 분		익명계정(부계정, 일탈계정) 사용 여부					사용한 경우 평균사용 기간	
		사용 중	사용한 적 있음	사용한 적 없음	잘 모르겠음	전체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초등학교)		10.4	-	78.4	11.2	100.0	1.58	
전체(중·고등학교)		16.2	4.6	69.4	9.8	100.0	1.96	
성별	남	11.5	4.0	74.2	10.3	100.0	2.04	
	여	21.7	5.3	63.7	9.3	100.0	1.82	
학교급	초등학교	10.5	-	78.2	11.3	100.0	1.57	
	중학교	16.3	5.3	68.0	10.4	100.0	1.60	
	고등학교	16.3	3.8	70.7	9.2	100.0	2.32	
성별 × 학교급	초등 학교	남	10.6	-	77.5	11.9	100.0	1.86
		여	10.5	-	78.8	10.7	100.0	1.25
	중 학교	남	11.9	5.1	72.4	10.6	100.0	1.73
		여	20.6	5.6	63.5	10.3	100.0	1.52
	고등 학교	남	11.1	3.0	75.8	10.0	100.0	2.49
		여	23.0	4.9	64.0	8.1	100.0	2.24

부표 11. 친구나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는 익명 계정(부계정, 일탈계정) 사용 여부(부모 학력)

(단위: %, 년)

구 분			익명계정(부계정, 일탈계정) 사용 여부					사용한 경우 평균사용 기간
			사용 중	사용한 적 있음	사용한 적 없음	잘 모르겠음	전체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초 · 등 학 교	전체		10.4	-	78.4	11.2	100.0	1.58
	부	부모님 안 계심	12.5	-	87.5	0.0	100.0	0.08
		고졸이하	15.8	-	72.6	11.6	100.0	2.04
		대졸이상	10.8	-	80.8	8.4	100.0	1.42
	모	부모님 안 계심	14.3	-	85.7	0.0	100.0	2.25
		고졸이하	13.7	-	74.2	12.1	100.0	1.91
		대졸이상	11.8	-	79.4	8.8	100.0	1.43
중 · 고 등 학 교	전체		16.2	4.6	69.4	9.8	100.0	1.96
	부	부모님 안 계심	17.9	7.1	71.4	3.6	100.0	2.97
		고졸이하	18.2	5.5	67.8	8.5	100.0	2.11
		대졸이상	15.7	4.7	71.1	8.4	100.0	1.93
	모	부모님 안 계심	25.0	12.5	56.3	6.3	100.0	3.32
		고졸이하	14.9	5.6	71.5	8.0	100.0	1.99
		대졸이상	17.4	4.5	69.1	9.0	100.0	1.94

부표 12. 친구나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는 익명 계정(부계정, 일탈계정) 사용 여부(부모 학력)

(단위: %, 년)

구 분		익명계정(부계정, 일탈계정) 사용 여부					사용한 경우 평균사용 기간	
		사용 중	사용한 적 있음	사용한 적 없음	잘 모르겠음	전체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초 등 학 교	전체		10.4	-	78.4	11.2	100.0	1.12
	부	부모님 안 계심	12.5	-	87.5	0.0	100.0	0.08
		고졸이하	15.8	-	72.6	11.6	100.0	1.21
		대졸이상	10.8	-	80.8	8.4	100.0	1.10
		부모님 안 계심	14.3	-	85.7	0.0	100.0	0.99
	모	고졸이하	13.7	-	74.2	12.1	100.0	1.23
		대졸이상	11.8	-	79.4	8.8	100.0	1.16
중 · 고 등 학 교	전체		16.2	4.6	69.4	9.8	100.0	1.74
	부	부모님 안 계심	17.9	7.1	71.4	3.6	100.0	2.39
		고졸이하	18.2	5.5	67.8	8.5	100.0	2.04
		대졸이상	15.7	4.7	71.1	8.4	100.0	1.60
		부모님 안 계심	25.0	12.5	56.3	6.3	100.0	2.65
	모	고졸이하	14.9	5.6	71.5	8.0	100.0	1.70
		대졸이상	17.4	4.5	69.1	9.0	100.0	1.72

부표 13. 심리적 적응 수준

학년		심리적 적응			
		생활만족도		행복도	
		남	여	남	여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초등학교	5학년	7.90(2.08)	7.21(2.32)	7.84(2.19)	7.41(2.26)
	6학년	7.56(2.12)	7.05(2.32)	7.56(2.12)	7.00(2.27)
	소계	7.72(2.11)	7.13(2.32)	7.69(2.16)	7.20(2.27)
중학교	1학년	7.34(2.38)	6.85(2.51)	7.38(2.26)	6.77(2.48)
	2학년	7.21(2.28)	6.44(2.31)	7.17(2.23)	6.73(2.21)
	3학년	6.91(2.27)	6.68(2.24)	6.91(2.19)	6.81(2.16)
	소계	7.16(2.32)	6.66(2.37)	7.16(2.23)	6.77(2.29)
고등학교	1학년	6.58(2.23)	6.50(2.13)	6.77(2.11)	6.60(2.11)
	2학년	6.38(2.13)	6.11(2.33)	6.51(2.16)	6.22(2.16)
	3학년	6.76(2.50)	5.98(2.36)	6.77(2.43)	6.19(2.24)
	소계	6.60(2.31)	6.14(2.31)	6.71(2.24)	6.28(2.18)
전체		7.09(2.30)	6.58(2.36)	7.12(2.25)	6.69(2.27)

부표 14. 친구나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는 익명 계정(부계정, 일탈계정) 사용 여부(부모 학력)

(단위: %, 년)

구 분		익명계정(부계정, 일탈계정) 사용 여부					사용한 경우 평균사용 기간
		사용 중	사용한 적 있음	사용한 적 없음	잘 모르겠음	전체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초 등 학 교	전체	10.4	-	78.4	11.2	100.0	1.58
	부	부모님 안 계심	12.5	-	87.5	0.0	0.08
		고졸이하	15.8	-	72.6	11.6	2.04
		대졸이상	10.8	-	80.8	8.4	1.42
	모	부모님 안 계심	14.3	-	85.7	0.0	2.25
		고졸이하	13.7	-	74.2	12.1	1.91
		대졸이상	11.8	-	79.4	8.8	1.43
중 · 고 등 학 교	전체	16.2	4.6	69.4	9.8	100.0	1.96
	부	부모님 안 계심	17.9	7.1	71.4	3.6	2.97
		고졸이하	18.2	5.5	67.8	8.5	2.11
		대졸이상	15.7	4.7	71.1	8.4	1.93
	모	부모님 안 계심	25.0	12.5	56.3	6.3	3.32
		고졸이하	14.9	5.6	71.5	8.0	1.99
		대졸이상	17.4	4.5	69.1	9.0	1.94

부표 15. 익명계정 및 오픈채팅 경험 비율

구 분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익명계정 사용 경험	남	8.8	12.6	11.9	13.4	10.5	10.7	10.8	11.9	11.5
	여	8.3	12.8	19.3	19.7	22.5	24.1	22.3	23.2	21.7
	전체	8.5	12.7	15.5	16.5	16.8	14.3	17.5	16.8	16.3
익명계정 정지 경험	남	-	-	12.2	28.6	9.7	17.5	19.0	13.5	16.6
	여	-	-	3.6	13.5	3.3	0.0	11.6	3.7	6.5
	전체	-	-	7.2	19.5	5.4	10.0	13.3	7.7	10.4
오픈채팅 참여 경험	남	15.6	37.4	29.3	26.1	15.2	19.4	9.6	8.5	19.9
	여	17.1	28.8	32.4	18.9	18.8	15.4	14.2	6.5	19.3
	전체	16.3	33.0	30.8	22.5	17.1	18.3	12.3	7.7	19.6
오픈채팅 개인톡 경험	남	76.5	81.9	62.3	72.5	65.5	60.8	52.9	85.7	70.5
	여	74.3	63.8	61.5	63.2	40.5	68.8	47.1	58.3	59.3
	전체	75.4	73.8	61.9	68.5	50.7	62.7	49.0	75.8	65.3

부표 16. 익명계정 및 오픈채팅 사용 기간 및 시작 연령

(단위: 년, 연령)

구 분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익명계정 사용 기간 (년)	남	1.50	2.09	1.87	1.64	1.64	2.61	2.76	2.17	2.04
	여	1.37	1.18	1.34	1.61	1.64	1.66	2.44	2.27	1.82
	전체	1.44	1.65	1.54	1.62	1.64	2.15	2.50	2.23	1.91
익명계정 시작 연령	남	10.50	10.91	12.13	13.36	14.36	14.39	15.24	16.83	13.55
	여	10.63	11.82	12.66	13.39	14.36	15.34	15.56	16.73	14.36
	전체	10.56	11.35	12.46	13.38	14.36	14.85	15.50	16.77	14.06
오픈채팅 사용 기간 (년)	남	0.99	1.33	1.39	1.64	1.71	2.15	1.85	2.93	1.65
	여	0.85	1.02	1.25	2.04	1.31	2.20	1.99	2.65	1.49
	전체	0.92	1.18	1.31	1.79	1.47	2.17	1.96	2.79	1.57
오픈채팅 시작 연령	남	11.01	11.67	12.61	13.36	14.29	14.85	16.15	16.07	13.29
	여	11.15	11.98	12.75	12.96	14.69	14.80	16.01	16.35	13.51
	전체	11.08	11.82	12.69	13.21	14.53	14.83	16.04	16.21	13.39

부표 17. 오픈채팅에서 개인톡 사용 빈도

구 분		오픈채팅에서 개인톡 참여 빈도						
		거의 매일	일주일에 2번~6번	일주일에 1번 이하	개인톡 안함	잘 모르겠음	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19.3	25.1	20.8	29.9	4.9	100.0	
성별	남	22.8	26.4	21.8	25.2	3.8	100.0	
	여	15.5	23.8	19.7	35.0	6.0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1.6	31.9	20.6	22.3	3.6	100.0	
	중학교	18.1	23.8	20.7	31.4	6.1	100.0	
	고등학교	18.3	18.4	21.4	37.6	4.3	100.0	
성별 × 학교급	초등 학교	남	24.5	32.8	23.5	15.8	3.5	100.0
		여	18.4	30.9	17.3	29.7	3.7	100.0
	중 학교	남	22.6	25.2	19.5	27.6	5.2	100.0
		여	13.7	22.5	21.8	35.0	6.9	100.0
	고등 학교	남	20.9	19.8	23.7	33.7	1.9	100.0
		여	15.3	16.9	18.7	42.1	7.1	100.0

부표 18.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비율

구 분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나 혹은 다른 사람의 외모나 몸매에 대해 불쾌한 말을 들 은 적 있다	남	20.1	26.1	20.1	23.1	21.1	22.6	23.8	18.5	21.8
	여	24.9	21.8	33.2	26.8	25.2	28.3	33.5	25.1	27.5
	전체	22.4	24.0	26.4	24.9	23.2	24.2	29.5	21.3	24.5
내 동의 없이 내 몸 일부 (다리, 가슴 등)가 촬영된 적 있다	남	0.8	2.2	2.2	3.7	0.9	2.7	7.3	4.7	3.0
	여	1.2	1.8	0.8	0.4	0.4	2.7	3.3	1.0	1.4
	전체	1.0	2.0	1.6	2.1	0.6	2.7	4.9	3.1	2.2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야하거나 싫은 메시지를 받은 적 있다	남	4.6	5.2	4.5	6.6	6.7	5.4	5.7	1.8	5.0
	여	3.7	4.1	12.7	11.7	10.2	11.5	13.7	5.3	9.1
	전체	4.1	4.7	8.4	9.1	8.5	7.1	10.3	3.3	6.9
야한 노출 사진이나 음란물 등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	남	1.1	1.7	5.9	9.5	5.8	6.4	9.8	8.4	6.0
	여	2.0	4.1	8.6	7.9	7.4	10.6	14.3	3.4	7.3
	전체	1.6	2.9	7.2	8.7	6.6	7.6	12.4	6.2	6.6
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다른 사람 얼굴이 합성된 것을 본 적 있다	남	5.3	4.3	6.7	13.6	6.7	12.2	14.5	11.2	9.3
	여	3.7	5.5	7.8	7.1	8.6	6.2	15.0	9.1	8.1
	전체	4.5	4.9	7.2	10.4	7.7	10.5	14.8	10.3	8.7
성적인 농담이나 섹드립을 듣거나 본 적 있다	남	11.4	17.8	42.0	52.1	49.3	51.4	45.6	38.2	38.4
	여	9.0	18.2	41.4	42.3	40.6	36.3	44.0	35.6	33.5
	전체	10.2	18.0	41.7	47.2	44.8	47.2	44.6	37.1	36.1
내 사진이나 영상이 내가 원 치 않는데 채팅방(단톡방 포 함)등에서 공유된 적 있다	남	4.6	11.7	11.2	15.3	9.4	8.1	7.3	6.9	9.2
	여	8.6	12.3	15.2	11.3	8.6	6.2	8.1	4.3	9.6
	전체	6.5	12.0	13.1	13.3	9.0	7.6	7.7	5.8	9.4
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곳 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 있다	남	2.7	5.2	4.5	3.7	1.3	1.0	3.6	2.2	3.0
	여	2.0	4.5	2.0	3.8	2.0	1.8	3.3	0.5	2.6
	전체	2.4	4.9	3.3	3.7	1.7	1.2	3.4	1.4	2.8
내 몸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 하자거나 보내달라고 요구 받은 적 있다	남	0.8	0.9	1.9	2.5	0.4	0.3	3.6	1.5	1.4
	여	0.4	3.6	3.7	2.5	2.9	3.5	5.5	1.4	3.0
	전체	0.6	2.2	2.7	2.5	1.7	1.2	4.7	1.4	2.1

부표 19.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비율

구 분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다른 사람의 외모나 몸매 를 평가하는 말을 한 적 있다	남	13.0	16.1	14.9	24.4	17.5	18.6	21.4	20.3	18.1	
	여	11.8	14.1	18.0	16.7	16.4	17.9	15.6	12.5	15.3	
	전체	12.4	15.1	16.4	20.6	16.9	18.4	18.0	16.9	16.8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적 있다	남	8.5	12.2	8.9	10.7	9.0	7.1	7.3	2.9	8.2	
	여	4.9	6.8	6.6	2.9	2.0	2.7	2.6	1.4	3.8	
	전체	6.7	9.6	7.8	6.9	5.4	5.9	4.5	2.3	6.1	
성적인 농담이나 섹드립을 한 적 있다	남	4.2	3.0	10.4	28.1	20.6	23.0	20.8	22.1	16.5	
	여	1.2	2.3	9.4	12.1	7.0	3.6	8.5	2.9	6.2	
	전체	2.8	2.7	9.9	20.2	13.5	17.6	13.6	13.8	11.6	
야한 노출 사진이나 음란 물 등을 전송한 적 있다	남	1.5	0.0	1.1	3.3	1.8	2.4	5.7	4.7	2.5	
	여	0.8	0.0	1.2	2.5	0.8	0.9	2.6	0.5	1.2	
	전체	1.2	0.0	1.2	2.9	1.3	2.0	3.9	2.9	1.9	
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다 른 사람 얼굴을 합성한 적 있다	남	0.8	0.9	0.4	1.7	0.0	0.3	3.1	1.4	1.0	
	여	0.0	0.5	0.0	0.0	0.4	0.9	2.2	0.0	0.5	
	전체	0.4	0.7	0.2	0.8	0.2	0.5	2.6	0.8	0.8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체(다리, 가슴 등)를 촬영한 적 있다	남	1.1	0.0	1.1	1.7	0.4	1.0	4.7	2.5	1.5	
	여	0.4	0.0	0.0	0.0	0.4	1.8	3.0	0.0	0.7	
	전체	0.8	0.0	0.6	0.8	0.4	1.2	3.7	1.4	1.1	
남의 사진을 그 사람 동의 없이 채팅방(단톡방 포함) 등에서 공유한 적 있다	남	1.5	5.2	5.2	6.6	4.5	4.4	7.3	6.5	5.1	
	여	2.9	5.0	4.5	4.2	2.9	3.6	3.3	1.9	3.5	
	전체	2.2	5.1	4.9	5.4	3.6	4.2	5.0	4.5	4.3	

부표 20.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선물을 받은 경험

구 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메신저, SNS, 랜덤 채팅앱,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기프트콘이나 문화상품권을 받아본 경험	남	1~2명	4.2	3.1	7.6	3.7	1.3	5.8	3.1	5.1	
		3명 이상	1.1	1.8	4.0	4.9	2.2	3.7	4.1	2.5	
	여	1~2명	4.1	4.1	9.8	5.0	4.5	7.1	5.1	4.3	
		3명 이상	0.8	2.7	4.5	5.9	4.5	5.3	3.3	1.9	

부표 21.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쪽지나 대화를 받은 경험

구 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하지고 했다	남	거절	4.6	9.7	11.6	14.8	11.7	12.3	7.7	5.8
		허용	3.8	7.9	9.8	8.6	5.9	9.2	6.1	6.6
	여	거절	9.1	13.8	17.6	19.1	19.4	14.2	22.0	15.9
		허용	6.2	5.0	10.2	11.9	7.0	7.1	6.0	4.3
	전 체	거절	6.7	11.7	14.4	16.9	15.7	12.8	15.9	10.2
		허용	5.0	6.5	10.0	10.2	6.5	8.6	6.0	5.6
친해지고 싶다고 했다	남	거절	6.9	11.0	14.2	17.7	14.9	14.7	10.2	8.8
		허용	6.5	11.0	14.6	10.3	7.7	12.3	5.1	7.7
	여	거절	13.6	18.6	23.4	19.5	28.8	27.4	28.6	25.6
		허용	8.6	10.0	25.0	25.0	16.5	12.4	10.8	7.2
	전 체	거절	10.1	14.8	18.5	18.6	22.2	18.2	20.9	16.0
		허용	7.5	10.5	19.5	17.5	12.3	12.3	8.4	7.5
일상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	남	거절	1.1	4.4	4.7	5.4	5.9	4.8	1.5	1.8
		허용	0.0	0.4	0.4	1.7	0.0	0.7	2.0	2.2
	여	거절	3.7	4.6	8.6	8.5	9.5	8.0	7.8	3.4
		허용	0.4	0.5	0.4	0.4	0.0	0.9	2.2	0.5
	전 체	거절	2.4	4.5	6.5	6.9	7.7	5.7	5.2	2.5
		허용	0.2	0.4	0.4	1.0	0.0	0.7	2.2	1.5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다	남	거절	4.2	5.8	5.4	4.1	4.1	3.1	3.1	1.5
		허용	1.9	0.9	2.2	1.7	0.5	0.7	2.0	1.8
	여	거절	2.9	8.7	13.6	14.0	9.1	14.2	8.6	4.3
		허용	1.6	0.5	0.4	1.3	0.0	0.0	0.7	0.0
	전 체	거절	3.6	7.2	9.2	9.0	6.7	6.2	6.2	2.7
		허용	1.8	0.7	1.3	1.5	0.2	0.5	1.3	1.0
얼굴, 손, 발, 몸, 특정신체부위 사진 이나 영상을 보내 달라고 했다	남	거절	1.1	2.6	3.6	3.3	3.2	2.4	3.6	2.9
		허용	0.0	0.0	0.7	0.8	0.5	0.0	1.0	1.1
	여	거절	1.6	5.9	6.6	8.1	4.5	10.6	7.4	3.4
		허용	0.4	0.0	0.4	0.4	0.0	0.0	0.7	0.5
	전 체	거절	1.4	4.3	5.0	5.6	3.9	4.7	5.8	3.1
		허용	0.2	0.0	0.6	0.6	0.2	0.0	0.9	0.8

구 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쉽게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했다	남	거절	1.5	2.6	5.4	5.3	5.4	7.2	5.1	4.7	
		허용	0.0	0.4	0.4	1.2	0.0	0.0	1.5	1.5	
	여	거절	2.5	4.6	4.9	10.6	6.6	10.6	10.0	7.2	
		허용	0.4	0.0	0.0	0.0	0.0	0.0	1.1	0.0	
	전 체	거절	2.0	3.6	5.2	7.9	6.0	8.1	8.0	5.8	
		허용	0.2	0.2	0.2	0.6	0.0	0.0	1.3	0.8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	남	거절	-	-	2.2	1.7	1.4	1.4	2.0	1.1	
		허용	-	-	0.4	1.2	0.0	0.0	2.6	1.5	
	여	거절	-	-	1.2	3.4	2.5	2.7	3.3	1.0	
		허용	-	-	0.0	0.0	0.0	0.0	0.4	0.0	
	전 체	거절	-	-	1.7	2.5	1.9	1.7	2.8	1.0	
		허용	-	-	0.2	0.6	0.0	0.0	1.3	0.8	
직접 만나자고 했다	남	거절	-	-	4.0	4.5	4.1	3.4	4.1	2.6	
		허용	-	-	1.1	1.2	0.5	2.0	1.5	2.6	
	여	거절	-	-	9.0	8.9	7.1	7.1	6.3	7.2	
		허용	-	-	1.2	1.3	1.2	1.8	1.5	0.0	
	전 체	거절	-	-	6.3	6.7	5.6	4.4	5.4	4.6	
		허용	-	-	1.2	1.3	0.9	2.0	1.5	1.5	
영상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을 해주겠다고 했다	남	거절	-	-	3.6	4.9	3.6	2.4	4.1	2.6	
		허용	-	-	0.4	1.2	0.0	0.0	2.0	1.5	
	여	거절	-	-	2.5	8.1	3.7	4.4	3.0	3.4	
		허용	-	-	0.0	0.0	0.0	0.0	1.1	0.0	
	전 체	거절	-	-	3.1	6.5	3.7	3.0	3.4	2.9	
		허용	-	-	0.2	0.6	0.0	0.0	1.5	0.8	
원한다면 사진을 합성해주거나 영상 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남	거절	-	-	2.5	2.5	1.4	1.4	2.0	0.4	
		허용	-	-	0.7	1.2	0.5	0.0	1.5	1.5	
	여	거절	-	-	0.8	3.8	1.2	0.9	3.0	1.4	
		허용	-	-	0.0	0.0	0.0	0.0	0.4	0.0	
	전 체	거절	-	-	1.7	3.1	1.3	1.2	2.6	0.8	
		허용	-	-	0.4	0.6	0.2	0.0	0.9	0.8	

부표 22.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쪽지나 대화를 받은 경험

구 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하지도 했다	거절	6.7	11.7	14.4	16.9	15.7	12.8	15.9	10.2
	허용	5.0	6.5	10.0	10.2	6.5	8.6	6.0	5.6
친해지고 싶다고 했다	거절	10.1	14.8	18.5	18.6	22.2	18.2	20.9	16.0
	허용	7.5	10.5	19.5	17.5	12.3	12.3	8.4	7.5
일상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	거절	2.4	4.5	6.5	6.9	7.7	5.7	5.2	2.5
	허용	0.2	0.4	0.4	1.0	0.0	0.7	2.2	1.5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다	거절	3.6	7.2	9.2	9.0	6.7	6.2	6.2	2.7
	허용	1.8	0.7	1.3	1.5	0.2	0.5	1.3	1.0
얼굴, 손, 발, 몸, 특정신체부위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다	거절	1.4	4.3	5.0	5.6	3.9	4.7	5.8	3.1
	허용	0.2	0.0	0.6	0.6	0.2	0.0	0.9	0.8
쉽게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했다	거절	2.0	3.6	5.2	7.9	6.0	8.1	8.0	5.8
	허용	0.2	0.2	0.2	0.6	0.0	0.0	1.3	0.8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	거절	-	-	1.7	2.5	1.9	1.7	2.8	1.0
	허용	-	-	0.2	0.6	0.0	0.0	1.3	0.8
직접 만나자고 했다	거절	-	-	6.3	6.7	5.6	4.4	5.4	4.6
	허용	-	-	1.2	1.3	0.9	2.0	1.5	1.5
영상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을 해주겠다고 했다	거절	-	-	3.1	6.5	3.7	3.0	3.4	2.9
	허용	-	-	0.2	0.6	0.0	0.0	1.5	0.8
원한다면 사진을 합성해 주거나 영상을 보내주겠 다고 하였다	거절	-	-	1.7	3.1	1.3	1.2	2.6	0.8
	허용	-	-	0.4	0.6	0.2	0.0	0.9	0.8

부표 23.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과 1대1로 대화해 본 경험

구 분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메신저, SNS(익명계 정 포함), 랜덤 채팅앱,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 라인에서 모르는 사람 과 1대1로 대화해 본 경험	남	19.8	27.9	34.6	29.1	19.5	22.3	15.5	21.1	23.9	
	여	23.8	30.3	45.1	44.4	34.3	28.7	27.8	24.4	32.7	
	전체	21.7	29.1	39.5	36.7	27.3	24.0	22.6	22.5	28.1	

부표 24. 온라인에서 1대1로 대화를 나눈 사람 수

구 분			온라인에서 1대1로 대화를 나눈 사람 수					
			1~2명	3~4명	5~9명	10~29명	30명 이상	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39.9	22.8	14.6	11.8	10.8	100.0
성별	남		40.9	23.1	14.4	10.7	10.9	100.0
	여		39.2	22.6	14.8	12.6	10.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46.4	22.6	15.0	6.5	9.6	100.0
	중학교		35.5	23.9	15.4	12.1	13.1	100.0
	고등학교		41.8	21.5	13.2	15.1	8.4	100.0
성별 x 학교급	초등 학교	남	41.5	21.9	14.8	10.8	11.1	100.0
		여	50.7	23.2	15.1	2.7	8.3	100.0
	중 학교	남	37.1	25.6	12.2	11.8	13.3	100.0
		여	34.4	22.7	17.6	12.3	13.0	100.0
	고등 학교	남	45.7	20.7	17.0	9.1	7.4	100.0
		여	38.9	22.2	10.3	19.6	9.0	100.0

부표 25. 온라인에서 1대1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나이

구 분			온라인에서 1대1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나이					
			13세 이하	14세~16세	17세~19세	20세~24세	25세 이상	잘 모르겠다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4.7	50.3	37.7	17.2	9.0	15.8
성별	남		24.5	42.1	31.7	15.2	7.4	23.0
	여		24.9	56.5	42.2	18.6	10.2	10.3
학교급	초등학교		63.3	41.4	8.4	4.2	4.1	19.1
	중학교		19.6	72.1	31.5	11.8	6.1	14.3
	고등학교		4.1	25.1	68.1	34.3	16.7	15.4
성별 x 학교급	초등 학교	남	60.4	35.9	8.7	5.2	4.5	26.1
		여	65.9	46.5	8.2	3.4	3.5	12.8
	중 학교	남	16.5	62.4	24.4	10.8	3.2	23.5
		여	21.7	78.7	36.3	12.6	8.1	8.0
	고등 학교	남	6.5	19.1	60.4	29.5	15.4	19.9
		여	2.3	29.6	74.0	38.0	17.7	11.9

부표 26.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과의 연락 기간

구 분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과의 연락 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6개월	7개월 -12개월	13개월 -18개월	19개월 -24개월	25개월 이상	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4.7	18.9	7.6	5.3	2.0	11.6	100.0
성별	남		52.8	20.6	7.6	4.8	1.8	12.4	100.0
	여		56.1	17.6	7.6	5.7	2.1	11.0	100.0
학교 급	초등학교		62.0	17.7	9.0	3.0	2.0	6.3	100.0
	중학교		50.9	18.9	7.7	6.7	3.1	12.8	100.0
	고등학교		55.0	19.7	6.5	4.8	0.3	13.6	100.0
성별 x 학교 급	초등 학교	남	59.9	16.3	9.5	2.6	3.2	8.4	100.0
		여	63.9	19.0	8.5	3.4	0.9	4.3	100.0
	중 학교	남	50.1	21.2	6.3	6.1	1.7	14.7	100.0
		여	51.4	17.3	8.7	7.1	4.0	11.6	100.0
	고등 학교	남	50.9	23.2	8.0	4.7	0.7	12.6	100.0
		여	58.1	17.0	5.5	5.0	0.0	14.4	100.0

부표 27.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보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보														
구 분	나이	이름	사는 지역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라인/ 카톡 아이디	다니는 학교	이메일	집 주소	집 전화 번호	기타	알려준 적 없음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6.2	37.8	25.1	24.1	17.1	14.2	10.3	2.5	2.1	0.4	2.3	37.0		
	성별	남	46.4	31.5	22.4	19.1	16.7	11.9	10.6	3.6	2.2	0.7	2.8	45.3
여		63.6	42.6	27.1	28.0	17.3	15.9	10.1	1.7	2.0	0.2	1.9	30.8	
학교 급	초등학교	47.8	20.8	11.8	16.2	11.8	5.6	5.9	2.0	1.4	0.4	1.2	43.3	
	중학교	57.5	41.5	27.2	27.0	15.8	12.6	12.3	1.9	2.2	0.3	2.7	36.7	
	고등학교	60.4	44.7	31.8	25.7	22.8	22.7	10.7	3.9	2.4	0.5	2.5	32.9	
성별 × 학교 급	초등학교	남	33.9	17.8	14.9	12.3	6.3	5.9	3.2	3.0	0.0	0.9	54.4	
		여	60.6	23.6	11.5	17.4	11.3	4.9	5.9	0.9	0.0	0.8	1.5	33.1
	중학교	남	43.8	31.3	20.2	18.7	13.5	7.7	12.5	2.1	1.6	0.8	2.4	48.9
		여	67.0	48.5	32.0	32.8	17.4	16.1	12.1	1.7	2.6	0.0	2.9	28.2
	고등학교	남	60.4	42.8	33.9	23.0	25.0	22.3	11.7	6.1	2.3	1.2	4.9	32.6
		여	60.3	46.2	30.1	27.8	21.2	23.0	9.9	2.3	2.5	0.0	0.7	33.1

부표 28.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난 경험

구 분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난 경험	남	7.4	7.7	11.7	12.7	6.0	10.6	7.3	8.1	9.0
	여	5.1	4.1	14.4	15.4	13.5	11.1	16.7	10.4	11.5
	전체	6.3	5.9	13.0	14.0	9.9	10.7	12.8	9.1	10.2

부표 29.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되어 직접 만난 사람(들)의 나이

구 분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되어 직접 만난 사람(들)의 나이						
		13세 이하	14세-16세	17세-19세	20세-24세	25세 이상	잘 모르겠음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15.4	51.2	33.8	9.9	3.9	7.5	
성별	남	19.2	43.8	26.0	12.4	5.1	13.2	
	여	12.5	57.1	40.0	7.8	3.0	3.1	
학교급	초등학교	54.0	20.7	6.0	5.1	3.4	30.0	
	중학교	15.6	79.9	15.1	3.8	2.4	4.5	
	고등학교	1.0	30.3	65.2	18.4	5.8	2.6	
성별 × 학교급	초등 학교	남	50.0	21.0	6.8	5.3	2.1	33.8
		여	61.3	20.2	4.6	4.9	5.7	23.1
	중 학교	남	17.8	70.2	10.5	5.5	4.8	9.7
		여	14.0	86.7	18.3	2.7	0.6	0.9
	고등 학교	남	2.5	26.8	55.6	24.7	7.3	5.0
		여	0.0	32.6	71.6	14.2	4.8	1.1

부표 30.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들)과의 만남 전 공유 대상

구 분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들)과의 만남 전 공유 대상				
			친구	부모님	선배	선생님	기타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62.9	34.9	5.4	1.0	3.4
성별	남		58.5	25.5	5.1	1.4	0.7
	여		66.2	42.0	5.6	0.7	5.4
학교급	초등학교		49.7	22.6	10.3	0.0	2.1
	중학교		61.4	32.5	2.1	1.8	6.2
	고등학교		69.4	41.9	7.2	0.5	0.8
성별 x 학교급	초등 학교	남	56.8	14.0	10.2	0.0	0.0
		여	37.1	37.7	10.3	0.0	5.7
	중 학교	남	50.9	25.6	0.0	2.3	1.7
		여	68.3	37.0	3.5	1.4	9.2
	고등 학교	남	67.8	31.9	7.8	1.3	0.0
		여	70.4	48.5	6.9	0.0	1.3

부표 31.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들)과의 만남 및 이동 장소(복수응답)

구 분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들)과의 만남 및 이동 장소							
		음식점, 카페	근처에 있는 놀이터, 공원 등	PC방	룸카페, 만화카페, 노래방 등	멀리 떨어진 놀이공원, 관광지 등	모텔이나 집	그 사람의 자동차	그 외 장소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전체		45.1	24.3	22.9	20.0	4.5	4.4	1.8	29.2
성별	남	34.0	21.9	35.4	17.7	7.2	6.7	3.4	25.0
	여	53.6	26.2	13.5	21.8	2.4	2.6	0.7	32.3
학교급	초등학교	23.2	37.8	12.2	9.3	5.9	2.7	2.0	40.4
	중학교	42.0	27.6	20.3	17.8	3.8	3.9	2.2	32.6
	고등학교	55.3	16.5	29.0	25.9	4.7	5.4	1.5	22.0
성별 × 학교급	초등학교	남	20.7	34.9	12.2	8.3	6.2	4.3	37.9
		여	27.3	42.6	12.2	10.9	5.4	0.0	44.6
	중학교	남	23.0	24.1	31.0	10.1	8.5	6.1	28.5
		여	54.8	30.0	13.1	22.9	0.7	2.5	35.3
	고등학교	남	52.5	13.1	51.4	30.5	6.2	8.6	15.0
		여	57.3	18.8	14.0	22.8	3.6	3.2	26.7

부표 32.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들)과의 만남 후 공유 대상

구 분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들)과의 만남 후 공유 대상				
			친구	부모님	선배	선생님	기타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68.3	40.1	5.9	2.5	4.7
성별	남		64.4	33.7	5.8	3.1	3.5
	여		71.2	45.0	6.0	2.0	5.6
학교급	초등학교		48.5	31.2	10.1	5.2	4.4
	중학교		67.1	41.2	3.6	3.1	6.6
	고등학교		76.5	41.9	7.1	0.9	2.7
성별 x 학교급	초등 학교	남	53.9	27.9	9.8	2.6	3.5
		여	39.5	36.8	10.7	9.3	5.9
	중 학교	남	55.6	34.3	4.2	4.2	4.3
		여	74.7	45.8	3.2	2.3	8.1
	고등 학교	남	79.9	36.2	5.4	2.2	2.6
		여	74.2	45.7	8.2	0.0	2.7

부표 33. 학교 위(Wee)클래스 이용 경험

구 분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학교에 위클래스(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상담실) 있음	남	61.7	45.2	71.9	67.6	73.9	67.0	63.6	68.9	65.2
	여	66.3	54.1	82.7	80.2	89.7	76.8	77.6	81.7	76.3
	전체	63.9	49.6	77.1	73.9	82.1	69.7	71.7	74.5	70.5
상담 선생님께서 고민 상담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 학교 위클래스 이용 경험	남	11.3	12.6	12.6	14.4	16.9	14.1	4.3	9.3	12.2
	여	18.6	24.1	14.4	18.0	23.5	16.3	13.9	14.3	17.8
	전체	15.0	18.7	13.5	16.3	20.7	14.7	10.4	11.7	15.1

부표 34.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 점(4점 척도))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개인정보 보호교육 경험	개인정보 보호교육 도움 정도	온라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온라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도움 정도
		비율(%)	평균	비율(%)	평균
초등 학교	5학년	68.5	3.55	77.2	3.50
		68.0	3.50	79.1	3.55
	6학년	70.8	3.15	75.2	3.37
		57.5	3.15	75.0	3.37
	소계	69.5	3.33	76.3	3.44
		63.0	3.33	77.1	3.46
중학교	1학년	60.6	3.28	74.4	3.29
		55.2	3.08	69.7	3.24
	2학년	64.4	2.98	75.2	3.07
		66.4	3.13	83.3	3.21
	3학년	71.2	2.86	88.9	2.81
		60.3	2.92	87.1	2.96
	소계	65.1	3.05	79.1	3.06
		60.6	3.05	80.1	3.13
고등 학교	1학년	47.1	2.93	61.4	2.97
		45.5	3.10	70.3	2.81
	2학년	57.6	3.03	78.4	2.98
		43.2	3.01	70.9	3.06
	3학년	46.5	2.74	75.7	2.68
		51.7	2.86	80.4	2.83
	소계	49.6	2.90	70.8	2.87
		46.6	2.98	74.1	2.95
전체		58.4	3.09	76.2	3.12

부표 35. 집에서 가족과 온라인 성폭력(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 해 본 경험

구 분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집에서 가족과 온라인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에 대해 이야기 해 본 경험	남	20.7	15.6	10.4	10.2	9.7	13.9	16.0	11.3	13.4
	여	31.5	29.0	29.9	28.9	32.6	20.0	30.8	27.0	29.4
	전체	26.0	22.3	19.6	19.5	21.8	15.6	24.7	18.1	21.0

부표 36. 온라인 그루밍

구 분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음	남	9.9	4.8	5.6	11.2	6.7	10.3	12.0	11.6	9.0
	여	5.0	6.8	10.3	18.7	13.6	8.9	11.5	11.7	10.8
	전체	7.5	5.8	7.8	14.9	10.3	9.9	11.7	11.6	9.9

부표 37. 디지털 성범죄 도움 기관 인지

구 분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남	66.5	69.6	79.5	86.4	86.2	89.2	80.2	85.5	80.6
	여	69.8	84.6	86.9	92.9	94.2	94.7	92.5	93.2	88.2
	전체	68.1	77.0	83.0	89.6	90.4	90.7	87.4	88.8	84.2
온라인 상담센터	남	44.1	39.0	54.6	56.8	60.3	55.3	55.0	58.2	53.0
	여	41.3	49.5	54.9	66.9	59.5	61.1	51.7	57.5	54.8
	전체	42.7	44.2	54.7	61.9	59.9	56.9	53.1	57.9	53.9
여성긴급전화 1366	남	24.4	27.2	37.9	40.2	42.9	46.8	42.7	44.6	38.4
	여	43.8	60.5	63.7	74.8	77.4	81.4	75.7	81.6	69.0
	전체	33.7	43.5	50.1	57.4	60.8	56.4	61.9	60.5	52.8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남	34.2	33.5	43.9	43.2	49.1	42.7	49.5	39.1	41.6
	여	37.9	40.5	56.6	57.7	51.9	54.0	50.4	52.7	50.0
	전체	36.0	36.9	49.9	50.4	50.5	45.8	50.0	44.9	45.6
해바라기 센터	남	14.9	12.8	17.6	17.9	21.4	23.7	25.5	19.6	19.1
	여	9.6	15.0	20.1	25.6	25.5	26.5	32.1	31.9	23.1
	전체	12.4	13.9	18.8	21.8	23.6	24.5	29.3	24.8	21.0

부표 38. 부모자녀관계 수준(초등학교)

(단위: 4점 척도)

부모자녀관계	성별 x 학년				
	남		여		전체
	5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다	3.27 (0.76)	3.19 (0.79)	3.33 (0.73)	3.42 (0.67)	3.30 (0.74)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누구와 있는지 알고 계신다	3.06 (0.91)	2.95 (0.84)	3.27 (0.77)	3.35 (0.76)	3.16 (0.84)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	3.07 (0.90)	3.06 (0.82)	3.12 (0.85)	3.19 (0.78)	3.11 (0.84)
내가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하면 잘 들어주신다	3.41 (0.70)	3.45 (0.66)	3.44 (0.70)	3.42 (0.63)	3.43 (0.67)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다	3.73 (0.55)	3.65 (0.50)	3.75 (0.48)	3.74 (0.49)	3.72 (0.51)

부표 39. 부모자녀관계 수준(초등학교)

(단위: 4점 척도)

부모자녀관계					
성별×학년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누구와 있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하면 잘 들어주신다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다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남	5학년 3.27(0.76)	3.06(0.91)	3.07(0.90)	3.41(0.70)	3.73(0.55)
	6학년 3.19(0.79)	2.95(0.84)	3.06(0.82)	3.45(0.66)	3.65(0.50)
여	5학년 3.33(0.73)	3.27(0.77)	3.12(0.85)	3.44(0.70)	3.75(0.48)
	6학년 3.42(0.67)	3.35(0.76)	3.19(0.78)	3.42(0.63)	3.74(0.49)
전체	3.30(0.74)	3.16(0.84)	3.11(0.84)	3.43(0.67)	3.72(0.51)

부표 40. 부모자녀관계 수준(중학교)

(단위: 4점 척도)

부모자녀관계	성별 x 학년						
	남			여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다	3.17 (0.77)	3.20 (0.73)	3.28 (0.74)	3.32 (0.66)	3.33 (0.67)	3.36 (0.69)	3.27 (0.71)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누구와 있는지 알고 계신다	2.93 (0.89)	2.90 (0.87)	2.92 (0.88)	3.18 (0.73)	3.29 (0.69)	3.24 (0.77)	3.07 (0.82)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	3.02 (0.82)	3.07 (0.86)	3.12 (0.78)	2.97 (0.81)	3.06 (0.76)	3.16 (0.83)	3.07 (0.81)
내가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하면 잘 들어주신다	3.32 (0.72)	3.29 (0.75)	3.32 (0.73)	3.37 (0.72)	3.46 (0.63)	3.37 (0.71)	3.35 (0.71)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다	3.69 (0.52)	3.57 (0.55)	3.56 (0.57)	3.62 (0.55)	3.59 (0.55)	3.58 (0.61)	3.60 (0.56)

부표 41. 부모자녀관계 수준(중학교)

(단위: 4점 척도)

부모자녀관계						
성별×학년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누구와 있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 고 계신다	내가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하면 잘 들어주신다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다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1학년	3.17(0.77)	2.93(0.89)	3.02(0.82)	3.32(0.72)	3.69(0.52)	
남 2학년	3.20(0.73)	2.90(0.87)	3.07(0.86)	3.29(0.75)	3.57(0.55)	
3학년	3.28(0.74)	2.92(0.88)	3.12(0.78)	3.32(0.73)	3.56(0.57)	
1학년	3.32(0.66)	3.18(0.73)	2.97(0.81)	3.37(0.72)	3.62(0.55)	
여 2학년	3.33(0.67)	3.29(0.69)	3.06(0.76)	3.46(0.63)	3.59(0.55)	
3학년	3.36(0.69)	3.24(0.77)	3.16(0.83)	3.37(0.71)	3.58(0.61)	
전체	3.27(0.71)	3.07(0.82)	3.07(0.81)	3.35(0.71)	3.60(0.56)	

부표 42. 부모자녀관계 수준(고등학교)

(단위: 4점 척도)

부모자녀관계	성별 x 학년						
	남			여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다	3.16 (0.73)	3.19 (0.75)	3.29 (0.71)	3.38 (0.63)	3.44 (0.65)	3.48 (0.67)	3.32 (0.70)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누구와 있는지 알고 계신다	2.82 (0.83)	2.93 (0.85)	3.00 (0.83)	3.17 (0.72)	3.35 (0.71)	3.30 (0.74)	3.10 (0.81)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	2.94 (0.72)	3.04 (0.77)	3.10 (0.73)	3.13 (0.74)	3.20 (0.71)	3.28 (0.79)	3.11 (0.75)
내가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하면 잘 들어주신다	3.32 (0.67)	3.24 (0.67)	3.41 (0.67)	3.37 (0.66)	3.40 (0.70)	3.42 (0.71)	3.37 (0.69)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다	3.59 (0.54)	3.47 (0.60)	3.58 (0.57)	3.54 (0.54)	3.59 (0.57)	3.56 (0.65)	3.56 (0.58)

부표 43. 부모자녀관계 수준(고등학교)

(단위: 4점 척도)

성별×학년	부모자녀관계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누구와 있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하면 잘 들어주신다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다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1학년	3.16(0.73)	2.82(0.83)	2.94(0.72)	3.32(0.67)	3.59(0.54)	
남 2학년	3.19(0.75)	2.93(0.85)	3.04(0.77)	3.24(0.67)	3.47(0.60)	
3학년	3.29(0.71)	3.00(0.83)	3.10(0.73)	3.41(0.67)	3.58(0.57)	
1학년	3.38(0.63)	3.17(0.72)	3.13(0.74)	3.37(0.66)	3.54(0.54)	
여 2학년	3.44(0.65)	3.35(0.71)	3.20(0.71)	3.40(0.70)	3.59(0.57)	
3학년	3.48(0.67)	3.30(0.74)	3.28(0.79)	3.42(0.71)	3.56(0.65)	
전체	3.32(0.70)	3.10(0.81)	3.11(0.75)	3.37(0.69)	3.56(0.58)	

부표 44. 부모자녀관계 긍정 응답 비율(초등학교)

(단위: %)

부모자녀관계	성별 x 학년				전체
	남		여		
	5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다	76.2	74.6	84.4	86.4	80.3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누구와 있는지 알고 계신다	66.4	65.4	78.2	82.7	72.9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	66.8	66.5	69.0	76.9	69.7
내가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하면 잘 들어주신다	85.4	84.6	87.2	85.0	85.6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다	95.0	96.9	92.6	93.7	94.5

부표 45. 부모자녀관계 긍정 응답 비율(중학교)

(단위: %)

부모자녀관계	성별 x 학년						
	남			여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다	77.0	80.2	84.7	80.8	85.8	88.5	82.7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누구와 있는지 알고 계신다	62.0	64.9	65.8	81.1	83.2	84.0	73.4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	68.2	69.5	79.3	69.4	72.7	76.6	72.5
내가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하면 잘 들어주신다	86.5	84.4	83.3	79.9	85.7	84.8	84.2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다	94.5	94.7	91.9	92.6	94.1	93.0	93.5

부표 46. 부모자녀관계 긍정 응답 비율(고등학교)

(단위: %)

부모자녀관계	성별 x 학년						전체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다	82.1	83.2	86.3	90.3	91.2	93.2	87.3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누구와 있는지 알고 계신다	67.5	67.3	73.7	82.3	86.0	85.9	76.5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	71.2	77.0	82.0	77.9	80.4	82.5	78.4
내가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하면 잘 들어주신다	84.7	83.2	87.8	85.0	88.6	91.7	87.0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다	94.2	91.8	95.0	93.8	93.0	95.6	94.0

부표 47. 학교와 친구 관계 수준(초등학교)

(단위: 4점 척도)

학교와 친구 관계	성별 x 학년				
	남		여		전체
	5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내가 걱정거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	3.36 (0.77)	3.10 (0.83)	3.35 (0.71)	3.00 (0.86)	3.20 (0.81)
우리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3.55 (0.56)	3.38 (0.67)	3.56 (0.55)	3.37 (0.60)	3.46 (0.61)
학교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90 (0.90)	1.86 (0.82)	1.78 (0.82)	2.03 (0.87)	1.89 (0.86)
학업 성적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1.77 (0.95)	1.84 (0.87)	2.00 (0.88)	2.33 (0.99)	1.98 (0.95)
내게 걱정거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3.21 (0.88)	3.29 (0.81)	3.43 (0.77)	3.35 (0.78)	3.3 2(0.82)
나는 친구들과 매우 친하다고 느낀다	3.44 (0.71)	3.45 (0.68)	3.36 (0.76)	3.31 (0.76)	3.39 (0.73)
내 친구들은 랜덤채팅 앱(양톡, 줄톡, 채팅문, 앙챗 등)을 사용하고 있다	2.44 (1.24)	2.53 (1.16)	2.22 (1.21)	2.50 (1.21)	2.44 (1.20)

부표 48. 학교와 친구 관계 수준(초등학교)

(단위: 4점 척도)

학교와 친구 관계														
성별×학년	내가 걱정거리 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		우리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학교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업 성적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게 걱정거리 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내 친구들과 나는 친구들과 매우 친하다고 느낀다		내 친구들은 랜 덤채팅 앱(양쪽, 음쪽, 채팅문, 양쪽 등)을 사용 하고 있다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남	5학년	3.36(0.77)	3.55(0.56)	1.90(0.90)	1.77(0.95)	3.21(0.88)	3.44(0.71)	2.44(1.24)						
	6학년	3.10(0.83)	3.38(0.67)	1.86(0.82)	1.84(0.87)	3.29(0.81)	3.45(0.68)	2.53(1.16)						
여	5학년	3.35(0.71)	3.56(0.55)	1.78(0.82)	2.00(0.88)	3.43(0.77)	3.36(0.76)	2.22(1.21)						
	6학년	3.00(0.86)	3.37(0.60)	2.03(0.87)	2.33(0.99)	3.35(0.78)	3.31(0.76)	2.50(1.21)						
전체		3.20(0.81)	3.46(0.61)	1.89(0.86)	1.98(0.95)	3.32(0.82)	3.39(0.73)	2.44(1.2)						

부표 49. 학교와 친구 관계 수준(중학교)

(단위: 4점 척도)

학교와 친구 관계	성별 x 학년						
	남			여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내가 걱정거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	3.23 (0.82)	3.14 (0.76)	3.11 (0.83)	2.99 (0.89)	2.95 (0.84)	3.11 (0.78)	3.09 (0.83)
우리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3.41 (0.65)	3.35 (0.63)	3.25 (0.68)	3.35 (0.59)	3.34 (0.56)	3.27 (0.59)	3.33 (0.62)
학교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87 (0.84)	1.97 (0.79)	2.11 (0.90)	2.02 (0.87)	2.17 (0.89)	2.07 (0.81)	2.03 (0.85)
학업 성적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2.06 (0.99)	2.58 (0.91)	2.70 (0.91)	2.59 (0.93)	2.77 (0.88)	2.79 (0.84)	2.57 (0.95)
내게 걱정거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3.23 (0.81)	3.29 (0.72)	3.36 (0.73)	3.28 (0.86)	3.40 (0.69)	3.43 (0.75)	3.33 (0.77)
나는 친구들과 매우 친하다고 느낀다	3.37 (0.72)	3.37 (0.64)	3.34 (0.70)	3.20 (0.78)	3.33 (0.62)	3.37 (0.72)	3.33 (0.70)
내 친구들은 랜덤채팅 앱(양톡, 줄톡, 채팅몬, 양챗 등)을 사용하고 있다	2.13 (1.19)	1.82 (1.04)	1.74 (0.98)	1.95 (1.06)	1.63 (0.94)	1.51 (0.87)	1.80 (1.04)

부표 50. 학교와 친구 관계 수준(중학교)

(단위: 4점 척도)

학교와 친구 관계									
성별×학년	내가 걱정거리			내게 걱정거리			내 친구들은 랜		
	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선생님 이 계신다	우리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학교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업 성적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나는 친구들과 매우 친하다고 느낀다	멈채팅 앱(양쪽, 음쪽, 채팅문, 양쪽 등)을 사용 하고 있다		
평균(표준편차)									
1학년	3.23(0.82)	3.41(0.65)	1.87(0.84)	2.06(0.99)	3.23(0.81)	3.37(0.72)	2.13(1.19)		
2학년	3.14(0.76)	3.35(0.63)	1.97(0.79)	2.58(0.91)	3.29(0.72)	3.37(0.64)	1.82(1.04)		
3학년	3.11(0.83)	3.25(0.68)	2.11(0.90)	2.70(0.91)	3.36(0.73)	3.34(0.70)	1.74(0.98)		
1학년	2.99(0.89)	3.35(0.59)	2.02(0.87)	2.59(0.93)	3.28(0.86)	3.20(0.78)	1.95(1.06)		
2학년	2.95(0.84)	3.34(0.56)	2.17(0.89)	2.77(0.88)	3.40(0.69)	3.33(0.62)	1.63(0.94)		
3학년	3.11(0.78)	3.27(0.59)	2.07(0.81)	2.79(0.84)	3.43(0.75)	3.37(0.72)	1.51(0.87)		
전체	3.09(0.83)	3.33(0.62)	2.03(0.85)	2.57(0.95)	3.33(0.77)	3.33(0.70)	1.80(1.04)		

부표 51. 학교와 친구 관계 수준(고등학교)

(단위: 4점 척도)

학교와 친구 관계	성별 x 학년						전체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내가 걱정거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	3.10 (0.75)	3.22 (0.71)	3.13 (0.82)	2.87 (0.83)	3.03 (0.75)	3.08 (0.75)	3.08 (0.77)
우리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3.23 (0.66)	3.16 (0.69)	3.08 (0.73)	3.09 (0.60)	3.19 (0.61)	3.23 (0.62)	3.17 (0.66)
학교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2.25 (0.86)	2.37 (0.88)	2.32 (0.86)	2.16 (0.83)	2.38 (0.88)	2.49 (0.90)	2.34 (0.87)
학업 성적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2.76 (0.80)	2.90 (0.81)	2.62 (0.95)	2.90 (0.81)	3.08 (0.81)	3.14 (0.79)	2.90 (0.85)
내게 걱정거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3.30 (0.60)	3.35 (0.72)	3.41 (0.66)	3.38 (0.75)	3.48 (0.64)	3.47 (0.65)	3.40 (0.66)
나는 친구들과 매우 친하다고 느낀다	3.37 (0.57)	3.19 (0.74)	3.31 (0.69)	3.32 (0.69)	3.40 (0.62)	3.37 (0.70)	3.34 (0.66)
내 친구들은 랜덤채팅 앱(양톡, 줄톡, 채팅몬, 양챗 등)을 사용하고 있다	1.66 (1.01)	1.50 (0.89)	1.61 (0.94)	1.37 (0.70)	1.48 (0.88)	1.36 (0.76)	1.52 (0.89)

부표 52. 학교와 친구 관계 수준(고등학교)

(단위: 4점 척도)

학교와 친구 관계									
성별×학년	내가 걱정거리 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선생님 이 계신다			학교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게 걱정거리 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우리학교 선생 님은 학생들에 게 관심이 많다	학교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 는다	학업 성적에 대 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친구들과 매우 친하다고 느낀다	내 친구들은 랜 덤채팅 앱(양쪽, 출퇴, 채팅문, 양쪽 등)을 사용 하고 있다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1학년	3.10(0.75)	3.23(0.66)	2.25(0.86)	2.76(0.80)	3.30(0.60)	3.37(0.57)	3.37(0.57)	3.37(0.57)	1.66(1.01)
2학년	3.22(0.71)	3.16(0.69)	2.37(0.88)	2.90(0.81)	3.35(0.72)	3.19(0.74)	3.19(0.74)	3.19(0.74)	1.50(0.89)
3학년	3.13(0.82)	3.08(0.73)	2.32(0.86)	2.62(0.95)	3.41(0.66)	3.31(0.69)	3.31(0.69)	3.31(0.69)	1.61(0.94)
1학년	2.87(0.83)	3.09(0.60)	2.16(0.83)	2.90(0.81)	3.38(0.75)	3.32(0.69)	3.32(0.69)	3.32(0.69)	1.37(0.70)
2학년	3.03(0.75)	3.19(0.61)	2.38(0.88)	3.08(0.81)	3.48(0.64)	3.40(0.62)	3.40(0.62)	3.40(0.62)	1.48(0.88)
3학년	3.08(0.75)	3.23(0.62)	2.49(0.90)	3.14(0.79)	3.47(0.65)	3.37(0.70)	3.37(0.70)	3.37(0.70)	1.36(0.76)
전체	3.08(0.77)	3.17(0.66)	2.34(0.87)	2.90(0.85)	3.40(0.66)	3.34(0.66)	3.34(0.66)	3.34(0.66)	1.52(0.89)

부표 53. 학교와 친구 관계 긍정 응답 비율(초등학교)

(단위: %)

학교와 친구 관계	성별 x 학년				전체
	남		여		
	5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	
내가 걱정거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	78.0	72.2	81.9	65.2	74.6
우리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85.7	84.1	88.4	82.3	85.2
학교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22.3	18.5	16.2	25.7	20.6
학업 성적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22.4	22.0	25.3	42.3	27.7
내게 걱정거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76.8	81.0	85.9	82.3	81.4
나는 친구들과 매우 친하다고 느낀다	87.2	83.3	83.8	80.5	83.8
내 친구들은 랜덤채팅 앱(양톡, 즐톡, 채팅몬, 앙챗 등)을 사용하고 있다	32.4	41.9	24.8	33.5	33.0

부표 54. 학교와 친구 관계 긍정 응답 비율(중학교)

(단위: %)

학교와 친구 관계	성별 x 학년						전체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내가 걱정거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	74.9	77.5	76.1	66.9	66.1	75.8	72.9
우리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82.8	81.9	81.1	86.1	82.0	85.2	83.2
학교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8.6	19.7	31.1	21.6	28.0	27.8	24.2
학업 성적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28.9	58.2	58.8	50.4	63.0	67.5	53.9
내게 걱정거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83.2	84.2	86.0	82.8	86.6	89.7	85.3
나는 친구들과 매우 친하다고 느낀다	85.8	86.0	86.9	84.4	86.1	88.5	86.3
내 친구들은 랜덤채팅 앱(양톡, 즐톡, 채팅몬, 양챗 등)을 사용하고 있다	22.6	17.4	15.4	18.0	12.6	11.5	16.4

부표 55. 학교와 친구 관계 긍정 응답 비율(고등학교)

(단위: %)

학교와 친구 관계	성별 x 학년						전체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내가 걱정거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	79.4	83.6	75.5	61.9	74.4	77.7	76.5
우리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82.7	83.7	76.6	73.5	83.2	85.0	81.3
학교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33.7	40.0	37.1	24.8	43.6	52.9	39.4
학업 성적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65.1	70.4	60.8	69.6	76.6	82.0	70.2
내게 걱정거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91.5	86.7	90.3	92.0	91.6	92.7	90.8
나는 친구들과 매우 친하다고 느낀다	91.2	82.1	86.0	90.2	89.0	89.8	88.1
내 친구들은 랜덤채팅 앱(양톡, 즐톡, 채팅몬, 앙챗 등)을 사용하고 있다	15.6	12.2	13.3	6.2	11.4	7.8	11.8

부표 56. 생활환경 수준

(단위: 만원, 권)

학년		생활환경			
		한 달 용돈(만원)		책 권수(권)	
		남	여	남	여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초등학교	5학년	0.92(1.42)	1.13(1.68)	128.75(70.44)	138.29(67.37)
	6학년	1.61(2.05)	1.47(2.06)	120.20(72.00)	121.98(66.43)
	소계	1.27(1.81)	1.30(1.89)	124.27(71.31)	129.67(67.29)
중학교	1학년	2.73(4.30)	3.34(4.40)	112.56(72.72)	116.35(69.10)
	2학년	6.31(27.43)	4.14(5.02)	107.25(72.62)	115.67(74.39)
	3학년	3.92(5.55)	5.64(6.50)	122.82(71.85)	101.00(70.95)
	소계	4.28(16.27)	4.32(5.41)	114.18(72.58)	111.31(71.65)
고등학교	1학년	7.12(10.00)	7.58(5.41)	88.76(71.05)	78.04(64.84)
	2학년	7.89(15.82)	8.62(7.41)	87.20(68.95)	100.42(73.40)
	3학년	11.09(12.60)	9.03(8.63)	93.60(71.67)	98.17(69.94)
	소계	8.69(12.62)	8.56(7.53)	90.09(70.72)	95.76(71.23)
전체		5.21(12.96)	5.15(6.44)	107.24(72.91)	109.86(71.62)

부표 57. 익명계정 및 오픈채팅 경험 비율

구 분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익명계정 사용 경험	남	8.8	12.6	11.9	13.4	10.5	10.7	10.8	11.9	11.5
	여	8.3	12.8	19.3	19.7	22.5	24.1	22.3	23.2	21.7
	전체	8.5	12.7	15.5	16.5	16.8	14.3	17.5	16.8	16.3
익명계정 이용정지 경험	남	-	-	12.2	28.6	9.7	17.5	19.0	13.5	16.6
	여	-	-	3.6	13.5	3.3	0.0	11.6	3.7	6.5
	전체	-	-	7.2	19.5	5.4	10.0	13.3	7.7	10.4
오픈채팅 참여 경험	남	15.6	37.4	29.3	26.1	15.2	19.4	9.6	8.5	19.9
	여	17.1	28.8	32.4	18.9	18.8	15.4	14.2	6.5	19.3
	전체	16.3	33.0	30.8	22.5	17.1	18.3	12.3	7.7	19.6
오픈채팅 개인톡 경험	남	76.5	81.9	62.3	72.5	65.5	60.8	52.9	85.7	70.5
	여	74.3	63.8	61.5	63.2	40.5	68.8	47.1	58.3	59.3
	전체	75.4	73.8	61.9	68.5	50.7	62.7	49.0	75.8	65.3

부표 58.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에 따른 위험 행동

(단위: %, 점)

위험 행동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			
	개인정보 보호교육 경험		온라인 성폭력(디지털 성폭력)예방교육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익명계정 사용 비율(%)	15.6	16.5	15.4	13.0
익명계정 이용정지 비율(%)	10.7	11.5	9.0	30.8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에게 개인정보 노출 비율(%)	60.7	67.0	61.1	68.0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들)과 위험 장소 (예, 룸카페, 만화방, 노래방, 그 사람의 자동차, 모텔이나 집)에서 만남 비율(%)	15.2	22.9	14.3	39.1

부표 59.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및 가해 정도

(단위: 점)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및 가해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			
	개인정보 보호교육 경험		온라인 성폭력(디지털 성폭력)예방교육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도(평균)	1.22	1.27	1.22	1.22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점수(평균)	10.76	11.18	10.74	10.78
디지털 성범죄 가해 정도(평균)	1.12	1.18	1.12	1.15
디지털 성범죄 가해 점수(평균)	7.74	8.18	7.74	7.93

부표 60. 학교에서의 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위험 행동 비율

(단위: %, 점)

위험 행동	학교에서의 교육 도움 정도			
	개인정보 보호교육 도움 정도		온라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도움 정도	
	상 집단 (도움 정도 가 높은 집단)	하 집단 (도움 정도 가 낮은 집단)	상 집단 (도움 정도 가 높은 집단)	하 집단 (도움 정도 가 낮은 집단)
익명계정 사용 비율(%)	14.6	16.6	13.8	16.9
익명계정 이용정지 비율(%)	14.5	8.5	11.5	7.3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에게 개인정보 노출 비율(%)	57.2	63.8	58.8	62.9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들)과 위험 장소(예, 룸카페, 만화방, 노래방, 그 사람의 자동차, 모텔이나 집)에서 만남 비율(%)	13.9	13.6	13.5	13.5

부표 61. 학교에서의 교육 도움 정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및 가해 정도

(단위: 점)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및 가해	학교에서의 교육 도움 정도			
	개인정보 보호교육 도움 정도		온라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도움 정도	
	상 집단 (도움 정도 가 높은 집단)	하 집단 (도움 정도 가 낮은 집단)	상 집단 (도움 정도 가 높은 집단)	하 집단 (도움 정도 가 낮은 집단)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도(평균)	1.20	1.24	1.21	1.22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점수(평균)	10.55	10.96	10.68	10.78
디지털 성범죄 가해 정도(평균)	1.10	1.13	1.11	1.12
디지털 성범죄 가해 점수(평균)	7.61	7.85	7.69	7.78

국문초록

최근 온라인 환경과 소셜 미디어의 일상화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새로운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이와 같은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해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내외 특히 주요 국가의 대응사례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분야의 현장전문가와 정책담당자의 의견과 정보를 수렴하고, 현장에서 부각된 주요 현안을 연구보고서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아동·청소년들의 온·오프라인 생활 실태,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매체 이용 현황과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성적 침해 경험,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의 진행 단계별 경험의 수준을 측정했다.

온라인 그루밍은 사이버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범죄의 시작이며, 그 결과물이 성착취 영상물 배포로 이어지면서 범죄 피해를 극단적으로 확산시킨다. 따라서 온라인 그루밍의 초기 단계부터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그 피해가 확산되는 기반인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법안의 입법도 필요하다. 그 외에 전국적인 피해지원체계의 부재, 단순한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발견과 대응 방안 모색, 실제 피해자가 접근하기 어렵고 지원내용도 현실적이지 못한 범죄 피해자 지

원 시스템 등의 문제가 있다. 해외 사례 분석 결과, 미성년자 연령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부여하고, 2차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적발 처벌하는 사례들이 지적되었다. 또한 아동 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입법화 할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를 통해 신고 접수 조사, 삭제,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한국 아동들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익명 계정 사용과 오픈 채팅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체 청소년의 16.3%, 특히 여자 청소년의 21.7%는 익명계정을 보유하고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남자 청소년의 16.6%는 익명계정 이용정지를 당할 정도로 위험한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었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기프트콘을 받았다는 비율이 초등학교에서는 5% 내외, 중학교 여학생에서는 최대 14%까지 높아졌다.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온라인을 통한 친교제의를 더 많이 받았고, 이를 거절하지 않는 비율도 높았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여자 청소년들 중 절반 이상이 친교제의를 받았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은 이를 거절하지 않았다. 위클래스를 아는 청소년은 70.3%였으며, 청소년사이버 상담센터(1388)의 인지도 역시 84.2%로 높았다. 반면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 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21%로 가장 낮았다.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개인정보 보호교육(58.4%)이나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76.2%)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으며,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는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학교에서 실시한 성범죄 예방교육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예방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이 전반적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위험한 행동을 적게 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의 조기 실시 등을 포함한 예방 정책과, 그루밍 처벌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안 및 제도 제언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ABSTRACT

Recently, along with the daily use of online environments and social media, digital sexual crime or exploitation against child and youths are emerging as a new risk facto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data for establishing policies to protect child and youth from these new risks. Major issue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and cases of domestic and foreign, especially major countries' responses to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summarized. In addition, opinions and information from field experts and policy makers in the field of digital sex crime were collected, and major issues highlighted in the field were reflected in the research report. Lastly, the online and offline living conditions of actual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investigated through a digital living situation survey. In particular, we surveyed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media use that are vulnerable to digital sexual crimes, the experience of sexual assault in online, and the level of experience in each stage of online grooming.

As a result, Korean children have been using anonymous

accounts and open chatting since elementary school. 16.3% of all adolescents, particularly 21.7% of female adolescents, had and used an anonymous account, and 16.6% of male adolescents had experience with risky behavior that resulted in suspension of anonymous account use. The rate of receiving gift cards online from strangers increased to around 5% in elementary school and up to 14% in middle school girls. Female adolescents received more online fellowship offers than male adolescents, and the rate of not rejecting them was high. In particular, more than half of the first-year middle school girls received a fellowship offer, and more than half of them did not reject it. The youth who knew 'WeClass' accounted for 70.3%, and the awareness of the 'Youth Cyber Counseling Center: 1388' was also high at 84.2%. On the other hand, awareness of the 'Sunflower Center', a support organization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prostitution, was the lowest at 21%. More than half of the youths who responded to the survey had experience of privacy protection education (58.4%) or online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76.2%), and the evaluation that the education was helpful tends to be higher among female adolescents. As a result of confirming whether sex crime prevention education conducted in schools can reduce the risk of exposure to digital sex crime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it was found that the group with experience in prevention education generally reduced risky behavior in an online environment.

Online grooming is the beginning of a crime that leads to

cyber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and as a result, it leads to the distribution of sexual exploitation videos, which dramatically spreads the crime. Therefore, regulations that can detect and punish online grooming from the initial stage are needed. It is also necessary to legislate a law that stipulates the socia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platform companies, which are the basis for digital sex crimes and the spread of their damages. In addition,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e absence of a nationwide damage support system, active discovery and countermeasures beyond simple support to delete video, and a crime victim support system that is difficult for actual victims to access and provides unrealistic support.

As a result of overseas case analysis, cases were pointed out in which the burden of proving the age of minors was given to the perpetrators, and cases were detected and punished before they lead to secondary crimes. The need to legislat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for the eradication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was also pointed out. Lastly, it should be possible to quickly and efficiently process reports, investigations, deletions, research, and database construction through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child and juvenile sex crimes. Based on these results, prevention policies, including early implementation of digital sex crime prevention education, and policies such as legislation and system proposal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grooming punishment regulations were proposed.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21-R0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 장근영·임지연
- 21-R02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정은주·정현우
- 21-R03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 최정원·문호영·전진아·박용천
- 21-R04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 모상현·최용환·남미자·정건희
- 21-R05 미래지향적 청소년 시설 및 공간 혁신방안 연구 / 김경준·강경균·변나향
- 21-R06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 김영한·이유진
- 21-R07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유민상·신동훈
- 21-R08 장애청소년 친화적 청소년정책 추진방안 연구 / 김지연·김승경·오욱찬·정소연
- 21-R09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 최창욱·좌동훈·성은모·남화성
- 21-R10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이민희·김진호
- 21-R10-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 유성상
- 21-R10-2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
- 21-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Ⅲ / 황세영·이경상·송민경·조윤정
- 21-R1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홍순구·권일남
- 21-R12-1 비정형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순구·임지원
- 21-R12-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성호
- 21-R13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1-R13-1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박찬호
- 21-R14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21-R14-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21-R14-2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1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김은정 (자체번호 21-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2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 김희진·서고운·김미정·류정희·권지성 (자체번호 21-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임희진·황여정·유성렬 (자체번호 21-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해외사례 분석 / 임희진·박윤주·황여정 (자체번호 21-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황여정 (자체번호 21-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배상률·이창호·김남두 (자체번호 21-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청소년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부모 참여 중심 소셜리빙랩
운영 방안 / 정현선·조병영·권은선·김광희 (자체번호 21-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1-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9-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김형주·연보라·정세정·변금선 (자체번호 21-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일자리
/ 김기현·배정희·김창환·성재민 (자체번호 21-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2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보고서 /
김기현·배정희 (자체번호 21-R19-1)

수 시 과 제

- 21-R20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 김지연
- 21-R21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 / 서고운
- 21-R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호영
- 21-R2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 신동훈·김세현
- 21-R24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유형별 지역 안착방안 / 배상률

21-R2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범죄예방안 연구 / 양계민

연구개발적립금

21-R26 정책동향분석 / 이지연

수탁과제

- 21-R27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승경·배정희
- 21-R28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청소년시설 운영기준 수립 연구용역 / 최용환·이희철·장혜윤
- 21-R29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 / 김형주·강영배
- 21-R3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방인자·김유민·조아라
- 21-R3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홍성호·김현수·장원빈
- 21-R32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Ⅱ / 유민상
- 21-R3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5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6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7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8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9 2020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김옥수
- 21-R40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김정민·김효주·장원빈
- 21-R4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김옥수
- 21-R4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

- 21-R4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 양계민·장윤선
- 21-R44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기현·문호영·황세영·유민상·이용해·김균희
- 21-R45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시범 운영 매뉴얼 / 성윤숙·장원빈·최동혁·김예원
- 21-R46 (초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7 (중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8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배상률
- 21-R49 강원 2024 청소년 참여 기본계획 / 김정숙·김경준·정은주·이용해·김혁진
- 21-R50 보호대상아동 심리정서지원체계 통합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이상정·정소연
- 21-R51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표준화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정경은·권해수
- 21-R52 인천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 / 연보라·김정숙·신동훈·김재우
- 21-R53 지자체 및 중앙부처 청년정책 분야별 시행계획 평가방안 심화연구 / 배정희·장근영·이용해
- 21-R54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 / 최창욱·좌동훈
- 21-R55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 좌동훈·김지수
- 21-R56 2021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 정은주·문호영
- 21-R5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과 대안전략 수립 연구 / 최용환·곽창규·김민주
- 21-R58 202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성은·김영지·김지연·강경균·서고운·최홍일·임경원
- 21-R59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컨설팅 매뉴얼 / 정은주·임지연
- 21-R60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장원빈
- 21-R61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유설희·김예원
- 21-R62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신보람
- 21-R63 지속가능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 연구 / 양계민·김민
- 21-R64 2021 경기도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방안 / 양계민·장윤선·강희숙
- 21-R65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정윤미·장윤선
- 21-R66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단계별 지원 방안 / 김영지·박하나·손진희

- 21-R67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유형 조사 및 연계 방안 / 김성은·송원일·최홍일·배수인
- 21-R68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 21-R69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 / 배상률·장수·김수영
- 21-R70 니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배정희·신동훈
- 21-R71 청년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 김기현
- 21-R72 청년과 정의 연구 / 김기현
- 21-R7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개발(2차) / 연보라·좌동훈·장운선·김재우·오성배·장훈성
- 21-R74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서고운
- 21-R7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개발 연구 / 황진구·좌동훈
- 21-R75-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매뉴얼 / 황진구·좌동훈
- 21-R76 강진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 연구용역 / 김영한·이유진·선민철·이상선
- 21-R77 2021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1-S0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1.28)
- 21-S02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27)
- 21-S03 2020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시상 및 성과보고회(1.28)
- 21-S04 청년 연속기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3차 포럼-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1.15)
- 21-S05 청소년정책 토론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2.26)
- 21-S06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발대식 및 사전교육 자료집(6.5)
- 21-S07 근거기반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추진방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7.27)
- 21-S08 21세기 비전, 한국-몽골 청소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7.19)
- 21-S09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이해 및 활용 직무연수 자료집(7.27)
- 21-S1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0)
- 21-S11 202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미래 대안교육, 함께 길을 찾다-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기회를(8.20)
- 21-S12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역량강화 연수(8.18)

- 21-S13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8.18)
- 21-S14 2021 미디어교육 현장지원단 워크숍: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제고 및 현장 적용 방안
수업의 실제와 사례 공 유(8.13)
- 21-S15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India(6.14)
- 21-S16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Malawi(6.21)
- 21-S17 제41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구상(11.5)
- 21-S18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Gambia(6.29)
- 21-S19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중간워크숍 자료집(8.21)
- 21-S20 제4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진로교육기회보장에 관한 한일비교 (9.25)
- 21-S21 미래를 대표하기: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9.10)
- 21-S22 제12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10.5)
- 21-S23 콜로키움 Mongolian Youth Policy Review 5차(10.1)
- 21-S24 콜로키움 Guatemalan Youth Policy Review 6차(10.8)
- 21-S25 Youth and Public Policy in Afghanistan(11.22)
- 21-S26 제42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11.25)
- 21-S27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및 보호지원
방향'(10.27)
- 21-S28 영국의 청년 고용 및 훈련 정책(11.23)
- 21-S29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 방안'(11.3)
- 21-S30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11.10)
- 21-S31 직원역량 콜로키움: 실무자를 위한 예산 편성의 실제(11.22)
- 21-S32 2021 대안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랜선포럼 워크숍 자료집(11.25)
- 21-S33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12.2)
- 21-S34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Ⅲ"
시범사업기관 성과공유 워크숍 (11.24)
- 21-S35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주요 청소년 정책 사례(12.3)
- 21-S36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9)
- 21-S37 2021년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 연차평가 사전 워크숍(12.17)
- 21-S38 2021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및 대안교실 성과공유회(12.16)
- 21-S39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12.16)
- 21-S40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12.15)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0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01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10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제103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0호 :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1호 :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조 방안 연구Ⅱ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2호 : 국가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Ⅲ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3호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Ⅱ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4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5호 :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6호 : 청소년·청년의 플랫폼 노동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

NYPI Bluenote 통계 53호 : 위기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

NYPI Bluenote 통계 54호 :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 인식조사

NYPI Bluenote 통계 55호 :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NYPI Bluenote 통계 56호 :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통계 57호 : 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NYPI Bluenote 통계 58호 :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 주요 조사 결과

NYPI Bluenote 통계 59호 :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6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Ⅲ: 청년 이직자

NYPI Bluenote 통계 61호 :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NYPI Bluenote 통계 6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3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NYPI Bluenote 통계 63호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 ◆

배수진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 21-R0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인 쇄 2021년 12월 23일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다원기획 044-865-8115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09-1 93330

연구보고 21-R0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09-1